발 간 등 록 번 호
71-3930000-000051-01

안산시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

녹색성장으로 소통하는 문화도시

Ansan Green & Art City

CPTED Design
범죄예방형 디자인

Green Design
그린 디자인

Better Design
보다 나은 디자인

Universal Design
모두를 위한 디자인

안 산 시

제 출 문

안산시장 귀하

본 보고서를 「안산시 기본경관계획 수립」 용역의
최종 성과품으로 제출합니다.

제 출 일 2011년 5월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이 윤 한

주식회사 건화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박 승 우

목 차

제1부 기본구상

1장 기본방향 구상 ····· 3

1. 개 요 ····· 3
2. 목표설정 ····· 4

2장 매뉴얼 활용방법 ····· 6

제2부 유형별 가이드라인

1장 유형별 경관설계지침의 구성 ····· 9

1. 경관중점관리구역에 따른 경관유형 설정 ····· 9

2장 경관중점설계지침 ····· 10

1. 도심경관권 경관중점설계지침 체크리스트 ····· 10
2. 구릉지경관권 경관중점설계지침 체크리스트 ····· 13
4. 철도경관축 경관중점설계지침 체크리스트 ····· 20
5. 하천경관축 경관중점설계지침 체크리스트 ····· 24
6. 연안경관축 경관중점설계지침 체크리스트 ····· 28
7. 문화적 경관거점 경관중점설계지침 체크리스트 ····· 32
8. 대부도 수변경관 경관중점설계지침 체크리스트 ····· 36

CONTENTS
목 차

제3부 요소별 가이드라인

1장 요소별 경관설계지침의 구성 ····· 41

2장 건축경관 ····· 42

1. 기본방향 및 원칙 ····· 42
2. 적용지침 ····· 43
3. 건축경관 가이드라인 ····· 51
   - Green Design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그린디자인 ····· 51
   - CPTED Design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범죄예방형 디자인 ····· 61
   - Universal Design 다계층을 배려한 모두를 위한 디자인 ····· 65
   - Better Design 조화로운 도시문화를 창조하는 보다 나은 디자인 ····· 69

3장 공공공간(오픈스페이스) ····· 72

1. 기본방향 및 원칙 ····· 72
2. 적용지침 ····· 73
3.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 81
   - Green Design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그린디자인 ····· 81
   - CPTED Design 범죄를 예방하는 도시공간 디자인 ····· 84
   - Universal Design 다계층을 배려한 모두를 위한 디자인 ····· 85
   - Better Design 조화로운 도시문화를 창조하는 보다 나은 디자인 ····· 90

4장 공공시설물 ····· 94

1. 기본방향 및 원칙 ····· 94
2. 적용지침 ····· 95
3.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 103
   - Green Design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그린디자인 ····· 103
   - CPTED Design 안전한 도시환경을 추구하는 디자인 ····· 105
   - Universal Design 이용자를 배려하는 디자인 ····· 106
   - Better Design 조화로운 도시문화를 창조하는 보다 나은 디자인 ····· 108

5장 색채경관 ····· 111

1. 기본방향 및 원칙 ····· 111
2. 적용지침 ····· 112
3. 색채경관 일반가이드 ····· 119
   Green Design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그린디자인 ····· 119
   CPTED Design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범죄예방형 디자인 ····· 122
   Universal Design 다계층을 배려한 모두를 위한 디자인 ····· 123
   Better Design 조화로운 도시문화를 창조하는 보다 나은 디자인 ····· 124
4. 권역별 색채범위 가이드 ····· 125

6장 야간경관 ····· 142

1. 기본방향 및 원칙 ····· 142
2. 적용지침 ····· 145
3. 야간경관 일반가이드 ····· 153
   3-1 경관권역별 야간경관 일반가이드 ····· 153
   3-2 경관중점관리구역별 일반가이드 ····· 157
4. 야간경관 세부가이드 ····· 173
   Green Design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그린디자인 ····· 173
   CPTED Design 활기찬 야간 도시환경을 만드는 안전한 디자인 ····· 177
   Universal Design 다계층을 배려하는 모두를 위한 디자인 ····· 180
   Better Design 문화와 예술을 창조하는 보다나은 도시감성형 디자인 ····· 181

7장 옥외광고물 ····· 185

1. 안산시 옥외광고물 관리체계 ····· 185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개정 검토 ····· 186

제 1부 기본구상

BASIC CONCEPTION

1장 기본방향 구상

1. 개　　요
2. 목표설정

2장 매뉴얼 활용방법

1장 기본방향 구상

1. 개 요

가이드라인의 성격

- 안산의 경관구조를 대상으로 설정된 경관중점관리구역의 **<유형별 경관설계지침>**과 함께 도시경관을 구성하는 **<구성요소별 경관설계지침>**을 통해 요소별 경관유도체계를 운영함
- 구성요소별 경관설계지침은 도시경관을 구성하는 주요요소인 건축물, 공공공간(오픈스페이스), 공공시설물, 색채경관, 야간경관 등 도시경관의 관리와 관련계획 추진을 위해 요소별 기본방향 및 설계지침을 내용으로 하며, 기본경관계획에서 제시된 안산의 미래상과 기본방향을 토대로 경관디자인의 기본 방향, 원칙 및 세부 기준을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임(옥외광고물은 별도 작성된 '안산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2009)'을 참조)

성격에 따른 원칙

First Standard _ 지속적인 디자인 기준의 마련

- 안산시 도시디자인 전반에 대한 디자인가이드로서 실질적인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디자인 가이드로서 역할

Plus Design _ 기능적 디자인의 유도

- 첨단기술성과 자연문화성의 결합을 통해 경관특화지역, 특화건축물, 특화구조물 등에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안산의 도시정체성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함

Multi Design _ 무한한 디자인개념의 확장 및 권장

- 창조적 개념의 디자인 가이드로서 전체적인 방향만을 설정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도시디자인의 창조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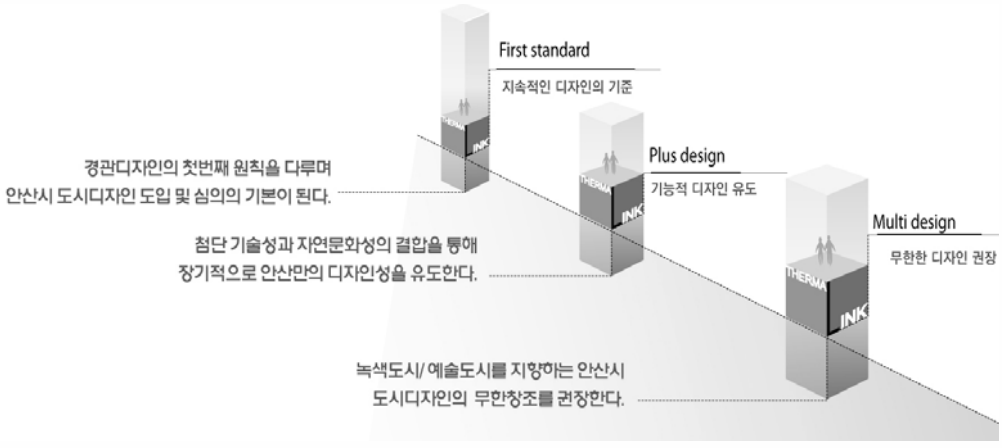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의 목표

2. 목표설정

가이드라인 수립목표

- 조화로운 도시경관이란, 단순히 도시미관적 측면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공적영역이 가져야 하는 공공성을 구현하고 사적영역이 도시경관형성에 있어서 공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체계마련에 의해 완성되는 것임
- 따라서 본 가이드라인은 다음의 4가지 경관디자인 기본원칙를 제시하여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형성 · 관리하고자 함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친환경 그린디자인(Green Design)

-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안산의 위상에 걸맞는 각 부문에 대한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도시경관의 미래를 창출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범죄예방형 디자인(CPTED Design)

- 안전한 도시의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적, 사적 공간 및 시설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 작성으로 디자인을 이용한 범죄예방형 도시환경을 창출

다계층을 배려하는 모두를 위한 디자인(Universal Design)

- 노약자, 장애우, 여성, 외국인 등 다계층의 소통을 배려하는 가이드라인 작성으로 살기좋고 편리한 도시환경 창출

문화와 예술이 조화로운 보다 나은 디자인(Better Design)

- 안산의 잠재적 문화성을 증진시키는 문화예술 창조형 도시경관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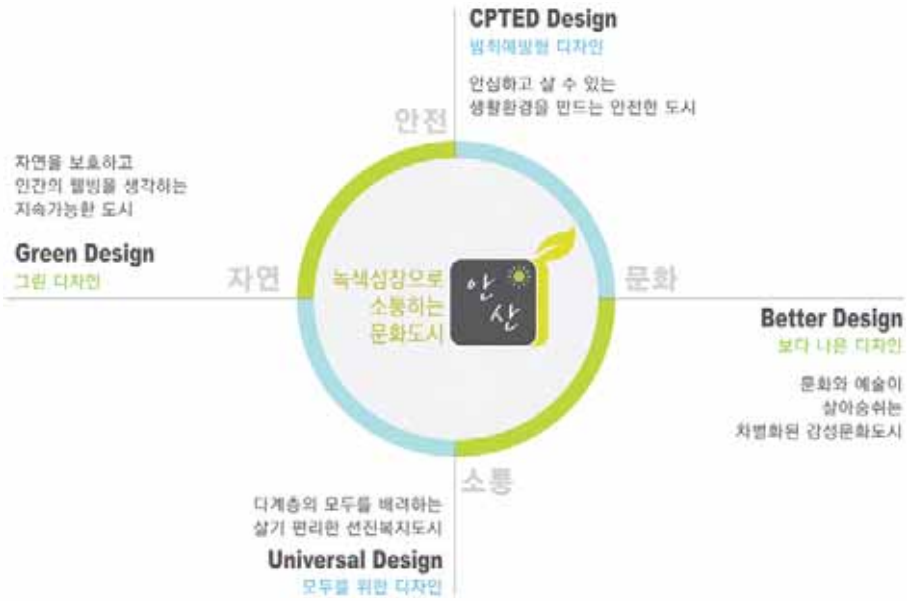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의 기본원칙

기본원칙 디자인 개념

Green Design

- "그린디자인(Green Design)"이란 지구 환경의 보호에 책임의식을 갖는 설계 · 디자인을 말하며, 에너지 절약 및 재생,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재료 등을 위한 다양한 디자인 산업이 발전하고 있어 그린마크 건축물 등 녹색성장 에너지 절약을 추구하는 제도적 디자인 또한 포함됨

CPTED Design

-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디자인이라 함은 적절한 건축설계나 도시계획 등을 통해 대상지역의 방어적 공간특성을 높여 범죄가 발생할 기회를 줄이고 지역주민들이 안전함을 느끼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종합적인 범죄예방 전략을 말함

Universal Design

-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이란, 환경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을 위한 생활을 쾌적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됨
- 성별, 연령, 구적, 문화적 배경, 장애의 유무에도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는 제품 및 사용 환경을 만드는 디자인, 즉 무장애 디자인(Barrier-free Design)을 말하며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Design For All)', '범용(汎用) 디자인'이라고도 불림
- 특히 장애인이나 어린이,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뿐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유용한 것으로 장애의 유무와 상관 없이 모든 사람이 무리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구, 시설, 설비를 설계하는 것을 유니버설 디자인(공용화 설계)이라고 함
- 최근에는 공공교통기관 등의 손잡이, 일용품 등이나 서비스, 또 주택이나 도로의 설계 등 넓은 분야에서 쓰이는 개념임

Better Design

- "보다 나은 디자인(Better Design)"이란, 안산시 경관디자인을 위한 창조어로서 기존 도시가 지닌 자연과 문화예술자원을 한차원 높은 단계의 아름다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조화로운 창조의 디자인을 명시함

2장 매뉴얼 활용방법

지침의 구성체계

· 안산시 기본경관계획의 경관설계지침은 크게 경관중점관리구역의 특정대상에 적용되는 **<유형별 경관설계지침>**과 모든 경관구성요소 대상과 계획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구성요소별 경관설계지침>**으로 구성하여 제시함

지침의 활용체계

1단계 : 설계지침 적용표 확인

건축물 용도 혹은 시설물의 종류, 경관권역 등에 따라 대상별 가이드라인을 확인

2단계 : 설계 및 체크리스트 작성

가이드를 고려한 설계 및 계획 후 체크리스트에 반영여부 자가진단

3단계 : 심의 및 허가시 체크리스트 검토

해당 공무원 및 심의위원의 허가 및 심의시 참고자료로서 검토/활용

유형별 경관설계지침 체크리스트 예시

요소별 경관설계지침 체크리스트 예시

제 2부 유형별 가이드라인

DESIGN GUIDELINE

1장 유형별 경관설계지침의 구성

2장 경관중점설계지침

1. 도심경관권
2. 구릉지경관권
4. 철도경관축
5. 하천경관축
6. 연안경관축
7. 문화적 경관거점
8. 대부도 수변경관

1장 유형별 경관설계지침의 구성

1. 경관중점관리구역에 따른 경관유형 설정

경관중점관리구역 설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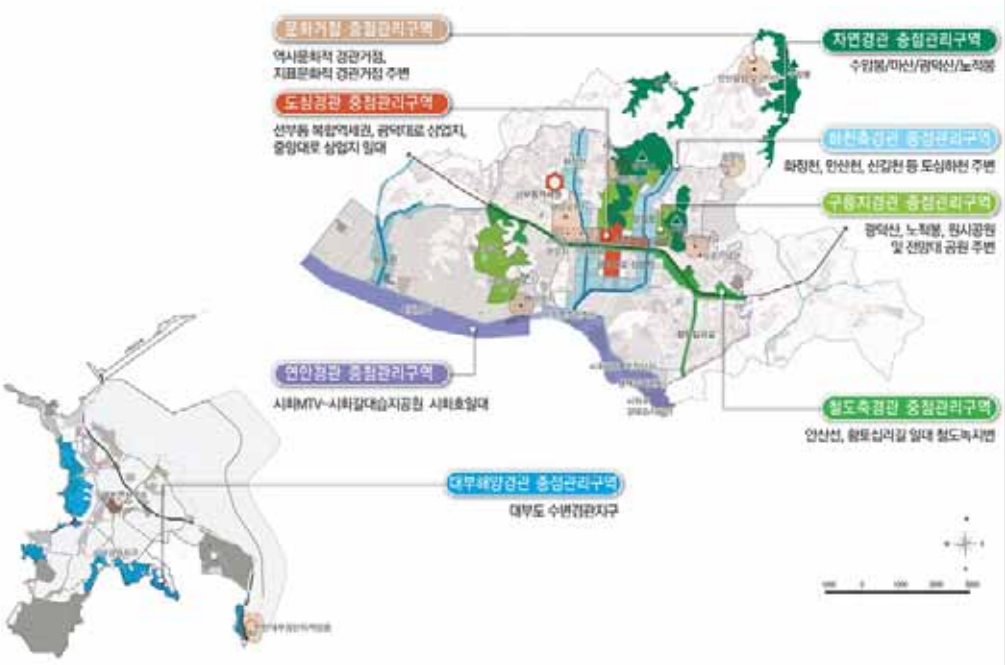

안산의 경관중점관리구역

경관중점관리구역		설정사유
도심경관권	선부동 복합역세권	◦복합 도시활동경관 형성을 관리하기 위한 지역
	광덕대로 도시상징가로	◦미래 도시상징로 형성을 관리하기 위한 지역
	중앙대로 도시간선가로	◦도시 주요간선가로 경관관리를 위한 지역
구릉지경관권	광덕산 및 노적봉 주변	◦구릉지 및 녹지핵 등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지역
	원시공원 주변	◦문화 및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지역
자연경관권	수암봉, 마산, 광덕산, 노적봉	◦도시의 배경이 되는 산림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지역
철도축	안산선/ 소사~원시선	◦저탄소녹색성장의 보행·자전거 녹색 네트워을 위한 지역
하천축	화정천/ 안산천	◦공공의 친수공간 및 수변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지역
연안축	시화호	◦시화호의 조화로운 연안경관 개발을 위한 지역
문화거점	역사문화적 경관거점	◦안산읍성, 이익선생묘, 별망성지 등 문화재 경관을 정비하기 위한 지역
	지표문화적 경관거점	◦도시 랜드마크 경관을 관리하기 위한 지역
대부도	수변경관지구	◦대부도의 내외부 조망경관 보호를 위한 지역

2장 경관중점설계지침

1. 도심경관권 경관중점설계지침 체크리스트

1 건축 배치

정돈된 이미지의 가로경관형성을 위해 주변 건축물과의 배치를 고려한다.

- 도심중점경관관리권역내 위치하는 건축물의 리모델링/재개발 사업시 개방감과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배치 시 건축선을 후퇴하여 주도로부분의 조망통로를 확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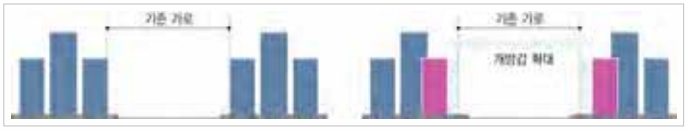

- 주변 건축물과의 가로변 배치연속성을 확보하여 오픈스페이스 확보 및 통일감있는 건축선을 유도한다.

추진방향	경관검토항목	평가	비고
개방감 확보	◦ 건축선후퇴를 통해 가로 개방감을 확보하고 주요 조망대상 방향으로의 조망통로를 확보		
연속성	◦ 인상적이며 연속성있는 도시중심가로형성을 위해 가로에 면해 건축물의 장변 배치		

2 규모 및 높이

인공적 도시스카이라인을 완화하는 도심부 건축물의 규모 및 높이를 유도한다.

- 간선도로에 면하는 건축물로부터 블럭 내 건축물까지 순차적인 건축물 층고가 형성토록 유도하여 가로경관의 개방감과 변화감을 확보하고 다이나믹한 가로경관을 형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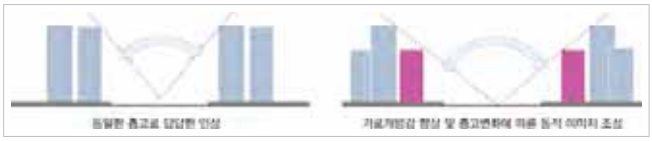

- 주변건축물군의 경관조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건축물의 층고는 주변 건축물 높이의 75%~125%내외의 건축물 층고를 유지하며 폭이 주변 건축물보다 넓을 경우 100%이하가 되도록 유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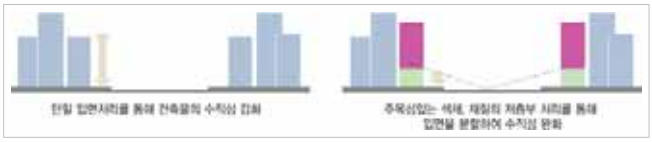

- 수직적인 건축물경관의 위압감 완화를 위해 저층부의 재질, 색채변화를 통한 분절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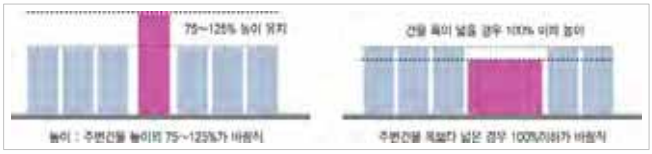

추진방향	경관검토항목	평가	비고
개방감	◦ 건축물 층고의 변화를 통해 가로의 개방감 향상		
스카이라인	◦ 도심경관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스카이라인 형성 ◦ 순차적인 높이변화로 건축 스카이라인 경관 특화		
압박감	◦ 고층건물의 수직성을 완화할 수 있는 시각적 완화방안		

3 형태 및 외관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성을 유지하는 개별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을 창조한다.

- 형태 및 외관은 주변 경관자원 및 기존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형태로 단일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의 부각보다는 통일된 가로경관형성에 중점을 둔다.
- 설비시설이나 건축물의 부속 구조물시설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옥상광고판의 설치를 지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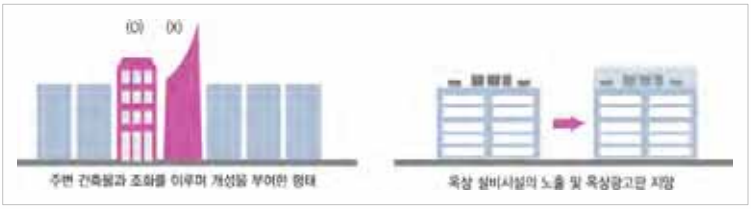

추진방향	경관검토항목	평가	비고
주변조화	◦ 주변 건축물의 외관과 기본 형태는 유사하게 계획하되 부분적인 변화감을 추구하여 가로의 개성부여		
미관성	◦ 건축 부속시설에 대한 차폐를 통해 정돈된 가로경관 연출 ◦ 옥상광고물 등 건축물에 부속되는 시설의 최소화		

4 재질

주변 건축물과 소재의 조화를 추구하고, 재질의 변화를 이용한 건축물의 인공적 압박감을 저감한다.

- 건축물 재질은 주변 경관자원과 조화되는 소재를 채택하고, 발광소재나 투명소재 등 지나치게 눈에 띄거나 부조화되는 소재의 사용을 지양한다.
- 정돈된 가로이미지 연출을 위해 타일 등 단위면적이 작은 재질 사용은 지양한다.
- 층고가 높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재질과 부재질을 2종류 이상 사용해서 고층건물의 높이감을 완화하면서 분절효과를 통한 위압감을 완화를 유도한다.

추진방향	경관검토항목	평가	비고
조화성	◦ 주변 경관자원 및 건축물과 조화되는 소재의 사용 ◦ 이질적 소재(지나친 투명, 반사, 발광소재)의 사용 지양 ◦ 도시 중심가로변으로 소규모 타일시설의 사용을 지양		
압박감	◦ 고층건물의 경우 주재질과 부재질을 2종류 이상 사용하여 고층건물의 높이감 완화 ◦ 재질자체에 의한 자연스러운 색채계획 수립을 권장		

5 외부 공간

도시민에게 휴식 및 녹의 경관을 제공하도록 건축물 공개공지 조성을 유도한다.

- 건축물 공개공지는 주간선가로에 면하도록 배치하고 연속된 건축물의 공개공지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성 및 보행자의 이용편의성을 높인다.
- 건축부속공간의 녹화를 권장하여 가로의 녹음을 풍부하게 조성한다.
- 건축물 저층부의 식재공간을 풍부하게 확보하여 여과없이 노출되는 인공경관을 완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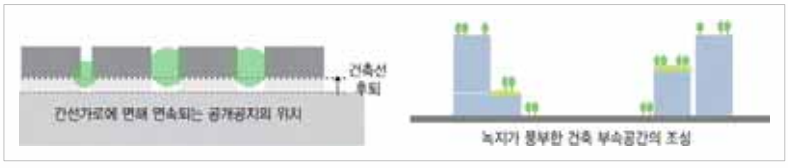

추진방향	경관검토항목	평가	비고
연속성	◦ 주변 경관자원과 인접하는 공개공지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주간선 가로변으로의 배치를 유도		
환경성	◦ 건축부속공간의 녹화를 권장하며 저층부의 식재로 인공경관을 완화		

6 야간 경관	***야간활동경관의 조형미와 함께 조화성을 유도하는 야간경관을 계획한다.*** • 건물의 입체감 및 깊이감을 살릴 수 있도록 연출한다. • 주변 분위기에 어울리며 조형미를 살릴 수 있는 부드러운 빛을 연출하며 지나친 경관조명으로 광공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배려한다. ※안산시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별첨된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
7 색채	***가로에 통일된 색채계획을 수립하며, 강약이 있는 색상의 사용을 권장한다.*** • 재질계획과 함께 색채계획을 수립하여 재질 본연의 색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며, 주변 지역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지나친 발광, 원색, 고채도 및 고명도 색상의 사용을 지양한다. • 고채도 고명도의 색상은 건축물 일부의 강조색상으로의 사용 가능하다. ※안산시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별첨된 〈색채경관 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
8 옥외 광고물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성을 유지하는 개별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을 창조한다.*** • 옥외광고물의 부착 위치 및 광고물 글자의 사이즈 등 세부적인 규정을 정하여 가로 건축물에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유도 • 가로경관 및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입간판의 설치를 지양하고, 건축물 옥상 등에 설치하는 광고물, 건축물 유리에 부착하는 광고물의 설치를 지양 ※ 2009년 별도 수립된 〈안산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

평가 : 적극고려 → ○, 부분고려 → △, 반영불가 → x, 해당사항 없음

※ 1. 항목별 세부내용 및 적용대상 구분은 가이드라인 내용을 참조하여 계획

※ 2. 가이드라인 항목별 적용여부를 [적극고려 → ○, 부분고려 → △, 반영불가 → ×,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한다.

※ 3. 작성시 [부분고려 → △, 반영불가 → ×]에 해당하는 경우 비고란 혹은 첨부자료를 통해 해당사유를 기재한다.

※ 건축물 및 공공공간(오픈스페이스), 공공시설물에 대한 세부 지침이 요구될 경우, 안산시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별첨된 〈건축물경관 가이드라인〉 및 〈공공공간(오픈스페이스) 가이드라인〉,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을 참조함

메모란

위치 :	***건축주 :***
규모 :	***설계자 :***

2. 구릉지경관권 경관중점설계지침 체크리스트

1 건축 배치

구릉녹지 지형의 고유특성이 훼손되지 않으며 열린경관을 형성하도록 건축물 배치를 유도한다.

• 구릉형 산림방향으로의 건축물의 장변배치를 지양하여 통경축 및 개방감 확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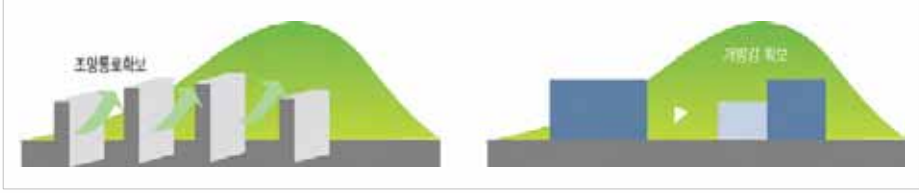

• 단지형의 건축물 배치시 구릉형 산림방향으로의 입면차폐도를 적용하여 조망통로를 확보하고 열린 경관을 형성한다.

• 구릉형 산림방향으로 점진적인 층고배치가 이루어져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수 있도록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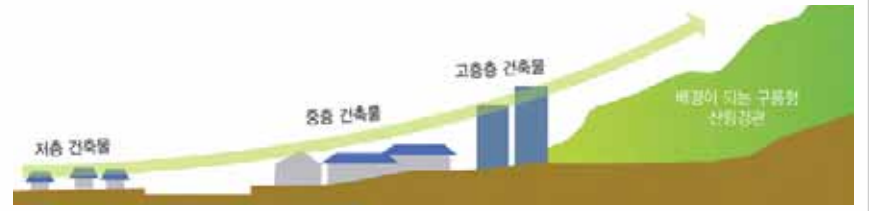

추진방향	경관검토항목	평가	비고
조망통로	◦ 조망대상인 구릉형 산림방향으로 조망통로를 확보한 건축배치 ◦ 조망통로변 식재를 통해 인공-완충-자연경관으로의 자연스런 흐름을 유도		
스카이라인	◦ 구릉형 산림방향으로 저-중-고층의 배치를 통해 자연스런 스카이라인 흐름을 연출		
인동간격의 확보	◦ 건축물간의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여 산림방향으로의 조망차단 지양		

2 규모 및 높이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 흐름을 유도하도록 규모 및 높이의 변화감을 부여한다..

- 스카이라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곡면 분석 등을 통한 층고관리를 고려한다.

- 자연스런 스카이라인 흐름을 유도하기 위해 건물군의 층고를 변화감있게 계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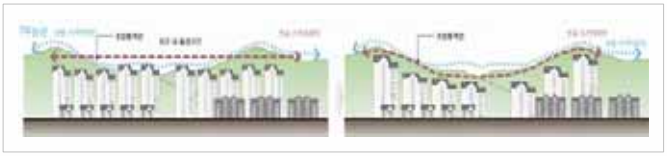

- 산림의 스카이라인 흐름이 시가지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계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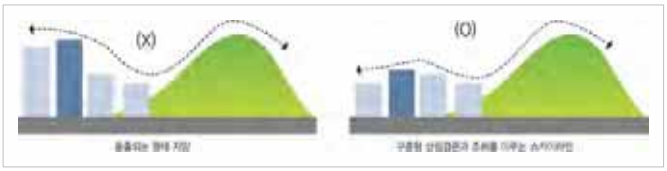

추진방향	경관검토항목	평가	비고
스카이라인	◦ 산정부분의 조망을 차단하지 않도록 건축물 층고관리 ◦ 산림스카이라인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스카이라인 관리		
주변조화	◦ 건축군의 층고변화를 통해 배경이 되는 변화감있는 스카이라인 형성		

3 형태 및 외관

건축물의 매스감을 저감하고 주변 구릉지 경관과 조화로운 건축물 외관을 계획한다.

- 주변 건축물과 조화되는 규모의 건축경관을 형성토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의 매스감 최소화 대책을 마련한다. (층고변화를 통한 입면분절)

- 건축물의 최고층부의 돌출형태를 지양하여 산림경관과의 조화를 배려한다.
- 주거지의 경우 지붕부의 형태를 경사지붕형태로 채택하여 건축경관이 주는 인공성 및 위압감을 완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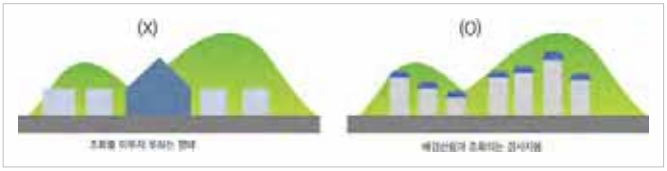

추진방향	경관검토항목	평가	비고
조화성	◦ 최고층부의 돌출형태를 지양하여 산림스카이라인과의 조화 도모 ◦ 주변 건축물과 조화되는 형태로 단일 건축경관의 랜드마크화가 아닌 전체 경관군(群)으로서의 조화를 추구		
인공성 저감	◦ 산림능선과 조화되는 경사지붕형태를 취하여 박스형 건축물의 인공적인 느낌, 위압감을 완화		

4 재질

구릉지 조망을 고려하여 주변 자연경관과 소재의 조화를 추구한다.

- 건축물 재질은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소재를 사용하도록 하며, 투명, 발광, 반사소재의 사용은 지양하여 구릉형 산림방향으로의 조망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계획하며, 불가피한 경우 사람 눈높이로 건축주변 공간을 녹화하여 영향을 최소화한다.
-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되는 재질을 사용하며, 재질 자체색을 고려하여 색채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재질을 선정한다.

추진방향	경관검토항목	평가	비고
조망성	◦ 조망에 영향을 미치는 투명, 발광, 반사소재의 사용 제한 ◦ 불가피한 경우 눈높이 녹화를 통해 조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조화성	◦ 재질 자체의 색상을 고려하여 주변 건축물과 조화되는 재질을 사용		

5 외부공간

구릉지경관과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외부공간 녹화를 권장한다.

- 조망통로가 되는 건축외부공간의 녹화를 통해 건축물의 인공성을 완화하면서 구릉형 산림경간지로의 자연스런 조망통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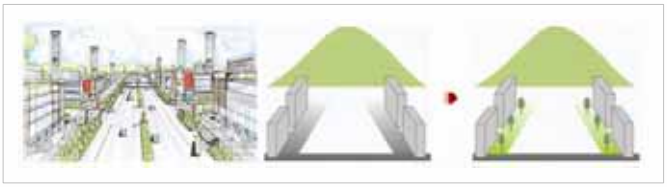

- 공개공지 등 건축외부공간이 연속적으로 위치할 수 있도록 하며, 건축물 부속공간의 녹화를 통해 자연성을 향상한다.
- 주변의 공원녹지,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오픈스페이스를 네트워크화하여 구릉형 산림경관의 녹지축이 시가지내로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지형보호를 위해 옹벽 등 구조물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고 자연지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과 일체화되거나 시각적으로 차폐하도록 한다.

추진방향	경관검토항목	평가	비고
조망성	◦ 조망통로 주변의 녹지조성으로 자연스런 조망흐름을 유도		
연속성	◦ 주변 경관자원 및 인접하는 건축 외부공간이 연속적으로 위치하도록 하여 오픈스페이스를 네트워크화 ◦ 산림경관 녹지축이 시가지로 확장되어 연계성을 갖도록 유도		
구조물	◦ 자연지형을 활용하고 가급적 옹벽 등의 구조물 설치를 지양 ◦ 불가피한 경우 차폐 등의 영향 저감대책을 수립		

6 야간 경관	***야간활동경관의 조형미와 함께 조화성을 유도하는 야간경관을 계획한다.*** • 건물의 입체감 및 깊이감을 살릴 수 있도록 연출한다. • 주변 분위기에 어울리며 조형미를 살릴 수 있는 부드러운 빛을 연출하며 지나친 경관조명으로 광공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배려한다. ※안산시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별첨된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
7 색채	***재질 본연의 색을 이용한 조화로운 색채계획을 권장한다.*** • 재질계획과 함께 색채계획을 수립하여 재질 본연의 색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며, 주변 지역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지나친 발광, 원색, 고채도 및 고명도 색상의 사용을 지양한다. • 고채도 고명도의 색상은 건축물 일부의 강조색상으로의 사용 가능하다. ※안산시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별첨된 〈색채경관 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
8 옥외 광고물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성을 유지하는 개별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을 창조한다.*** • 옥외광고물의 부착 위치 및 광고물 글자의 사이즈 등 세부적인 규정을 정하여 가로 건축물에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유도 • 가로경관 및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입간판의 설치를 지양하고, 건축물 옥상 등에 설치하는 광고물, 건축물 유리에 부착하는 광고물의 설치를 지양 ※ 2009년 별도 수립된 〈안산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

평가 : 적극고려 → ○, 부분고려 → △, 반영불가 → x, 해당사항 없음

※ 1. 항목별 세부내용 및 적용대상 구분은 가이드라인 내용을 참조하여 계획

※ 2. 가이드라인 항목별 적용여부를 [적극고려 → ○, 부분고려 → △, 반영불가 → ×,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한다.

※ 3. 작성시 [부분고려 → △, 반영불가 → ×]에 해당하는 경우 비고란 혹은 첨부자료를 통해 해당사유를 기재한다.

※ 건축물 및 공공공간(오픈스페이스), 공공시설물에 대한 세부 지침이 요구될 경우, 안산시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별첨된 〈건축물경관 가이드라인〉 및 〈공공공간(오픈스페이스) 가이드라인〉,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을 참조함

메모란

위치 :	*건축주 :*
규모 :	*설계자 :*

3. 자연경관권 경관중점설계지침 체크리스트

1 건축 배치

산림경관을 향한 조망성을 확보하고 자연과 조화로운 건축 배치를 유도한다.

• 단지형의 건축물 배치시 산림방향으로의 입면차폐도를 적용하여 조망통로를 확보하고 열린 경관을 형성한다.

• 계단형 배치가 아닌 자연스런 지형흐름을 살린 건축물의 높이를 계획한다.

추진방향	경관검토항목	평가	비고
조망통로	◦ 산림방향으로의 입면차폐도 적용으로 열린 경관을 확보		
순응형 배치	◦ 지형의 흐름을 고려하여 자연과 순응하는 건축물을 계획		

2 규모 및 높이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 흐름을 유도하도록 규모 및 높이의 변화감을 부여한다..

• 스카이라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곡면 분석 등을 통한 층고관리를 고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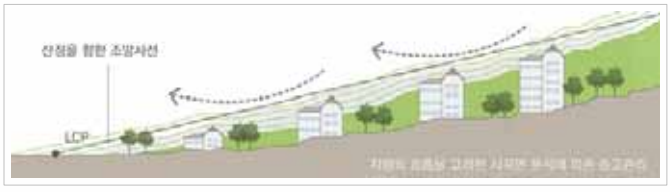

• 일괄적 건축물 층고 규제에 의한 획일적 스카이라인 형성을 지양한다.

추진방향	경관검토항목	평가	비고
스카이라인	◦ 시곡면 분석을 통해 7부 능선 이상 산정으로의 조망을 확보하는 층고 계획		
	◦ 산림 7부능선의 조망통제선 설정으로 건물군의 층고를 변화감있게 배치하여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 흐름 유도		

3 형태 및 외관, 재질

건축물의 매스감을 저감하고 주변 구릉지 경관과 조화로운 건축물 외관을 계획한다.

- 지붕부의 형태를 경사지붕형태로 채택하여 박스형의 건축경관이 주는 인공성 및 위압감을 완화한다.

- 주변 자연과 조화되는 재질을 사용하며, 재질 자체색을 고려하여 색채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재질을 선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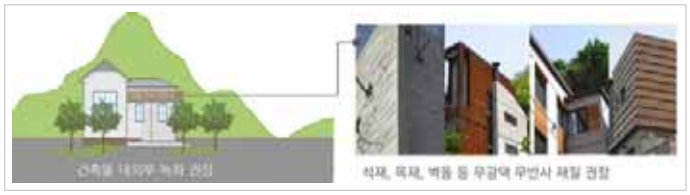

추진방향	경관검토항목	평가	비고
인공성 저감	◦ 산림능선과 조화되는 경사지붕형태를 취하여 박스형 건축물의 인공적인 느낌, 위압감을 완화		
조화성	◦ 조망에 영향을 미치는 투명, 발광, 반사소재의 사용 제한 ◦ 불가피한 경우 눈높이 녹화를 통해 조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4 외부 공간

산림 자연경관과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외부공간 녹화를 권장한다.

- 조망통로가 되는 가로의 녹화, 건축물 및 구조물의 차폐를 통해 산림경관으로의 자연스런 조망통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지형보호를 위해 옹벽 등 구조물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고 자연지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과 일체화되거나 시각적으로 차폐하도록 한다.

추진방향	경관검토항목	평가	비고
조망성	◦ 조망대상인산림방향으로 조망통로를 확보한 건축배치 ◦ 조망통로변 식재를 통해 인공-완충-자연경관으로의 자연스런 흐름을 유도		
구조물	◦ 자연지형을 활용하고 가급적 옹벽 등의 구조물 설치를 지양 ◦ 불가피한 경우 차폐 등의 영향 저감대책을 수립		

5 야간 경관	***야간활동경관의 조형미와 함께 조화성을 유도하는 야간경관을 계획한다.*** • 인공적인 빛의 느낌을 지양하고 자연경관을 고려하여 편안하고 은은한 조명으로 연출한다. • 공원 등 활동지역의 빛을 확보하고, 산림 방향으로 이동할수록 빛의 강도를 줄여 연출한다. ※안산시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별첨된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
6 색채	***재질 본연의 색을 이용한 자연과 조화로운 색채계획을 권장한다.*** • 재질계획과 함께 색채계획을 수립하여 재질 본연의 색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며, 주변 지역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지나친 발광, 원색, 고채도 및 고명도 색상의 사용을 지양한다. • 고채도 고명도의 색상은 건축물 일부의 강조색상으로의 사용 가능하다. ※안산시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별첨된 〈색채경관 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
7 옥외 광고물	***주변 산림과의 조화성을 유지하는 안내 및 광고시설을 계획한다.*** • 옥외광고물의 부착 위치 및 광고물 글자의 사이즈 등 세부적인 규정을 정하여 가로 건축물에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유도 • 가로경관 및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입간판의 설치를 지양하고, 건축물 옥상 등에 설치하는 광고물, 건축물 유리에 부착하는 광고물의 설치를 지양 ※ 2009년 별도 수립된 〈안산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

평가 : 적극고려 → ○, 부분고려 → △, 반영불가 → x, 해당사항 없음

※ 1. 항목별 세부내용 및 적용대상 구분은 가이드라인 내용을 참조하여 계획

※ 2. 가이드라인 항목별 적용여부를 [적극고려 → ○, 부분고려 → △, 반영불가 → ×,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한다.

※ 3. 작성시 [부분고려 → △, 반영불가 → ×]에 해당하는 경우 비고란 혹은 첨부자료를 통해 해당사유를 기재한다.

※ 건축물 및 공공공간(오픈스페이스), 공공시설물에 대한 세부 지침이 요구될 경우, 안산시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별첨된 〈건축물경관 가이드라인〉 및 〈공공공간(오픈스페이스) 가이드라인〉,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을 참조함

메모란

위치 :	***건축주 :***
규모 :	***설계자 :***

4. 철도경관축 경관중점설계지침 체크리스트

1 건축물의 배치·높이·형태·재질

문화가로 및 오픈스페이스와의 연계성을 고려한다.

- 도심의 주요 열린 경관축 역할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건축물 오픈스페이스와 자전거 길이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오픈스페이스 연결 배치한다.

- 건축물 층고는 가로개방감 확보를 위해 도심방향으로 점차적으로 높아지도록 관리계획한다.
- 문화가로가 위치하는 지역으로 감각적인 형태의 건축물 디자인을 유도하여 개성있는 거리의 이미지를 부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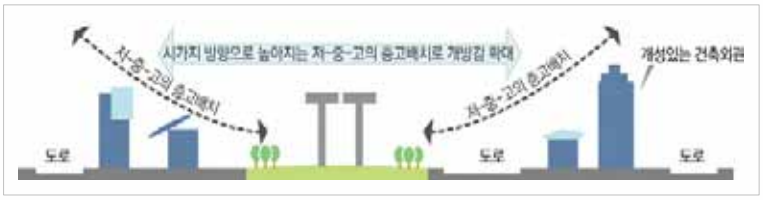

- 역사건축시설은 지역특성을 반영한 개성있는 디자인 형태를 취하여 도시 진입관문으로서의 위상을 부여한다.
- 문화가로가 위치하는 지역으로 건축 재질 및 색채 등에 있어서도 디자인성, 창조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주변 경관과 큰 이질감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자율성을 부여한다.

추진방향	경관검토항목	평가	비고
연계성	◦ 문화가로와 자전거길 방향으로의 건축물 오픈스페이스가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		
디자인성	◦ 문화가로의 위상에 걸맞는 개성있는 건축물의 외관 및 재질 도입 ◦ 역사시설은 도시진입 관문거점으로서 안산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개성있는 형태로 리모델링 ◦ 주변 녹지공간 등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주변경관과의 큰 이질감 없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재질 선정		
개방성	◦ 도심지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높이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하여 문화가로, 자전거길의 개방감 확보		

2 구조물의 형태·외관·재질

철도횡단교량 및 철도부속시설의 환경 및 미관개선을 처리한다.

- **철도횡단교량**은 교량 리모델링 및 주변 환경개선 작업으로 교량으로 인해 주변경관에 미치는 압박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처리한다.
- 교량 외장재 사용 및 색채 개선 등을 통한 미관개선과 교량 주변의 야간경관을 계획하고 교량 하부공간은 완충녹지대 내에 설치되는 자전거길, 문화커뮤니티 시설공간이 연결될 수 있도록 처리한다.

- **기타 휀스, 방음벽 등의 철도부속시설**은 슈퍼그래픽 등을 활용한 색채, 미관 개선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토록 한다.

추진방향	경관검토항목	평가	비고
철도횡단 교량	◦ 교량 리모델링 및 환경개선으로 주변경관 압박감 최소화 ◦ 외장재 및 색채개선, 야간경관을 계획하고, 자전거길, 문화시설과 연계하여 교량 하부공간을 처리		
철도 부속시설	◦ 휀스, 방음벽 등 부속시설의 슈퍼그래픽, 색채 등 미관개선		

3 외부공간

철도 완충녹지 및 역사건축물 외부공간의 문화성을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 **철도변 완충녹지구간**은 자전거길 및 문화가로 조성을 위한 우선사업을 시행하여 일괄적인 공간의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처리한다.
- 신호없이 달리는 자전거도로 개념을 도입하여 주요 연결거점 내 루프형 보도교량을 디자인하여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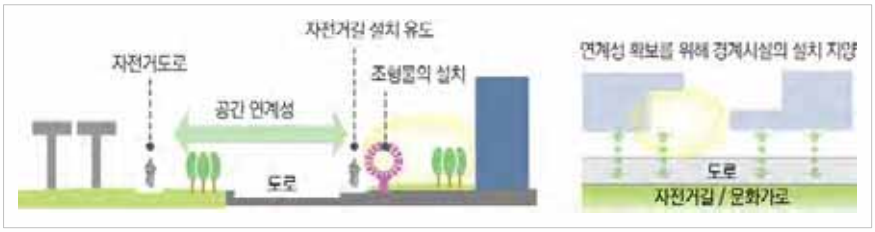

- **일반건축물의 건축외부공간**은 문화가로방향으로 열린 형태를 취하여 공간의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하며 가로조형물 설치, 문화가로와 연계되는 커뮤니티 공간의 조성 등 문화가로 공간이미지에 적합한 형태로 디자인을 유도한다.
- 장기적으로는 공개공지 및 건축선 후퇴로 보도부의 보행공간을 확충하고, 일부구간은 자전거길의 설치를 유도하여 네트워크화를 도모한다.
- **역사건축물의 건축외부 공간(진입광장)**은 안산진입거점이면서 문화가로의 거점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기존 포장면 위주의 공간형태에서 벗어나 랜드마크형 조형시설 및 휴식시설, 녹지공간을 충분히 갖추어나갈 수 있도록 정비한다.
- **교량구조물의 하부공간**은 문화가로의 단절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교대 및 교량하부 노출면은 공공디자인 개념을 도입한 슈퍼그래픽등을 통해 인공성 및 위압감을 완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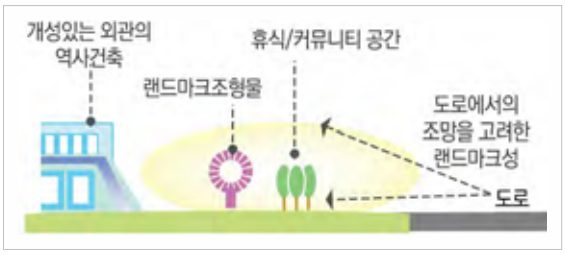

추진방향	경관검토항목	평가	비고
연계성	◦ 자전거길과 문화가로와의 연계성 확보가 가능토록 철도축 방향으로 외부공간 배치 ◦ 공간의 단절감이 생기지 않도록 경계시설의 설치를 지양 ◦ 장기적으로는 보도와 함께 자전거길을 확충하여 네트워크화가 가능하도록 배려		
미관성	◦ 도시의 중심 문화가로 위상에 걸맞는 개성있는 외부공간의 조성 ◦ 문화예술 조형물 및 디자인 시설물의 설치 유도		

4 야간 경관	***야간활동경관의 조형미와 함께 조화성을 유도하는 야간경관을 계획한다.*** • 도로횡단 철도교량 및 역사건축물 등 주요 시설중심의 야간경관조명을 연출하여 문화가로의 개성있는 야간경관을 조성한다. • 시간 및 계절의 변화감을 고려하여 야간경관 조명계획을 수립한다. ※안산시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별첨된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
5 색채	***문화가로의 위상을 고려한 개성있는 색채계획을 권장한다.*** • 재질계획과 함께 색채계획을 수립하여 재질 본연의 색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며, 문화가로의 위상을 고려하여 개성 있는 색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한다. • 개성을 부여하되 색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색상을 기준으로 하여 무분별한 색채사용에 따른 산만한 경관조성을 지양한다. ※안산시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별첨된 〈색채경관 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
6 옥외 광고물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성을 유지하는 개별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을 창조한다.*** • 대형 전광판이나 돌출형, 입간판 등의 옥외광고물의 배치를 지양하고 역사 내 및 주변 역세권 상가의 옥외광고물은 건축물 본연의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디자인을 설치한다. ※ 2009년 별도 수립된 〈안산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

평가 : 적극고려 → ○, 부분고려 → △, 반영불가 → x, 해당사항 없음

※ 1. 항목별 세부내용 및 적용대상 구분은 가이드라인 내용을 참조하여 계획

※ 2. 가이드라인 항목별 적용여부를 [적극고려 → ○, 부분고려 → △, 반영불가 → ×,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한다.

※ 3. 작성시 [부분고려 → △, 반영불가 → ×]에 해당하는 경우 비고란 혹은 첨부자료를 통해 해당사유를 기재한다.

※ 건축물 및 공공공간(오픈스페이스), 공공시설물에 대한 세부 지침이 요구될 경우, 안산시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별첨된 〈건축물경관 가이드라인〉 및 〈공공공간(오픈스페이스) 가이드라인〉,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을 참조함

메모란

위치 :	*건축주 :*
규모 :	*설계자 :*

5. 하천경관축 경관중점설계지침 체크리스트

1 건축 배치

하천의 개방감과 조망성을 확보하는 건축배치를 유도한다.

- 하천 폭 및 하천에 근접하여 위치하는 공동주택단지 규모에 따라 건축선이 후퇴하도록 지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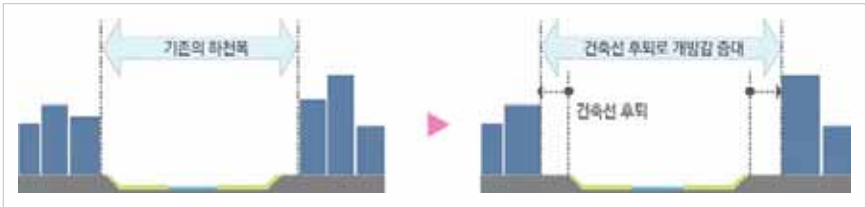

- 하천축과 평행한 판상형 공동주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각적 차폐감과 단조로움을 완화하기 위하여 하천축과 일정한 각도(30°~45°) 이상의 사각을 확보한 사각배치 및 인동간격을 확보하여 하천에서의 개방감을 확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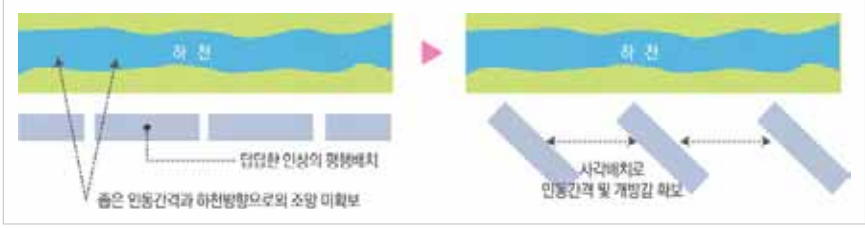

- 수변에 조성되는 건축물의 차폐감 완화를 위해 입면차폐도 기준을 마련하여 하천에 면하는 건축물의 장변배치를 지양한다.
- 하천 개방감 및 건축물 위압감 완화를 위해 건축선 후퇴와 함께 하천변 V자형 층고의 건축 배치하여 하천변 구릉 및 녹지지역에 대한 조망을 확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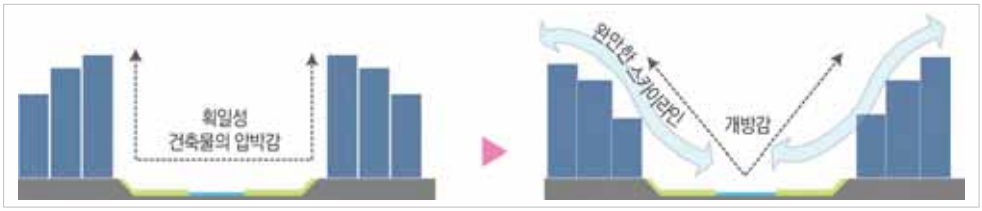

추진방향	경관검토항목	평가	비고
조망확보	◦ 수변 및 주요 조망점에서 주요 경관자원으로의 양호한 조망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선 후퇴 적용 ◦ 사각배치로 판상형 건축물의 차폐감 완화 ◦ 하천변에서부터 건축물의 층고가 저-〉고의 형태로 배치되도록 고려		
인동간격의 확보	◦ 건축물간의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여 하천방향으로의 조망차단 지양		

2 규모 및 높이

수변경관과 조화롭고 유연성 있는 스카이라인 형성을 유도한다.

- 유연성 있는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하여 평균 층수개념을 도입하여 획일적인 건축물의 층수배치를 지양하고 다양한 건축물의 높이가 형성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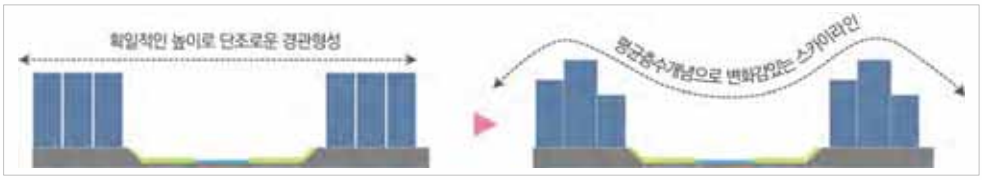

- 장대한 규모의 돌출건축물을 지양하고 다양하고 활력있는 스카이라인을 도모하며 큰 규모의 건축물인 경우 세장형으로 형태를 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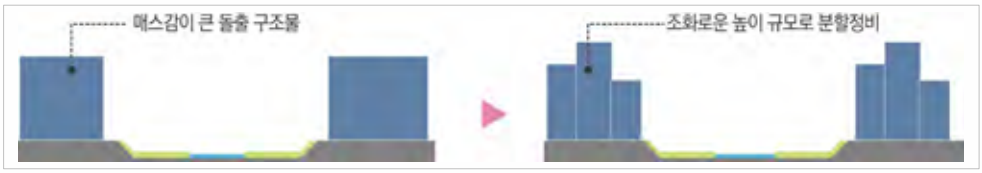

추진방향	경관검토항목	평가	비고
주변과 조화	◦ 수변경관 및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는 규모 및 높이를 도모 ◦ 지나치게 장대한 돌출형의 건축물을 지양하고 가급적 분동, 세장형 형태 등으로 디자인하여 주변 수변경관과의 조화를 유도		
스카이라인	◦ 지나치게 균등하거나 돌출되는 구조물 지양 ◦ 유연성 있는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하여 평균층수개념을 도입		

3 형태 및 외관

일률적 형태를 지양하고 고층부 형태의 차별화로 경관의 변화감을 추구한다.

- 주변 건축물과의 형태 조화를 원칙으로 하되 하천을 둘러싸고 있는 획일적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하천변 건축물의 일률적 형태를 지양하고 다양한 경관을 창출할 수 있는 형태를 추구한다.
- 시각적 노출이 많은 건축물 고층부 형태에 차별화를 두어 경관의 변화감을 추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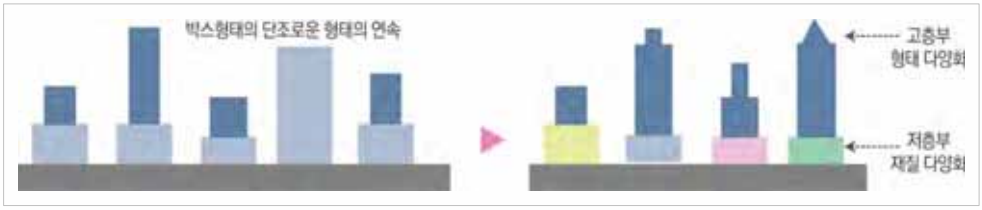

추진방향	경관검토항목	평가	비고
경관성	◦ 수변경관과 시각적 조화를 이루는 형태 및 외관을 추구하되 획일적인 경관형성을 탈피하기 위해 건축고층부등의 형태에 변화감을 추구		
압박감	◦ 수변으로의 조망차폐 및 압박감을 주는 장대한 입면을 지양		

4 재질

자연성을 강조하는 친자연형 소재 및 색상을 선정한다.

- 하천의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투명, 발광, 반사 소재의 사용을 지양한다.
- 주변 건축물과 조화되는 재질을 사용하며, 재질 자체색을 고려하여 색채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재질을 선정한다.
- 건축물의 경우 눈높이에 가까운 저층부의 재질을 친자연형 소재, 친자연형 색상으로 하여 하천과 인접한 공간의 자연성을 강조한다.

추진방향	경관검토항목	평가	비고
인공성 완화	◦ 조망에 영향을 미치는 투명, 발광, 반사소재의 사용 제한		
재질조화	◦ 재질 자체의 색상을 고려하여 주변 건축물과 조화되는 재질을 사용 ◦ 눈높이에 가까운 저층부 재질을 친자연형 소재, 친자연형 색상으로 도입		

5 외부공간

수변으로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조화로운 통합 디자인을 권장한다.

- 수변으로의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산책로 위주로 조성되어 있는 기존 수변에 자연소재(나무, 돌 등)의 데크 및 조망공간을 조성하여 다양한 친수경험을 제공하고, 장애인 및 자전거 이용자를 고려하여 램프형의 접근로를 정비한다.
- 인공구조로서 하천의 이미지와는 대치되는 하천 횡단 교량구조물 및 시설물은 통합된 디자인으로 재구성하여 하천의 이미지를 개선한다.

- 하천에 연접한 건축선을 후퇴시켜 녹지를 늘리고 하천변을 따라 그린웨이를 조성하여 자연성 및 녹시율을 증대시키며 수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경관을 연출한다.

추진방향	경관검토항목	평가	비고
접근성	◦ 수변으로의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산책로 위주로 조성되어 있는 수변에 데크 및 전망공간을 확보 ◦ 자전거이용자, 장애우 등을 고려한 램프 설치		
연속성	◦ 건축물 주변의 녹지조성으로 자연스런 연속성이 확보되도록 유도 ◦ 수변경관으로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외부공간을 계획		
구조물	◦ 구조물의 통합된 디자인 적용으로 하천의 이미지 개선 ◦ 개방공간으로 하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하천 횡단교량의 디자인 특화		

6 야간 경관	***하천의 생태환경을 고려한 야간경관을 계획한다.*** • 수변의 연속적인 야간경관형성을 고려하되 하천의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지역에 하천 횡단교량 등이 위치하는 주요 지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안산시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별첨된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
7 색채	***가로에 통일된 색채계획을 수립하며, 안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색상의 사용을 권장한다.*** • 재질계획과 함께 색채계획을 수립하여 재질 본연의 색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며, 주변 지역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지나친 발광, 원색, 고채도 및 고명도 색상의 사용을 지양한다. ※안산시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별첨된 〈색채경관 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
8 옥외 광고물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성을 유지하는 개별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을 창조한다.*** • 대형 전광판이나 돌출형, 입간판 등의 옥외광고물의 배치를 지양하여 하천에서의 조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 2009년 별도 수립된 〈안산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

평가 : 적극고려 → ○, 부분고려 → △, 반영불가 → x, 해당사항 없음

※ 1. 항목별 세부내용 및 적용대상 구분은 가이드라인 내용을 참조하여 계획

※ 2. 가이드라인 항목별 적용여부를 [적극고려 → ○, 부분고려 → △, 반영불가 → ×,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한다.

※ 3. 작성시 [부분고려 → △, 반영불가 → ×]에 해당하는 경우 비고란 혹은 첨부자료를 통해 해당사유를 기재한다.

※ 건축물 및 공공공간(오픈스페이스), 공공시설물에 대한 세부 지침이 요구될 경우, 안산시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별첨된 〈건축물경관 가이드라인〉 및 〈공공공간(오픈스페이스) 가이드라인〉,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을 참조함

메모란

위치 :	***건축주 :***
규모 :	***설계자 :***

6. 연안경관축 경관중점설계지침 체크리스트

1 건축 배치

조망성과 개방감을 확보하는 연안경관을 계획한다.

- 연안선에 평행되는 건축배치로 조망점이 형성되는 송산그린시티에서의 조망시 건축물 전면의 형태가 조망되어 안정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 건축물 평행배치로 발생할 수 있는 시화호 방향으로의 폐쇄감은 ①건축물의 형태를 슬림화하고 ②건축외부공간과 ③건축물 인동간격을 충분히 확보하여 이를 저감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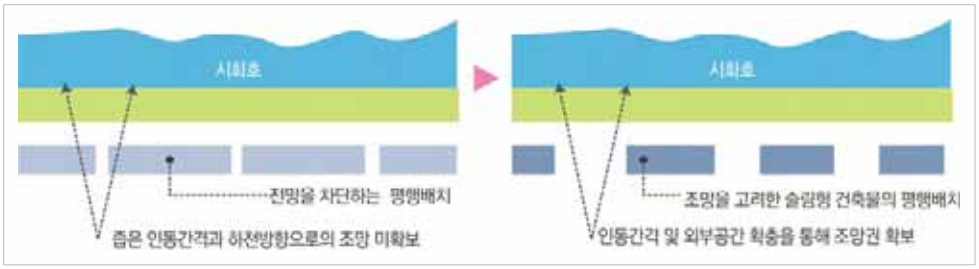

추진방향	경관검토항목	평가	비고
안정감	◦ 건축물의 정면이 시화호를 향하도록 평행 배치하여 건축물에서의 시화호 조망 및 연안경관의 안정감을 확보		
조망확보	◦ 건축물의 압박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형태를 슬림화 ◦ 건축물간의 인동간격 확보 ◦ 건축물 외부공간을 충분히 확보		

2 규모 및 높이

연안경관의 통경 확보와 강약이 있는 스카이라인을 계획한다.

- 조망점이 형성되는 송산그린시티에서의 조망거리를 고려하여 건축물 층고를 계획한다.
- 친환경산업단지인 시화MTV 지역의 경우 통경을 확보하여 저밀의 개방적인 스카이라인을 유도하고 시화호 북측 간척지 및 90BL 복합단지 등 도시형 개발지를 중심으로 강약이 있는 리드미컬한 스카이라인을 계획한다.

- 장대한 규모의 돌출건축물을 지양하고 다양하고 활력있는 스카이라인을 도모하며 큰 규모의 건축물인 경우 세장형으로 형태를 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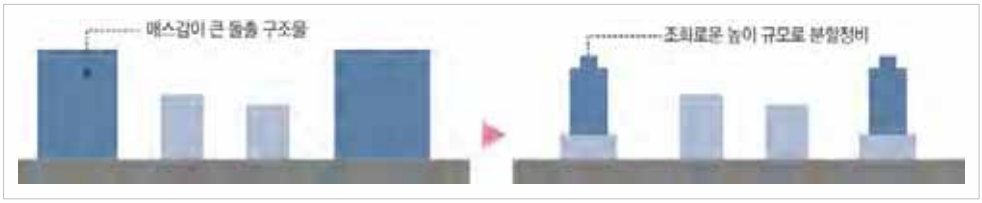

2 규모 및 높이 (이어서)

• 랜드마크가 되는 연안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층고에 변화감을 주어 리듬감 있는 연안 건축물의 스카이라인을 형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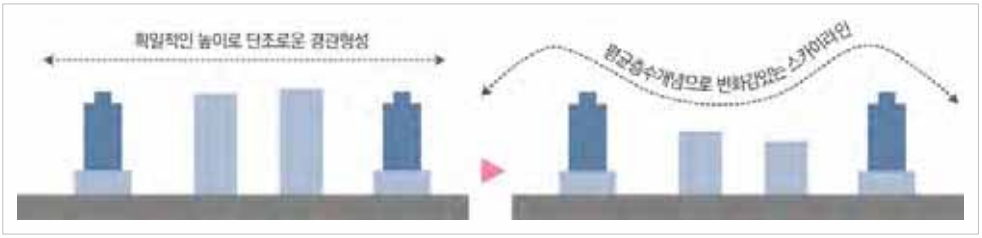

추진방향	경관검토항목	평가	비고
주변과 조화	◦ 지나치게 장대한 돌출형의 건축물을 지양하고 가급적 분동, 세장형 형태 등으로 디자인하여 주변 수변경관과의 조화를 유도		
스카이라인	◦ 지나치게 균등하거나 돌출되는 구조물 지양 ◦ 유연성 있는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하여 층고의 변화감을 추구 ◦ 주요 조망점에서의 조망거리를 고려하여 건물의 층고를 계획		

3 형태 및 외관

일률적 형태를 지양하고 고층부 형태의 차별화로 경관의 변화감을 추구한다.

• 매스감이 강한 건축물의 형태를 지양하고 슬림하고 높이감이 강조되는 형태를 추구한다. (높은 층고를 허용하되 건축물 외부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개방감과 조망성을 확보)

• 주변 건축물간의 형태가 조화를 원칙으로 하되 획일적 경관이 아닌 개성있는 연안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건축물의 일률적 형태를 지양하고 다양한 경관을 창출할 수 있는 형태를 추구한다.

• 시각적 노출이 많은 건축물 고층부의 형태에 차별화를 두어 경관의 변화감을 추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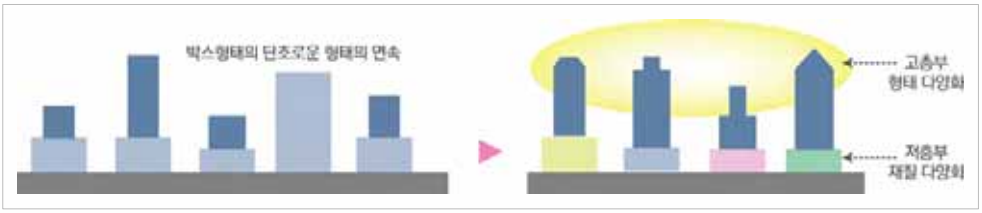

추진방향	경관검토항목	평가	비고
압박감	◦ 시화호로의 조망차폐 및 압박감을 주는 장대한 입면을 지양하고 건축물의 형태를 슬림하게 유도		
경관성	◦ 시화호 연안경관과 시각적 조화를 이루는 형태 및 외관을 추구하되 획일적인 경관형성을 탈피하기 위해 건축고층부 등의 형태에 변화감을 추구		

4 재질

자연경관과 조화로운 친자연형 소재 및 색상으로 편안한 인상을 조성한다.

- 시화호의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주 재질의 발광, 반사소재의 사용은 지양하나 첨단산업 및 시설들이 입지하는 연안지역으로서의 랜드마크성을 고려하여 너무 무거운 느낌의 재질로 딱딱한 분위기로 형성되지 않도록 배려한다.
- 자연경관이 풍부한 갈대습지 일대 및 사람 눈높이에 가까운 건축물의 저층부는 친자연형 소재 및 색상으로 하여 시화호와 인접한 공간의 자연성을 강조하고 편안한 인상으로 조성한다.

추진방향	경관검토항목	평가	비고
자연환경과의 조화	◦ 시화호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주 재질로 발광, 반사소재의 사용 지양 ◦ 갈대습지 및 시화호에 가까운 저층부 재질을 친자연형 소재로 도입		
연안경관 특화	◦ 첨단산업시설이 입지하는 연안경관의 랜드마크성을 고려하여 무겁고 딱딱한 느낌의 재질 사용을 지양		

5 외부공간

연안으로의 조망 및 접근성을 확보하고 조화로운 연안시설 통합 디자인을 권장한다.

- 건축 외부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조망통로로서 역할할 수 있는 주요 도로변으로 건축물의 외부공간 배치를 유도하여 가로의 개방감을 확보하며, 시화호 방향으로의 조망성을 높인다.

- 연안에 연접한 건축물은 외부공간을 호안방향으로 배치시키고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자연성 및 녹시율을 증대시키며 호안의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경관을 연출한다.
- 연안경관의 통일감을 형성하기 위해 통일감 있는 연안시설의 디자인을 도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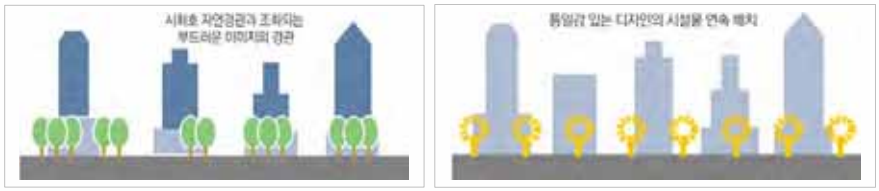

- 수변으로의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호안에 자연소재(나무, 돌 등)의 데크 및 조망공간을 조성하여 다양한 친수경험을 제공한다.

추진방향	경관검토항목	평가	비고
조망성	◦ 주 도로변으로 건축물 외부공간의 녹지를 조성하여 녹의 연속성과 함께 시화호 방향으로의 조망 확보		
연속성	◦ 호안방향으로 건축 외부공간을 위치시키고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자연경관의 연속성을 확보		
접근성	◦ 시화호방향으로의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데크 및 전망공간 확보		
통일감	◦ 연안경관의 통일감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물의 디자인 통일		

6 야간 경관	***호안의 생태환경을 고려한 야간경관을 계획한다.*** • 호안의 연속적인 야간경관형성을 고려하되 호안의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지역, 주요 건축물이 위치하는 지점에 한정하여 적용하여 경관조명의 효과를 높이도록 한다. • 상향식 조명을 주 조명으로 채택하여 건축물을 중심으로 한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한다. ※안산시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별첨된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
7 색채	***시화호 자연경관과 조화로운 색채계획을 수립한다.*** • 재질계획과 함께 색채계획을 수립하여 재질 본연의 색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며, 주변 지역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지나친 발광, 원색, 고채도 및 고명도 색상의 사용을 지양한다. • 시화호와 하늘의 자연경관 색과 주변 건축물 및 구조물의 인공경관 색과 조화되는 색채계획을 수립한다. ※안산시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별첨된 〈색채경관 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
8 옥외 광고물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성을 유지하는 개별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을 창조한다.*** • 대형 전광판이나 돌출형, 입간판 등의 옥외광고물의 배치를 지양하여 호안에서의 조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 옥상부에 설치하는 옥외광고물의 설치를 지양한다. ※ 2009년 별도 수립된 〈안산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

평가 : 적극고려 → ○, 부분고려 → △, 반영불가 → x, 해당사항 없음

※ 1. 항목별 세부내용 및 적용대상 구분은 가이드라인 내용을 참조하여 계획

※ 2. 가이드라인 항목별 적용여부를 [적극고려 → ○, 부분고려 → △, 반영불가 → ×,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한다.

※ 3. 작성시 [부분고려 → △, 반영불가 → ×]에 해당하는 경우 비고란 혹은 첨부자료를 통해 해당사유를 기재한다.

※ 건축물 및 공공공간(오픈스페이스), 공공시설물에 대한 세부 지침이 요구될 경우, 안산시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별첨된 〈건축물경관 가이드라인〉 및 〈공공공간(오픈스페이스) 가이드라인〉,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을 참조함

메모란

위치 :	***건축주 :***
규모 :	***설계자 :***

7. 문화적 경관거점 경관중점설계지침 체크리스트

1 건축 배치

접근성과 조망성을 확보하는 문화거점 건축배치를 계획한다.

- 문화거점으로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접근동선에 면하는 건축물은 접근도로 방향으로 정면이 위치하도록 배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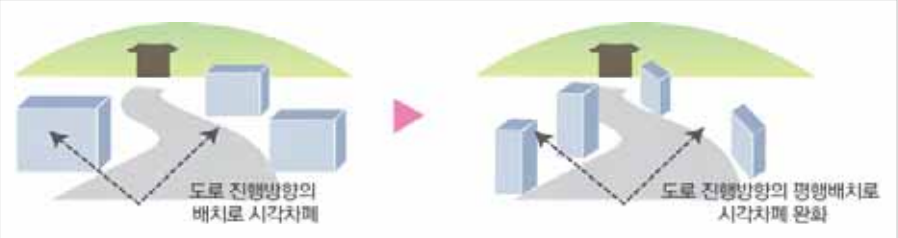

- 문화거점에서 주변의 자연경관 방향으로의 조망을 확보하기 위해(열린 경관 형성) 원거리 건축물의 경우 층고를 완화하고 건축물간의 인동간격을 충분히 확보한다.

추진방향	경관검토항목	평가	비고
조망확보	◦ 문화거점으로의 조망 및 접근성 확보를 위해 진입도로변 건축 배치시 건축물이 도로면을 향하도록 유도 ◦ 주변 구릉지 경관으로의 조망 확보를 위해 건물 간 인동간격의 확보		
주변조화	◦ 주변 자연경관지의 지형 및 역사문화거점과의 조화를 충분히 고려하여 건축물을 배치		

2 규모 및 높이

주변자연의 조화성과 개방감을 확보하는 건축물 규모 및 높이를 계획한다.

-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연출할 수 있도록 주변 건축물의 층고를 관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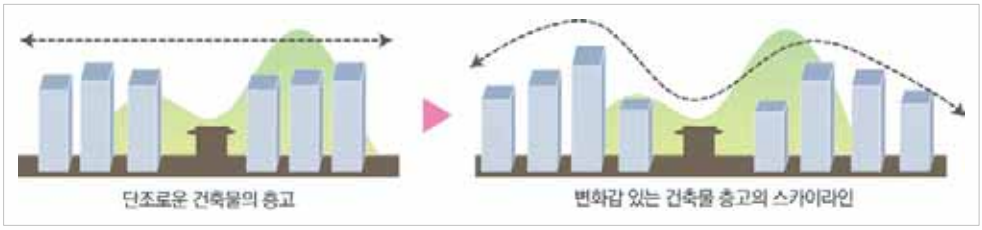

- 건축물의 규모 및 높이는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매스감이 강한 돌출형태가 되지 않도록 배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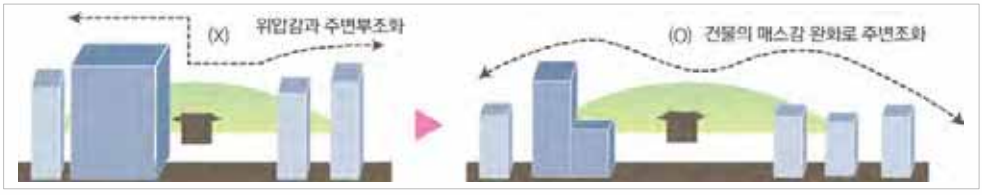

2 규모 및 높이 (이어서)

• 구릉지에 위치하는 별망성지나 대부광산퇴적층 주변의 건축물 층고는 역사문화거점의 높이 이상이 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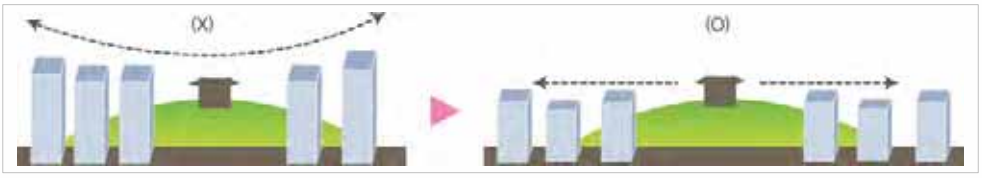

추진방향	경관검토항목	평가	비고
주변과 조화	◦ 주변 경관자원 및 구릉형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이루는 규모와 높이 추구		
	◦ 특히 구릉형 역사문화거점지(별망성지, 대부광산퇴적층)의 경우, 근거리에 위치한 건축물이 구릉지 높이 이상이 되지 않도록 층고관리		
개방감/ 조망성	◦ 문화거점은 매스감을 완화하여 주변의 개방감 및 조망성 확보		

3 형태 및 외관

문화거점으로의 시선포인트를 확보하도록 형태 및 외관을 단순화한다.

• 문화거점 주변의 건축개발시, 개성있는 형태 및 외관을 지양하여 조망의 방향이 주변의 건축물 방향이 아닌 문화거점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정비한다.

• 건축물 부속시설 및 외부치장재의 과도한 사용을 제한하고 단순한 형태를 유도하여 문화거점 자원과의 형태 조화, 인접지의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추구한다.

추진방향	경관검토항목	평가	비고
형태단순화	◦ 문화거점자원 방향으로의 조망초점이 형성될 수 있도록 주변 건축물의 형태 단순화 ◦ 건축부속시설 및 치장재의 사용을 제한		
주변과 조화	◦ 문화거점자원 및 인접한 자연경관과의 형태 조화를 추구		

4 재질

자연경관과 조화로운 친자연형 소재 및 색상을 권장한다.

- 주변 역사문화거점자원 및 자연경관지와 조화되는 소재를 사용하고 지나치게 눈에 띄는 투명, 반사, 발광소재의 사용을 지양한다.
- 자연소재, 친자연형 소재의 사용을 권장한다.

추진방향	경관검토항목	평가	비고
이질적 소재	◦ 문화거점자원과는 이질적인 투명, 반사, 발광소재의 사용을 지양		
재질 조화	◦ 문화거점자원 및 인접한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자연소재, 친자연형 소재의 사용을 권장		

5 외부공간

문화거점으로의 접근성을 유도하는 외부공간을 배치하며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추구한다.

- 문화거점으로의 진입로 시설을 정비하여 접근성을 향상한다.
- 진입로의 포장 정비 및 진입도로변 조형성을 고려한 진입문주 등의 안내시설 설치, 공공디자인 개념이 도입된 가로시설을 배치하여 자연스러운 시각유도를 처리한다.

- 연속성을 갖는 외부공간을 배치하여 문화거점 방향으로의 조망성을 확보하면서 거점자원과 주변 오픈스페이스, 자연경관지와의 네트워크화를 통해 단일 문화자원의 가치를 높인다.
- 외부공간은 녹화를 통해 건축경관과 역사문화거점, 자연 경관지와의 조화를 추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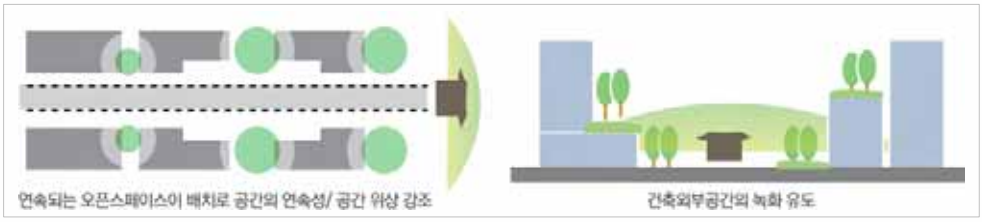

추진방향	경관검토항목	평가	비고
진입성	◦ 주진입부의 가로정비 (포장) 및 안내시설 설치를 통해 자연스런 진입 유도 ◦ 공공디자인개념을 도입한 안내시설 및 가로시설 정비		
연속성	◦ 주변 건축물의 외부공간, 문화거점 주변 공지의 연속성 확보/네트워크화하여 문화거점의 가치를 높임 ◦ 외부공간녹화를 통해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추구		

6 야간 경관	***문화거점의 깊이감과 부드러운 빛을 연출하는 야간경관을 계획한다.*** • 문화거점자원의 입체감 및 깊이감을 살릴 수 있는 야간경관을 연출한다. • 주변 분위기에 어울리며 조형미를 살릴 수 있는 부드러운 빛을 연출한다. • 주변 건축물에 대해서는 야간경관을 최대한 지양하여 문화거점방향으로의 시선 방향성이 형성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안산시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별첨된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
7 색채	***안산시 고유 전통색과 자연형 소재로 부드러운 색채를 유도한다.*** • 안산시의 고유색, 전통색의 사용을 권장하고 지나친 고채도, 고명도의 색채사용을 지양한다. (부득이한 경우 포인트 색상으로만 사용) • 자연형 소재를 사용하여 재질 자체의 부드러운 색상이 드러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안산시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별첨된 〈색채경관 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
8 옥외 광고물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성을 유지하는 개별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을 창조한다.*** • 돌출형, 입간판 등의 옥외광고물의 배치를 지양하여 문화거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 옥상부에 설치하는 옥외광고물의 설치를 지양한다. ※ 2009년 별도 수립된 〈안산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

평가 : 적극고려 → ○, 부분고려 → △, 반영불가 → x, 해당사항 없음

※ 1. 항목별 세부내용 및 적용대상 구분은 가이드라인 내용을 참조하여 계획

※ 2. 가이드라인 항목별 적용여부를 [적극고려 → ○, 부분고려 → △, 반영불가 → ×,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한다.

※ 3. 작성시 [부분고려 → △, 반영불가 → ×]에 해당하는 경우 비고란 혹은 첨부자료를 통해 해당사유를 기재한다.

※ 건축물 및 공공공간(오픈스페이스), 공공시설물에 대한 세부 지침이 요구될 경우, 안산시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별첨된 〈건축물경관 가이드라인〉 및 〈공공공간(오픈스페이스) 가이드라인〉,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을 참조함

메모란

위치 :	***건축주 :***
규모 :	***설계자 :***

8. 대부도 수변경관 경관중점설계지침 체크리스트

1 건축 배치

바다로의 개방감을 확보하는 건축배치를 계획한다.

- 해안변과 해안도로에 입지하는 건축물은 바다로의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는 배치를 권장한다.
- 건축물의 주된 벽면 방향은 대지가 접하는 전면 해안가로의 방향과 일치하도록 권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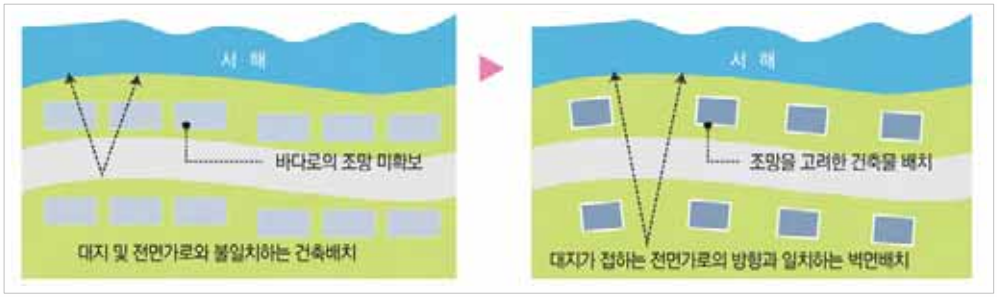

추진방향	경관검토항목	평가	비고
개방감	◦ 건축물의 정면이 바다로의 조망방향과 일치하도록 하고 건축물간 인동간격을 확보하여 해안변 개방적인 경관을 유도		
조화로운 해안도로	◦ 주된 벽면방향이 대지가 접하는 전면 해안가로의 방향과 일치하도록 배치		

2 규모 및 높이

배후 녹지와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및 해안에서의 조망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용도지역의 변경(세분)을 억제하여 대규모 건축물의 입지를 피하고, 장방형으로 긴 건축물이나 돌출된 건축물은 지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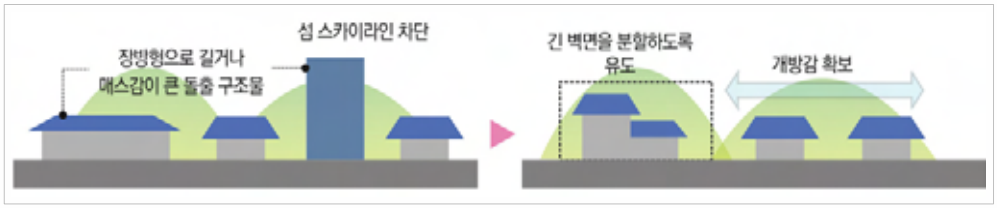

- 배후 녹지와의 스카이라인 조화를 도모하고 해안변에 접할수록 낮게 단계적인 높이 관리를 유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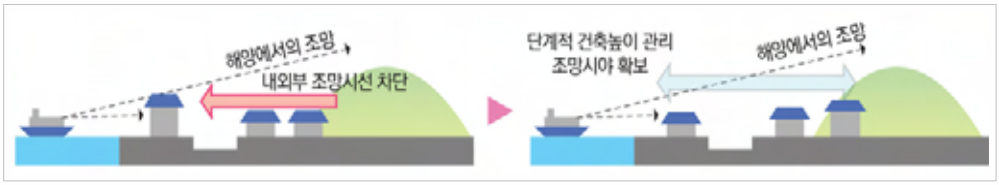

추진방향	경관검토항목	평가	비고
돌출지양	◦ 대규모 건축물, 장방형으로 긴 건축물, 돌출된 건축물을 지양하고 벽면의 분할을 유도		
건축높이	◦ 해양에서의 조망시야를 확보하도록 해안에서 이면으로 높아지는 단계적 건축물 높이관리		

3 형태 및 외관

박스형 건축물의 나열을 지양하고 조화성과 통일성을 고려한 건축형태 및 외관을 계획한다.

- 단순한 박스형 건축물의 나열을 피하고 지붕이 있는 건축형을 권장하여 통일감있는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을 부여한다.
- 해안 및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성을 고려하고 옥상설비 등의 건축물 부속설비 노출을 지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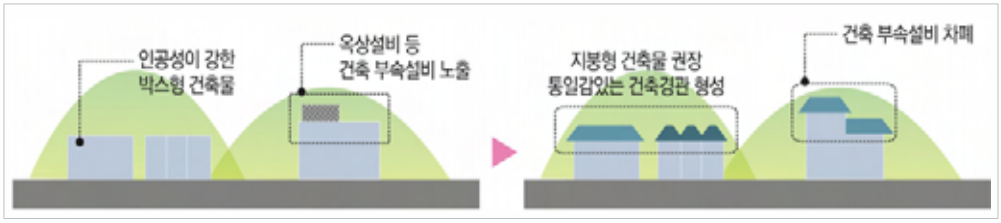

추진방향	경관검토항목	평가	비고
통일감	◦ 지붕형 건축물을 권장하여 통일감있는 건축물군의 경관 형성유도		
미관성	◦ 옥상설비 등 건축물 부속설비를 차폐하여 건축미관성 향상		

4 재질

자연경관과 조화로운 친자연형 소재 및 색상을 권장한다.

-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질감이 있는 자연적인 소재의 사용을 권장하고 유광이나 반사, 발광소재의 사용은 지양하도록 유도한다.

추진방향	경관검토항목	평가	비고
자연환경과의 조화	◦ 질감이 있는 자연적인 소재를 권장하고 유광, 반사, 발광 소재의 사용은 지양		

5 외부공간

해안 가로경관의 개방감을 확보하도록 외부가로시설을 계획한다.

- 해안 가로경관의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담장 설치시 개방형 담장(자연조경석, 생울타리 등) 설치를 권장하고 부지 내 공지는 녹화를 유도하여 자연경관의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 사람들의 방문 및 이용이 가능한 상업시설, 공공시설에 인접한 해안변 공지 발생시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해안에 자연소재(나무, 돌 등)의 데크 및 조망공간, 녹지를 조성하여 해안변 친수성을 확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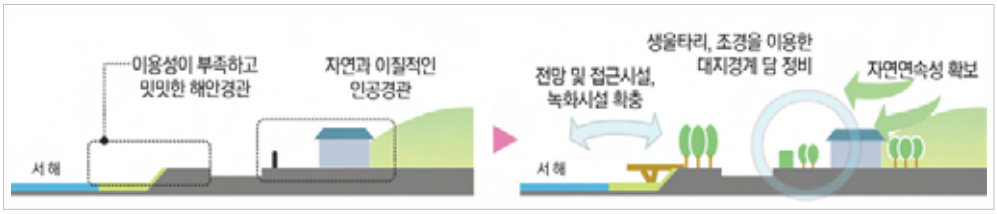

추진방향	경관검토항목	평가	비고
연속성	◦ 해안가로변 담장 설치시 개방형담장(장녀조경석, 생울타리 등)을 권장하고 건축물 외부공간의 녹화를 유도하여 녹의 연속성 확보		
친수성	◦ 상업시설, 공공시설 등에 인접한 해안변 접근성 및 이용성 증진을 위한 데크 및 조망공간, 녹지 조성		

6 야간 경관	***문화거점의 깊이감과 부드러운 빛을 연출하는 야간경관을 계획한다.*** • 대부도 해안의 연속적인 야간경관형성을 고려하되 섬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지역, 주요 건축물이 위치하는 지점에 한정해 적용하여 경관조명의 효과를 높이도록 한다. • 해변도로의 경우 눈부심을 최소화하고 보행자의 안전성을 고려한 빛 환경을 구성하도록 한다. ※안산시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별첨된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
7 색채	***안산시 고유 전통색과 자연형 소재로 부드러운 색채를 유도한다.*** • 재질계획과 함께 색채계획을 수립하여 재질 본연의 색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며, 대부도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지나친 발광, 원색, 고채도 및 고명도 색상의 사용을 지양한다. • 서해와 하늘의 자연경관 색, 섬 토질 및 녹지색, 주변 건축물 및 구조물의 인공경관 색과 조화되는 색채계획을 수립한다. ※안산시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별첨된 〈색채경관 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
8 옥외 광고물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성을 유지하는 개별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을 창조한다.*** • 대형 전광판이나 돌출형, 입간판 등의 옥외광고물의 배치를 지양하여 해안에서의 조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 옥상부에 설치하는 옥외광고물의 설치를 지양한다. ※ 2009년 별도 수립된 〈안산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

평가 : 적극고려 → ○, 부분고려 → △, 반영불가 → x, 해당사항 없음

※ 1. 항목별 세부내용 및 적용대상 구분은 가이드라인 내용을 참조하여 계획

※ 2. 가이드라인 항목별 적용여부를 [적극고려 → ○, 부분고려 → △, 반영불가 → ×,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한다.

※ 3. 작성시 [부분고려 → △, 반영불가 → ×]에 해당하는 경우 비고란 혹은 첨부자료를 통해 해당사유를 기재한다.

※ 건축물 및 공공공간(오픈스페이스), 공공시설물에 대한 세부 지침이 요구될 경우, 안산시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별첨된 〈건축물경관 가이드라인〉 및 〈공공공간(오픈스페이스) 가이드라인〉,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을 참조함

메모란

위치 :	*건축주 :*
규모 :	*설계자 :*

제 3부 요소별 가이드라인

DESIGN GUIDELINE

1장 요소별 경관설계지침의 구성

2장 건축경관

3장 공공공간(오픈스페이스)

4장 공공시설물

5장 색채경관

6장 야간경관

7장 옥외광고물

1장 요소별 경관설계지침의 구성

적용대상

안산시 행정구역 전체의 공공 및 민간 건축, 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각 경관설계지침의 성격 및 내용에 따라 세부 적용대상이 나뉨

요소별 경관설계지침 구성체계

요소별 경관설계지침은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기본방향을 준용하여 별권으로 구성된 「안산시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중 옥외광고물은 경관설계지침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별도 수립된 「안산시 옥외광고물 가이드(2009)」를 따르도록 함

지침구분 및 용어

본 경관설계지침의 정확한 적용을 위해 본문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적으로 통일하도록 함

① 의무사항

타 법령 및 지침 등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해당 대상 및 지정 범위에 속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시행하도록 함

(*지침의 문단시점에 지침코드와 함께 의무사항 표시 – 예시: G-가-02 의무사항)

② 권장사항

가급적 시행을 권장·유도토록 하는 사항으로 현장여건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에는 타당한 사유하에 미반영을 허용할 수 있음

(*지침의 문단시점에 지침코드만 표시 – 예시: G-가-01)

경관설계지침 본문에 사용된 용어에 대하여 과도한 확대해석은 피하도록 하며, 용어의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안산시 도시디자인과>와 협의하여 조정토록 함

2장 건축경관

1. 기본방향 및 원칙

기본방향

본 가이드라인은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용도 특성에 부합하는 건축물 경관형성 지침을 제시하여 향후 개발되는 건축물간의 관계를 서로 조화롭도록 관리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개별적 공공 및 민간건축물의 개선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건축경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기본원칙

디자인 기본원칙		주요내용
Green Design	자연친화형 건축경관	◦ 건축물 내외부 녹화 및 친환경성을 증진하는 건축경관을 조성
CPTED Design	범죄예방형 건축경관	◦ 안전한 도시환경을 창출하는 오픈된 건축경관을 유도
Universal Design	이용자배려형 건축경관	◦ 다계층의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 내외부 환경을 조성
Better Design	문화창조형 건축경관	◦ 도시문화를 선도하는 창조적이고 조화로운 건축경관을 유도

가이드라인 외 법규 및 규정

- 구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구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구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건축기본법
- 건축법
- 건축법 시행령
- 건축법 시행규칙
-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 안산시 경관계획
- 안산시 경관조례
- 경기도 디자인가이드라인
- 경기도 경관계획
- 경기도 경관조례
- 신도시, 녹색도시 계획기준(건교부, 2009)
- 범죄예방을 위한 설계지침(경찰청)
- 건축물 테러예방 설계가이드라인(구토해양부, 2009)

2. 적용지침

적용원칙

· 본 가이드라인은 안산시 기본경관계획 중 경관중점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물에 의해 형성되는 스카이라인 및 미관 디자인의 원칙적 측면을 다룸

· 일반적인 건축경관 가이드라인은 **'경기도 디자인가이드라인(2010) 중 건축물 부문' 을 따르되 세부항목이 중복 혹은 상충될 경우 안산시의 특성이 잘 반영된 안산시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우선적으로 준용**함

· 본 가이드라인은 공간적 디자인에 중점을 둔 것이며 예시된 도면, 이미지, 사진 등은 계획을 위한 참고자료임

· 사안별 적용 수준과 예외사항 처리 등은 안산시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통하여 결정함

적용대상

· 본 가이드라인은 안산시 전지역 내 개선 및 설계를 요하는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을 주요대상으로 함

주거용 건축물

주거용 건축물이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을 말한다.

상업업무용 건축물

상업용 건축물이란 상업용지 내 건축되어 상업 및 업무를 위한 용도의 건축물을 말한다.

산업용 건축물

산업용 건축물이란 공업용지 내 건축되어 산업활동을 위한 용도의 건축물을 말한다.

공공건축물

공공건축물이란 관공서, 학교, 문화시설 등 공적 용도의 건축물을 말한다.

*대부도 내 민간건축물**

대부도 내 신규 혹은 재건축되는 주거, 상업 등 모든 용도의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함

* 건축물 용도를 기준으로 구분한 타 적용대상 분류와 달리 대부도 내 민간건축물은 입지지역을 기준으로 구분한 특별지침의 성격을 지님

  대부도의 수려한 섬 자연경관의 스카이라인 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지침으로 구성함

적용대상 및 구성체계

· 다음 표에 기입된 해당 건축물의 용도 및 입지 분류에 따라 건축물 계획 및 설계 시 적용 가이드라인을 고려함

가이드라인 구분			적용 구분						비고
			주거용건축물		상업업무용 건축물	산업용 건축물	공공 건축물	대부도 내 민간건축물	
			단독주택	공공주택					
Green Design	가. 건축물녹화	옥상녹화	○	○	○	○	○	○	
		벽면녹화	○	○	○	○	○	○	
	나. 공개공지녹화			○	○	○	○	○	
	다. 생태면적률 확보(대지 내 투수성 증가)			○	○	○	○	○	
	라. 친환경·에너지 건축디자인	에너지절약형 건축 배치		○	○	○	○	○	
		신재생에너지 설비시설	○	○	○	○	○	○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외피시스템		○	○	○	○		
	마. 자연경관과 조화로운 건축스카이라인	표고 50m이상 구릉지 입지		○	○		○	○	
		배후 산림 스카이라인 조망		○	○		○	○	
CPTED Design	가. 다중이용 건축물의 테러예방디자인	대지 및 배치계획			○		○		
		건축물 및 실내계획			○		○		
		피난설비계획			○		○		
	나. 건축물 입면		○	○	○		○	○	
	다. 담장 및 펜스	단독주택지 경계부	○						
		공동주택 경계부		○					
	라. 조경식재	단독주택지	○						
		공동주택지		○					
Universal Design	가. 건축물 저층부 디자인	포디움			○				
		아케이드			○				
		캐노피			○				
		건축선후퇴(1층셋백)			○				
		가각부 저층디자인			○		○		
	나. 주차장 진출입부		○	○	○		○		
Better Design	가. 표정이 풍부한 파사드 분절디자인			○	○				
	나. 연속적인 건축물의 배치				○		○		
	다. 건축설비 및 기타 돌출시설	대형설비 및 굴뚝				○			
		건축설비 부속시설	○	○	○	○	○	○	
	라. 건축외벽재료		○	○	○	○	○	○	

*비고: 포디움, 아케이드, 필로티, 1층 셋백은 장기적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인센티브 부여 등) 될 경우,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건축경관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 다음 표에 기입된 해당 건축물의 용도 및 입지 분류에 따라 건축물 계획 및 설계 시 적용 가이드라인을 고려함

주거용 건축물(단독주택지)

<table>
<tr><th colspan="3">가이드라인 구분</th><th colspan="6">가이드 적용여부</th><th>비고</th></tr>
<tr><td rowspan="4">Green Design</td><td rowspan="3">G-가</td><td rowspan="3">건축물의 녹화</td><td rowspan="2">권장</td><td>일반지침</td><td>옥상녹화</td><td colspan="3">벽면녹화</td><td rowspan="3"></td></tr>
<tr><td>G-가-01</td><td>G-가-03</td><td>G-가-05</td><td>G-가-06</td><td>G-가-07</td></tr>
<tr><td>적용여부</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3">G-라</td><td rowspan="3">친환경·에너지 건축디자인</td><td rowspan="2">권장</td><td colspan="5">신재생에너지 설비시설</td><td rowspan="3"></td></tr>
<tr><td colspan="5">G-라-03</td></tr>
<tr><td>적용여부</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9">CPTED Design</td><td rowspan="3">C-나</td><td rowspan="3">건축물 입면</td><td rowspan="2">권장</td><td colspan="5">일반지침</td><td rowspan="3"></td></tr>
<tr><td colspan="5">C-나-02</td></tr>
<tr><td>적용여부</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3">C-다</td><td rowspan="3">담장 및 펜스</td><td rowspan="2">권장</td><td colspan="3">단독주택지 경계부(자연적 감시)</td><td colspan="2"></td><td rowspan="3"></td></tr>
<tr><td colspan="2">C-다-03</td><td colspan="2">C-다-04</td></tr>
<tr><td>적용여부</td><td colspan="3"></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3">C-라</td><td rowspan="3">조경식재</td><td rowspan="2">권장</td><td colspan="2">일반지침</td><td colspan="3">단독주택지 조경기준</td><td rowspan="3"></td></tr>
<tr><td colspan="2">C-라-01</td><td colspan="3">C-라-02</td></tr>
<tr><td>적용여부</td><td colspan="2"></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3">Universal Design</td><td rowspan="3">U-나</td><td rowspan="3">주차장 진출입부</td><td rowspan="2">권장</td><td colspan="5">일반지침</td><td rowspan="3"></td></tr>
<tr><td colspan="5">U-나-01</td></tr>
<tr><td>적용여부</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6">Better Design</td><td rowspan="3">B-다</td><td rowspan="3">건축설비 및 기타돌출시설</td><td rowspan="2">권장</td><td colspan="5">건축설비부속시설</td><td rowspan="3"></td></tr>
<tr><td colspan="5">B-다-02</td></tr>
<tr><td>적용여부</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3">B-라</td><td rowspan="3">건축외벽재료</td><td rowspan="2">권장</td><td colspan="5">일반지침</td><td rowspan="3"></td></tr>
<tr><td colspan="2">B-라-01</td><td colspan="3">B-라-02</td></tr>
<tr><td>적용여부</td><td colspan="2"></td><td colspan="3"></td></tr>
</table>

평가 : 적극고려 → ○, 부분고려 → △, 반영불가 → x, 해당사항 없음

※ 1. 항목별 세부내용 및 적용대상 구분은 가이드라인 내용을 참조하여 계획

※ 2. 가이드라인 항목별 적용여부를 [적극고려 → ○, 부분고려 → △, 반영불가 → ×,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한다.

※ 3. 작성시 [부분고려 → △, 반영불가 → ×]에 해당하는 경우 비고란 혹은 첨부자료를 통해 해당사유를 기재한다.

위치 : *규모 :*	*건축주 :* *설계자 :*

메모란

주거용 건축물(공동주택지)

가이드라인 구분			가이드 적용여부						비고
Green Design	G-가	건축물의 녹화	의무	옥상녹화					대지면적 200㎡ 이상
				G-가-02					
			적용여부						
			권장	일반지침	옥상녹화		벽면녹화		
				G-가-01	G-가-03	G-가-04	G-가-06	G-가-07	
			적용여부						
	G-나	공개공지 녹화	의무	일반지침					건축물 연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경우
				G-나-01					
			적용여부						
	G-다	생태면적율 확보 (대지 내 투수성 확보)	의무	일반지침					사전환경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택지 혹은 공동주택 개발사업일 경우
				G-다-01		G-다-02			
			적용여부						
	G-라	친환경·에너지 건축디자인	권장	에너지절약형 건축배치		신재생에너지 설비시설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외피시스템		
				G-라-01	G-라-02	G-라-03	G-라-03		
			적용여부						
	G-마	자연경관과 조화하는 건축스카이라인	권장	표고 50m 이상 구릉지 내 입지		배후 산림스카이라인 조망되는 경우			
				G-마-01	G-마-02	G-마-03	G-마-04		
CPTED Design	C-나	건축물 입면	권장	일반지침					
				C-나-02					
			적용여부						
	C-다	담장 및 펜스	권장	공동주택지 경계부					
				C-다-01		C-다-02			
			적용여부						
	C-라	조경식재	권장	일반지침		공동주택지 조경기준			
				C-라-01		C-라-03			
			적용여부						
Universal Design	U-나	주차장 진출입부	권장	일반지침					
				U-나-01		U-나-02			
			적용여부						
Better Design	B-가	표정이 풍부한 파사드 분절디자인	권장	일반지침					
				B-가-01					
			적용여부						
	B-다	건축설비 및 기타돌출시설	권장	건축설비부속시설					
				B-다-02					
			적용여부						
	B-라	건축외벽재료	권장	일반지침					
				B-라-01		B-라-02			
			적용여부						

평가 : 적극고려 → ○, 부분고려 → △, 반영불가 → x, 해당사항 없음

※ 1. 항목별 세부내용 및 적용대상 구분은 가이드라인 내용을 참조하여 계획

※ 2. 가이드라인 항목별 적용여부를 [적극고려 → ○, 부분고려 → △, 반영불가 → ×,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한다.

※ 3. 작성시 [부분고려 → △, 반영불가 → ×]에 해당하는 경우 비고란 혹은 첨부자료를 통해 해당사유를 기재한다.

위치 :	*건축주 :*
규모 :	*설계자 :*

상업·업무용 건축물

가이드라인 구분			가이드 적용여부						비고
Green Design	G-가	건축물의 녹화	의무	옥상녹화					대지면적 200㎡ 이상
			적용여부	G-가-02					
			권장	일반지침	옥상녹화		벽면녹화		
			적용여부	G-가-01	G-가-03	G-가-04	G-가-05	G-가-07	
	G-나	공개공지 녹화	의무	일반지침					건축물 연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경우
			적용여부	G-나-01		G-나-02			
	G-다	생태면적율 확보 (대지 내 투수성 확보)	의무	일반지침					사전환경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택지 혹은 공동주택 개발사업일 경우
			적용여부	G-다-01		G-다-02			
	G-라	친환경·에너지 건축디자인	권장	에너지절약형 건축배치		신재생에너지 설비시설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외피시스템		
			적용여부	G-라-01	G-라-02	G-라-03	G-라-03		
	G-마	자연경관과 조화하는 건축스카이라인	권장	표고 50m 이상 구릉지 내 입지		배후 산림스카이라인 조망되는 경우			
			적용여부	G-마-01	G-마-02	G-마-03	G-마-04		
CPTED Design	C-가	다중이용 건축물의 테러예방 디자인	의무	일반지침	대지 및 배치계획	설비계획	피난설비계획		20,000㎡이상 건축물 및 초고층 건축물 (50층 이상 혹은 높이 200m이상) 등 공공 및 다수인 이용건축물
			적용여부	C-가-01	C-가-02	C-가-03	C-가-04	C-가-05	
	C-나	건축물 입면	권장	일반지침					
			적용여부	C-나-01		C-나-02			
Universal Design	U-가	건축물 저층부 디자인	권장	일반지침	포디움	아케이드	캐노피	건축선후퇴	가각부디자인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지정된 경우
			적용여부	U-가-01	U-가-02	U-가-03	U-가-04	U-가-05	U-가-06	
	U-나	주차장 진출입부	권장	일반지침					
			적용여부	U-나-01		U-나-02			
Better Design	B-가	표정이 풍부한 파사드 분절디자인	권장	일반지침					
			적용여부	B-가-01					
	B-나	연속적인 건축물의 배치	권장	일반지침					
			적용여부	B-나-01					
	B-다	건축설비 및 기타돌출시설	권장	건축설비부속시설					
			적용여부	B-다-02					
	B-라	건축외벽재료	권장	일반지침					
			적용여부	B-라-01		B-라-02			

평가 : 적극고려 → ○, 부분고려 → △, 반영불가 → ×, 해당사항 없음

※ 1. 항목별 세부내용 및 적용대상 구분은 가이드라인 내용을 참조하여 계획
※ 2. 가이드라인 항목별 적용여부를 [적극고려 → ○, 부분고려 → △, 반영불가 → ×,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한다.
※ 3. 작성시 [부분고려 → △, 반영불가 → ×]에 해당하는 경우 비고란 혹은 첨부자료를 통해 해당사유를 기재한다.

위치 :	*건축주 :*
규모 :	*설계자 :*

산업용 건축물

<table>
<tr><th colspan="3">가이드라인 구분</th><th colspan="5">가이드 적용여부</th><th>비고</th></tr>
<tr><td rowspan="12">Green Design</td><td rowspan="3">G-가</td><td rowspan="3">건축물의 녹화</td><td>의무</td><td colspan="4">옥상녹화</td><td rowspan="3">대지면적 200㎡ 이상</td></tr>
<tr><td>적용여부</td><td colspan="4">G-가-02</td></tr>
<tr><td rowspan="2">권장</td><td>일반지침</td><td colspan="3">벽면녹화</td></tr>
<tr><td>G-가-01</td><td>G-가-05</td><td>G-가-06</td><td>G-가-07</td><td></td></tr>
<tr><td>적용여부</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3">G-나</td><td rowspan="3">공개공지 녹화</td><td rowspan="2">의무</td><td colspan="4">일반지침</td><td rowspan="3">건축물 연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경우</td></tr>
<tr><td colspan="2">G-나-01</td><td colspan="2">G-나-02</td></tr>
<tr><td>적용여부</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3">G-다</td><td rowspan="3">생태면적율 확보
(대지 내 투수성 확보)</td><td rowspan="2">의무</td><td colspan="4">일반지침</td><td rowspan="3">사전환경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택지 혹은 공동주택 개발사업일 경우</td></tr>
<tr><td colspan="2">G-다-01</td><td colspan="2">G-다-02</td></tr>
<tr><td>적용여부</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3">G-라</td><td rowspan="3">친환경·에너지
건축디자인</td><td rowspan="2">권장</td><td colspan="2">에너지절약형 건축배치</td><td>신재생에너지 설비시설</td><td>에너지절약형 건축 외피시스템</td><td rowspan="3"></td></tr>
<tr><td>G-라-01</td><td>G-라-02</td><td>G-라-03</td><td>G-라-03</td></tr>
<tr><td>적용여부</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6">Better Design</td><td rowspan="3">B-다</td><td rowspan="3">건축설비 및
기타돌출시설</td><td rowspan="2">권장</td><td colspan="2">대형설비 및 굴뚝</td><td colspan="2">건축설비부속시설</td><td rowspan="3"></td></tr>
<tr><td colspan="2">B-다-01</td><td colspan="2">B-다-02</td></tr>
<tr><td>적용여부</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3">B-라</td><td rowspan="3">건축외벽재료</td><td rowspan="2">권장</td><td colspan="4">일반지침</td><td rowspan="3"></td></tr>
<tr><td colspan="2">B-라-01</td><td colspan="2">B-라-02</td></tr>
<tr><td>적용여부</td><td colspan="4"></td></tr>
</table>

평가 : 적극고려 → ○, 부분고려 → △, 반영불가 → x, 해당사항 없음

※ 1. 항목별 세부내용 및 적용대상 구분은 가이드라인 내용을 참조하여 계획

※ 2. 가이드라인 항목별 적용여부를 [적극고려 → ○, 부분고려 → △, 반영불가 → ×,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한다.

※ 3. 작성시 [부분고려 → △, 반영불가 → ×]에 해당하는 경우 비고란 혹은 첨부자료를 통해 해당사유를 기재한다.

위치 : *규모 :*	*건축주 :* *설계자 :*

메모란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 구분			가이드 적용여부							비고
Green Design	G-가	건축물의 녹화	의무	옥상녹화						대지면적 200㎡ 이상
				G-가-02						
			적용여부							
			권장	일반지침	옥상녹화		벽면녹화			
				G-가-01	G-가-03	G-가-04	G-가-05	G-가-06	G-가-07	
			적용여부							
	G-나	공개공지 녹화	의무	일반지침						건축물 연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경우
				G-나-01			G-나-02			
			적용여부							
	G-다	생태면적율 확보 (대지내 투수성 확보)	의무	일반지침						사전환경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택지 혹은 공동주택 개발사업일 경우
				G-다-01			G-다-02			
			적용여부							
	G-라	친환경·에너지 건축디자인	권장	에너지절약형 건축배치		신재생에너지 설비시설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외피시스템			
				G-라-01	G-라-02	G-라-03	G-라-04			
			적용여부							
	G-마	자연경관과 조화하는 건축스카이라인	권장	표고 50m 이상 구릉지 내 입지		배후 산림스카이라인 조망되는 경우				
				G-마-01	G-마-02	G-마-03	G-마-04			
			적용여부							
CPTED Design	C-가	다중이용 건축물의 테러예방 디자인	의무	일반지침	대지 및 배치계획	설비계획	피난설비계획			20,000㎡이상 건축물 및 초고층 건축물 (50층 이상 혹은 높이 200m이상) 등 공공 및 다수민 이용건축물
				C-가-01	C-가-02	C-가-03	C-가-04	C-가-05		
			적용여부							
	C-나	건축물 입면	권장	일반지침						
				C-나-01		C-나-02				
			적용여부							
Universal Design	U-가	건축물 저층부 디자인	권장	가각부디자인						
				U-가-06						
			적용여부							
	U-나	주차장 진출입부	권장	일반지침						
				U-나-01		U-나-02				
			적용여부							
Better Design	B-나	연속적인 건축물의 배치	권장	일반지침						
				B-나-01						
			적용여부							
	B-다	건축설비 및 기타돌출시설	권장	건축설비부속시설						
				B-다-02						
			적용여부							
	B-라	건축외벽재료	권장	일반지침						
				B-라-01		B-라-02				
			적용여부							

평가 : 적극고려 → ○, 부분고려 → △, 반영불가 → x, 해당사항 없음

※ 1. 항목별 세부내용 및 적용대상 구분은 가이드라인 내용을 참조하여 계획

※ 2. 가이드라인 항목별 적용여부를 [적극고려 → ○, 부분고려 → △, 반영불가 → ×,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한다.

※ 3. 작성시 [부분고려 → △, 반영불가 → ×]에 해당하는 경우 비고란 혹은 첨부자료를 통해 해당사유를 기재한다.

위치 : *규모 :*	*건축주 :* *설계자 :*

대부도 내 민간건축물

가이드라인 구분			가이드 적용여부							비고
Green Design	G-가	건축물의 녹화	의무	옥상녹화						대지면적 200㎡ 이상
				G-가-02						
			적용여부							
			권장	일반지침	옥상녹화		벽면녹화			
				G-가-01	G-가-03	G-가-04	G-가-05	G-가-06	G-가-07	
			적용여부							
	G-나	공개공지 녹화	의무	일반지침						건축물 연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경우
				G-나-01			G-나-02			
			적용여부							
	G-다	생태면적율 확보 (대지내 투수성 확보)	의무	일반지침						사전환경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택지 혹은 공동주택 개발사업일 경우
				G-다-01			G-다-02			
			적용여부							
	G-라	친환경·에너지 건축디자인	권장	에너지절약형 건축배치				신재생에너지 설비시설		
				G-라-01		G-라-02		G-라-03		
			적용여부							
	G-마	자연경관과 조화하는 건축스카이라인	권장	표고 50m 이상 구릉지 내 입지		배후 산림스카이라인 조망되는 경우				
				G-마-01	G-마-02	G-마-03		G-마-04		
			적용여부							
CPTED Design	C-나	건축물 입면	권장	일반지침						
				C-나-01			C-나-02			
			적용여부							
Better Design	B-다	건축설비 및 기타돌출시설	권장	건축설비부속시설						
				B-다-02						
			적용여부							
	B-라	건축외벽재료	권장	일반지침						
				B-라-01			B-라-02			
			적용여부							

평가 : 적극고려 → ○, 부분고려 → △, 반영불가 → x, 해당사항 없음

※ 1. 항목별 세부내용 및 적용대상 구분은 가이드라인 내용을 참조하여 계획

※ 2. 가이드라인 항목별 적용여부를 [적극고려 → ○, 부분고려 → △, 반영불가 → ×,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한다.

※ 3. 작성시 [부분고려 → △, 반영불가 → ×]에 해당하는 경우 비고란 혹은 첨부자료를 통해 해당사유를 기재한다.

위치 : *규모 :*	*건축주 :* *설계자 :*

메모란

3. 건축경관 가이드라인

Green Design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그린디자인*

가. 건축물 녹화

G-가-01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 도심 열섬현상 등을 완화하기 위해 옥상녹화 및 벽면녹화 등 건축물 녹화를 통해 친환경건축물을 계획하도록 한다.

*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참조(「건축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개정고시 –구토해양부, 환경부(2010년 5월17일))

▲지양 : 중심시가지의 녹지부족

▲권장 : 건축물 및 공개공지의 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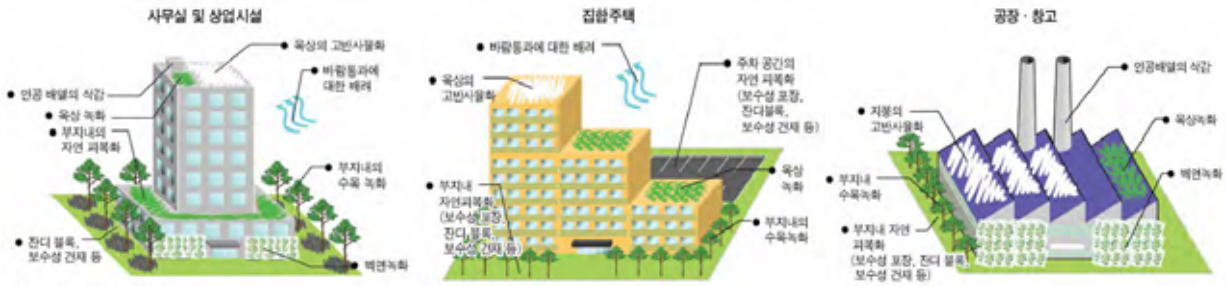

• 열섬현상 대책을 위한 Eco형 빌딩 녹화 가이드

– 건축물 녹화시 여름철 도심 열섬현상 완화에 의해 여름철 30℃ 기준으로 녹화지가 주변 콘크리트 바닥보다 평균 7℃ 낮음

옥상녹화

G-가-02 의무사항 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의 건축물의 경우 대지에 조경을 하여야 하며, 옥상녹화를 함께 고려하여 계획한다. (건축법 제42조)

* 건축물의 옥상조경 면적 : 옥상부분 조경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건축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대지의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음. 이 경우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음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시행 2010. 8.17])

G-가-03 건축물의 지붕형태는 되도록 경사지붕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평지붕으로 설치하여야 할 경우 옥상녹화 또는 휴게공간 계획을 계획한다.(대부도, 구릉지경관중점권역, 자연 및 수변경관지구 등에 위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적극 권장)

▲권장 :건축녹화 사례(일본, The Acros Fukuoka) ▲권장 :공동주택지 지붕녹화사례(국내) ▲권장 :자연경관지 내 옥상녹화 사례

G-가-04 20m 이상 폭원의 도로에 접하여 맞은편 가로에서 건축물의 상단부가 인지되는 경우, 해당 도로변에 접한 옥상부에 최소 폭 1m이상, 옥상면적의 30% 이상 녹화하도록 계획한다.(서울시 금천구 건축비전21 가이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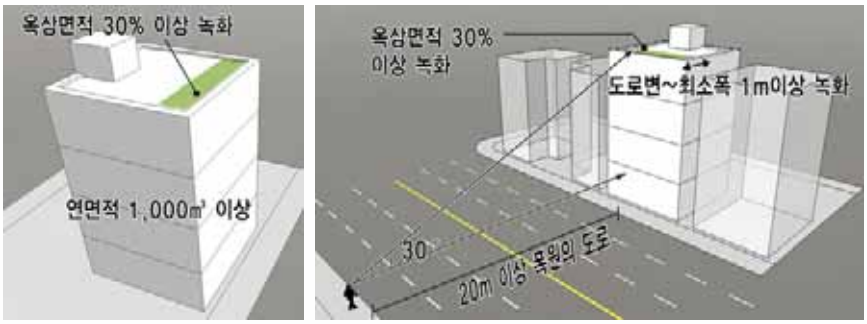

• 옥상녹화 면적 기준(연면적/ 주변도로 폭원에 따른 기준)

벽면녹화

G-가-05 건축물의 에너지절감, 경관성 향상, 미세먼지 감소 등을 위하여 건축벽면의 녹화를 계획한다.

▲권장: 건축물의 벽면녹화 사례(좌: 국내 건축사무소 벽면녹화/ 중우: 프랑스 패트릭블랑의 수직정원)

G-가-06 건축물 주변 옹벽 및 담장의 설치를 지양하고, 인접한 대지와의 차이로 인해 옹벽 혹은 담장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위압감과 단조로움을 덜어주는 벽면녹화를 통해 가로의 미관성과 환경성을 증진하도록 계획한다.

▲지양: 대지 내 옹벽면 노출사례

▲권장: 옹벽 및 담장부 녹화 사례

• 담장녹화기법(「산녹지공간 디자인-특수공간녹화계획」 -재단법인 도시녹화기술개발기구, 2003)

G-가-07 건축 벽면 및 옹벽, 담장을 녹화할 경우, 설치현황 및 재질특성 등을 고려하여 식물생장에 적합한 벽면녹화 기법을 적용하여 계획한다.

• 다양한 벽면녹화기법(「신·녹지공간 디자인-특수공간녹화계획」 -재단법인 도시녹화기술개발기구, 2003)

나. 공개공지 녹화

G-나-01 의무사항 건축물 연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시설의 경우, 공개공지*의 확보와 조경녹화 및 휴식시설 설치를 계획한다.(건축법 시행령 제27조/안산시 건축조례 제26조)

* 공개공지란(公,開空地), 건축법에 의해 확보되는 개방공간으로서 도심지 등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연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시설에 일정한 공간을 조성하여 일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소규모 휴식공간(건축조례상 대지면적의 10%이하를 지정)을 말함 (공개공지 및 조경녹화공간 확보 등에 따라 용적률 보상 및 완화 등 인센티브 부여)

▲권장 : 공개공지 조성사례(일본, 신오사카 우메다 업무지구)
(좌 : 공개공지 안내표지 / 우 : 시민 휴식처로 조경녹화한 공개공지)

G-나-02 시민의 외부휴게공간 활용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공개공지의 설치현황 특성에 적합한 공개공지 타입을 적용하여 계획한다.

• 공개공지 타입유형 (「도심 건물 외부휴게공간 가이드라인」 -서울시 중구, 2009)

다. 생태면적율 확보(대지 내 투수성 증가)

G-다-01 의무사항 대지 내 공지에는 투수성 바닥재를 사용하여 우수침투를 통한 생태면적율*을 준수한다. 생태면적율은 현재 서울시, 경기도 뉴타운 '탄소중립도시' 등에서 법적 효력을 지니고 시행 중이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를 위해 확대·운영하도록 계획한다.

* **생태면적율이란,** 건축대상지 면적 중 자연순환 기능을 가진 토양면적의 비율을 수치화한 것을 말한다.(「생태면적율 적용지침」-환경부, 2005)

인공지반녹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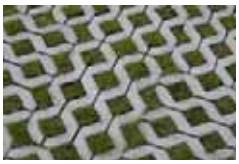
부분포장

전면투수포장

틈새투수포장

침투 및 저류시설 연계면

G-다-02 의무사항 생태면적율은 사전환경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택지개발이나 공동주택 건설과 관련되는 개발사업' 에 우선 적용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녹지, 하천,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 공원녹지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지를 대상으로 계획한다.

*** 생태면적률 적용대상**

구 분	세부대상	비고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10만 ㎡이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환경영향 평가대상	도시개발사업(25만 ㎡이상)	
	도시및주거환경정비(30만 ㎡이상)	
	대지조성사업(30만 ㎡이상)	
	택지개발사업(30만 ㎡이상)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30만 ㎡이상)	

출처 : 「생태면적율 적용지침」-환경부, 2005

*** 생태면적율 적용기준(참고용)**

건축유형	생태면적율 기준	적용 구분
일반주택(개발면적 660㎡ 미만)	20%이상	주거
공동주택(개발면적 660㎡ 미만)	30%이상	
일반건축물(업무, 판매, 공장 등)	20%이상	상업업무/산업
유통업무설비, 방송통신시설, 조합의료시설, 교통시설(주차장, 자동차정류장, 운전학원)	20%이상	
공공문화체육시설 및 공공기간이 건설하는 시설 또는 건축물	30%이상	공공
녹지지역 내 시설 및 건축물	50%이상	대부도 등

출처 : 「생태면적율 적용지침」-환경부, 2005

* 생태면적율 산정방법

$$\text{생태면적율} = \frac{\text{자연순환 기능 면적}}{\text{전체 대상지 면적}} = \frac{\Sigma(\text{공간유형별 면적} \times \text{가중치})}{\text{전체 대상지 면적}} \times 100(\%)$$

* 공간유형 구분 및 가중치

공간유형		가중치	설 명	사 례
1	자연지반녹지	1.0	자연지반이 손상되지 않은 녹지 식물상과 동물상의 개발 잠재력 보유	자연 상태의 지반을 가진 녹지
2	수공간 (투수기능)	1.0	자연지반 기초 위에 조성되고, 투수기능을 가지는 수공간	투수기능을 가지는 생태연못 등
3	수공간 (차수)	0.7	자연지반 기초위에 조성되고, 투수기능이 없는 수공간	바닥면이 차수 처리된 생태연못
4	인공지반녹지 〉 90㎝	0.7	토심이 90㎝ 이상인 인공지반 상부 녹지	지하주차장 상부, 지하실 상부 녹지
5	인공지반녹지 〈 90㎝	0.5	토심이 90㎝ 이하인 인공지반 상부 녹지	지하주차장 상부, 지하실 상부 녹지
6	옥상녹화 〉 10㎝	0.5	토심이 10㎝이상인 옥상녹화시스템이 적용된 공간	저관리 경량형 옥상녹화면
7	부분포장	0.5	자연지반 위에 조성되고 공기와 물이 투과되는 포장, 식물생장 가능	잔디블록, 목판 또는 판석 부분포장
8	벽면녹화	0.3	창이 없는 벽면이나 옹벽(담장)의 녹화, 최대 10m 높이까지만 산정	벽면이나 옹벽녹화 공간
9	전면 투수포장	0.3	공기와 물이 통과되는 전면투수 포장, 식물생장 불가능	자연지반위에 시공된 마사토, 자갈, 모래포장 등 투수성 전면포장
10	틈새 투수포장	0.2	공기와 물이 통과되는 틈새를 확보한 포장	틈새를 가지는 바닥벽돌포장, 사고석 틈새포장 등
11	침투시설 연계면	0.2	지하수 함양을 위한 우수침투시설 또는 일시적 저류시설과 연계된 면	녹화가 되어 있지 않은 옥상 중 침투시설과 연계된 공간, 저류옥상
12	포장면	0.0	공기와 물이 투과하지 않는 포장, 식물생장이 없음	인터락킹 블록, 콘크리트, 아스팔트 포장, 불투수 기반에 시공된 투수 포장

출처 : 「생태면적율 적용지침」 -환경부, 2005

라. 친환경·에너지 건축디자인

에너지절약형 건축 배치

G-라-01 도시의 주풍향을 고려하여 단지 및 건축물을 배치하고, 도심의 열섬현상 방지를 위하여 바람길과 저온냉대지역을 확보하도록 계획한다.(「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 -국토해양부, 2007)

• 독일 뮌휀의 림(Riem) : 바람길을 고려한 단지배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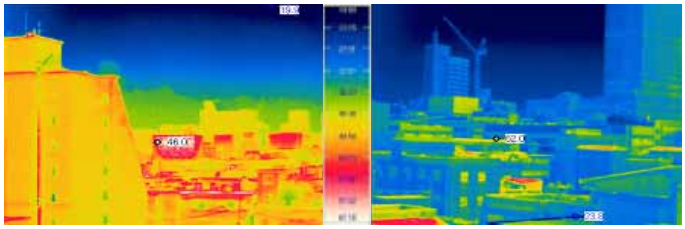

• 열섬현상에 따른 도심부 온도차(좌:녹지 부족/ 우:녹지 인접)

G-라-02 산지 및 구릉지 하단부의 건축물 입지 시 횡으로 가로막는 건축배치를 지양하여 산림으로부터 신선한 공기를 유입하도록 계획한다.(「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 -국토해양부, 2007)

▲지양 : 횡방향 건축배치로 바람길 차단

▲권장 : 종방향 건축배치로 바람길 유입

신재생에너지 설비시설

G-라-03 건축물 내 태양광 설비시설을 설치할 경우 건축 미관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가동식 태양판의 경우 주변으로의 반사광을 차단하기 위해 유리지붕 등 방지시설을 함께 고려하여 계획한다.

▲권장 : 건축물과 조화로운 태양광에너지 설비 설치사례(좌:지붕/우:벽면)

▲권장 : 솔라마을 지붕경관 사례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외피시스템

G-라-04 대형 건축물 계획시 썬컨, 썬룸 등 자연채광을 이용한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외피시스템을 계획한다.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참조-국토해양부, 환경부(2010년 5월))

▲권장 : 썬룸-조명에너지 저감

▲권장 : 자연채광을 이용한 지하주차장 진출입구

마. 자연경관과 조화하는 건축 스카이라인

표고 50m이상의 구릉지 내 입지할 경우

G-마-01 구릉지 내에 건축물 배치될 경우, 배후 스카이라인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섹션별 건축물의 높이를 검토하여 계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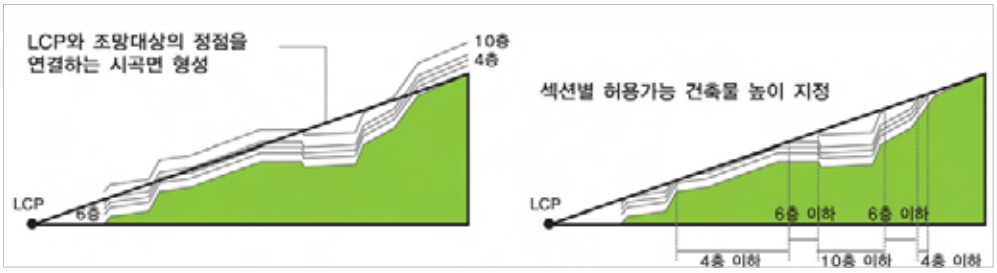

• 시곡면 분석에 의한 건축물 높이 지정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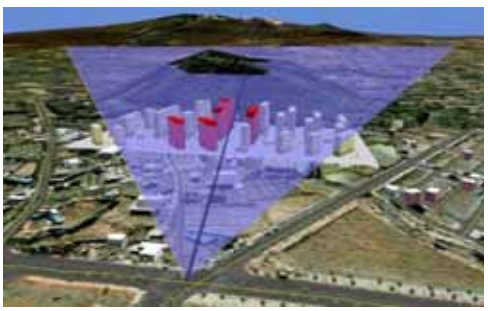

• 3차원지도에 따른 시곡면 분석과정

▲권장 : 시곡면 이하 높이의 단계적 건축물 배치

G-마-02 지형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지형에 순응하는 건축물 배치를 위해 경사도에 따라 적절한 건축형태와 배치, 입면 등을 계획한다.

• 지형의 변형비율 및 산림형(形)에 따른 건축층고 변화

▲권장 : 지형에 순응하는 단독주택지

▲권장 : 경사지형에 순응한 테라스하우스형 건축디자인

배후 산림스카이라인이 조망되는 경우

G-마-03 배후 산림스카이라인의 조망통제선 설정을 통해 연속성 있는 스카이라인 형성을 계획한다.

- 배후 산림 스카이라인 변화와 조화로운 건축 스카이라인의 흐름 연출을 위해 자연 스카이라인과 유사한 흐름의 조망통제선 설정 권장
- 조망통제선 설정시 단조로운 인상 및 배후 산림 스카이라인 부조화 방지를 위하여 일정한 높이의 개별 건축물 계획 지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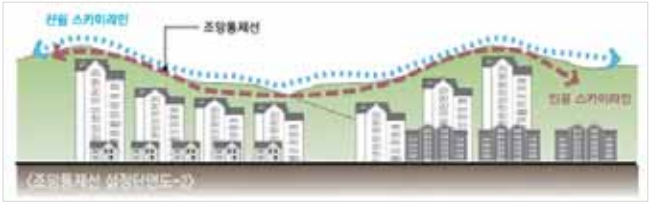

▲권장 : 배후 산림스카이라인과 연속성있는 조망통제선

▲지양 : 획일적이며 단조로운 조망통제선

G-마-04 자연조망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클러스터형 배치를 통해 시각회랑을 형성하도록 한다.

클러스터형 배치를 통한 자연조망축 확보

• 클러스터링을 통한 시각회랑 확보사례(예시 시뮬레이션)

CPTED Design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범죄예방형 디자인*

가. 다중이용 건축물의 테러예방 디자인

C-가-01 의무사항

20,000㎡이상 건축물(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종합병원, 업무시설, 관광숙박시설) 및 초고층 건축물(50층 이상, 혹은 높이 200m 이상) 등 공공 및 다수민의 이용이 많은 건축물의 경우, 구토해양부에서 제시한 "건축물 테러예방 설계가이드라인(2010)" 을 준수하도록 계획한다.

대지 및 배치계획

C-가-02 의무사항

다중이용 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는 가급적 주변지역 보다 높게 조성하여 감시가 용이하게 하고, 대지 경계에는 볼라드, 조경수 등을 식재하여 폭발물을 적재한 차량이 돌진하여 건축물과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계획한다.

구 분	계획내용	목적 및 역할	사 례
대지조성	· 건축물 대지를 주변보다 가급적 높게 조성	· 대지경계에서 폭발 발생시 건축물 피해 최소화 및 감시역할 · 차량 돌진시 속도 감소역할	
장애물 구축	· 볼라드, 플랜트, 조경수 등 연속적 장애물 구축	· 폭발물 적재차량 돌진시 건축물과 직접적 충돌 방지	
차량 동선	· 진입로 내 차량 속도감속 및 확인시설 계획	· 수상행동 파악 및 수시 모니터링 기능	
주차시설	· 직원 및 방문차량 동선을 가급적 분리 · 필로티 하부의 통행 또는 주차는 가급적 금지	· 감시체계의 명확화 · 건축물 하부에서의 폭발 발생시 건축물 피해 심각	

출처 : 건축물 테러예방 설계가이드라인-국토해양부, 2010

건축물 및 설비계획

C-가-03 의무사항 건축물의 형태 및 구조는 폭발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계획하고, 건축물 로비 등 다중이 이용하는 공간과 보안이 요구되는 공간을 분리하여 배치하도록 계획한다.

구 분	계획내용	목적 및 역할	사 례
건축물 계획	· 건축물 형태 및 구조는 폭발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계획	· 폭발 발생시 건축물 형태가 오목하거나 상부가 돌출된 형태는 충격파 영향이 커질 우려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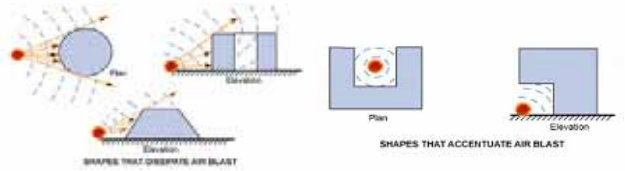 〈폭발시 피해최소화 가능한 건축형태〉 〈폭발시 피해 증가시키는 건축형태〉
실내계획	· 다중이용 공간은 가급적 수직 및 수평으로 분리하여 배치	· 다중이용공간은 테러발생 시 피해가 클 우려 있으므로, 보안이 요구되는 공간과 분리하여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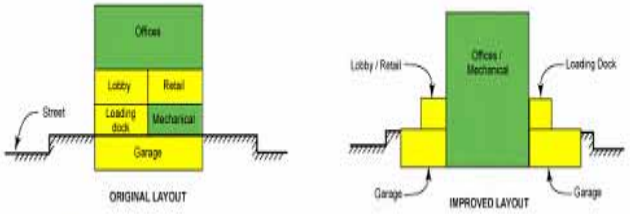 <테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배치 개선사례>
보안관리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은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계획	· 공공장소 내 휴지통은 내용물이 보이는 투명한 재료 사용이 바람직 · 실내조경, 로비 및 고객 대기소 등 위험물질 은닉이 쉬운 장소는 경비/순찰 등 확인시스템 계획	〈테러방지용 휴지통(좌)/ 조명을 확보한 실내조경(우)〉

출처 : 건축물 테러예방 설계가이드라인-국토해양부, 2010

피난 설비계획

C-가-04 의무사항 건축물의 주요한 부분에서 2방향 이상으로 피난경로를 확보하도록 계획하고, 공기 흡입구는 3m이상 높이에 설치하여 외부 침입방지 및 유해가스 유입을 방지하도록 계획한다.

C-가-05 의무사항 비상계단 및 비상용승강기는 하역공간 등 폭발우려가 있는 공간과 이격하여 배치하도록 계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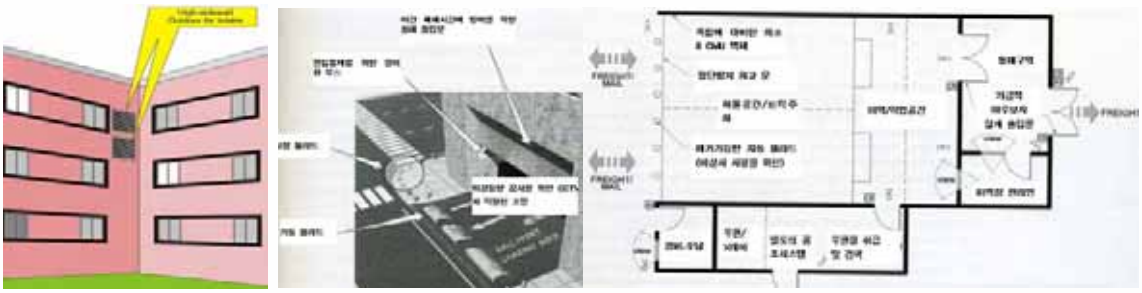

◀ 권장: 공기흡입구 설치예시 ▲권장 : 주차장 및 하역공간 보안디자인 예시

나. 건축물 입면

C-나-01 건축형태 및 배치계획 시, 도로 등 주변에서 내부 또는 외부에서 주변에 대한 자연적 감시*가 잘 이루어지도록 계획하며, 폭 25m 이상 도로에 접한 1층부는 되도록 투명한 입면재료를 사용함으로써 보행자의 투시성(permeability)을 높이도록 계획한다.

* **자연적 감시란**, 지역주민들이 이웃과 낯선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범죄행위를 발견할 경우 조취를 취할 수 있도록 지역을 설계하는 것을 말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변이나 다른 사람들에 의해 시선이 열려있을 때 보다 안전감을 느낌

▲지양 : 차폐율이 높고 시선 사각지대 발생

▲권장 : 자연적 감시가 잘 이루어지는 입면재료

C-나-02 건축물 외벽을 디자인할 때는 침입을 용이하게 하는 요소나 시설을 피하여 계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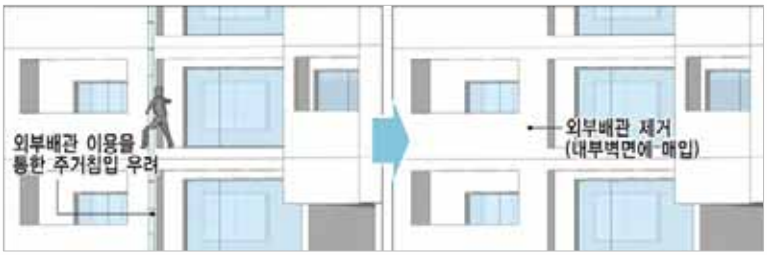

▲지양 : 외부배관의 설치억제(벽면매입 유도)

▲권장 : 옥외배관 주변 인체감지센서 설치

다. 담장 및 펜스

공동주택지 경계부

C-다-01 원칙적으로 담장 및 펜스의 설치를 지양하되 부득이 설치할 경우 대지의 경계를 둘러싸는 폐쇄감을 덜어주는 투시형이나 조경 또는 벽녹녹화를 가미한 담장을 계획한다. (단, 투시형의 경우 보안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차폐용 수림을 식재할 수 있다.)

▲권장 : 투시형 담장 설치

▲권장 : 생울타리, 자연재료를 이용한 담장 설치

C-다-02 단지 경계부는 조경공간 확보, 주민과 보행자를 동시에 배려하는 쉼터 조성 등을 통해 자연과 인간친화적인 가로경관을 계획한다.

▲권장 : 조경석, 식재 등 친환경적인 단지 경계부

▲권장 : 보행자를 배려한 쉼터와 경계

단독주택지 경계부(자연적 감시)

C-다-03 주택지 주변에 간단한 정원과 투시가능한 담장, 보행로 등을 통해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의 구분을 명확히 계획한다.

C-다-04 담장이나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거주자의 영역감을 증진할 경우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하고 시야를 방해하는 것을 피하여 계획한다.

▲권장 : 생울타리 담장설치

▲권장 : 투시가능한 담(울타리) 설치

▲권장 : 내외부 자연감시 가능체계

라. 조경식재

C-라-01 건물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식재하여 창문을 가리거나 나무를 타고 침입하는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수목의 식재로 인하여 숨을 장소나 함정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목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계획한다.(범죄예방을 위한 설계지침-경찰청,2007)

단독주택지/ 공동주택지의 조경기준

C-라-02 단독주택 정원의 수목 식재시 창문을 가리지 않도록 수고 1m 이하의 관목을 식재하고 교목을 식재할 경우 지하고를 창문높이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C-라-03 아파트의 경우 건축물 창문 앞 정원에는 수고 1m 이하의 관목을 식재하고 단지 중앙부에 지하고 2m이상을 가진 교목을 식재하여 시야를 확보한다.

Universal Design *다계층을 배려한 모두를 위한 디자인*

가. 건축물 저층부 디자인

U-가-01 다양한 도시활동이 집적된 상업업무지역의 활력있는 가로만들기를 위해 가로에 면한 건축물 계획시, 다양한 건축물 저층부 디자인 도입으로 보행자 활동과 하나가 되는 연속성있는 공간을 계획한다.

***본문기준표**

구 분	가로폭	건축규모
포디움	광로, 대로	대형건축물(업무시설)
아케이드	광로, 대로	중·대형건축물(상업시설)
캐노피	중로, 소로	중·소형건축물(식음료업)
1층 셋백	소로	소형건축물(소상점,재래시장)

*광로: 40m이상, 대로: 25m이상~40m미만, 중로: 12m이상~25m미만, 소로: 12m미만

참조 : 「송파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송파구청, 2009

포디움

U-가-02 포디움은 대로 이상 도로의 대형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저층부를 3층으로 규정짓고 4층 이상의 고층부는 후퇴시켜 포디움*을 구성한 건축을 계획한다.

- 적용가로의 선정과 적용시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 및 결정은 지구단위계획 시 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와 해당부서의 협의를 거쳐 정함
- 블록구간별 저층부 상부높이(파라펫 상단)를 ±30㎝ 이내로 적용함(단, 경사로인 경우 경사로의 기울기를 기준으로 함)

* **포디움(Podium이란**, 연속적인 낮은 벽 또는 나지막한 높이의 단을 말하며, 건축의 부피를 나누어 위압감을 줄이고 건축기능을 분담하는 역할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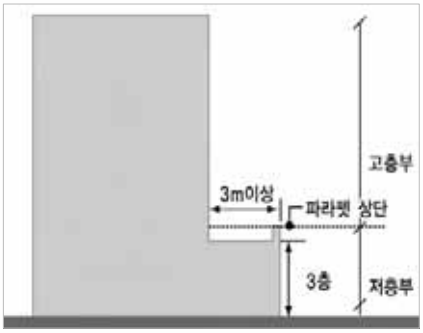

• 포디움 구성체계

▲권장 :포디움의 적용사례(상부 공용공간 구성)

아케이드

U-가-03 아케이드**는 대로이상의 중·대형 건축물에 계획한다.

- 아케이드 설치면적은 '건축물의 공개공지'로 인정하여 건축법을 적용함

** **아케이드(Arcade)란,** 열주(列柱)에 의해 지탱되는 아치군(群)과 그것이 조성하는 개방된 통로공간을 말하며, 특히 양쪽에 상점이 있는 통로를 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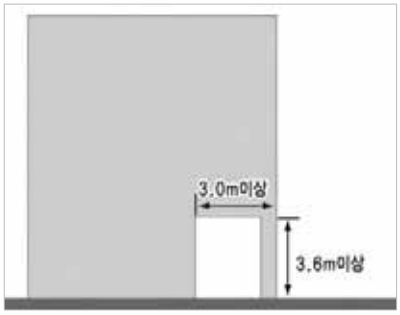

• 아케이드 구성체계

▲권장 :아케이드 적용가로 사례

▲권장 :아케이드에 의한 상업공간 활성화 사례

캐노피

U-가-04 캐노피***는 중로 이하 도로의 중·소형 건축물 중 건축후퇴선이 정정되어 있는 경우 계획한다.

- 상점가 저층부는 캐노피를 이용한 오픈테라스를 연속적으로 배치하여 보행공간의 활력을 창출할 수 있음

*** **캐노피(Canopy)란**, 건축디자인의 개념에서 캐노피란, 건물 외벽에 설치되는 캔틸레버 구조의 횡으로 된 가벽으로 건축물의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산정되지 않는 서비스 공간이며, 출입구의 강조/ Sun-Shade 역할/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의 단절 및 유입 역할 등 다양한 활용성을 지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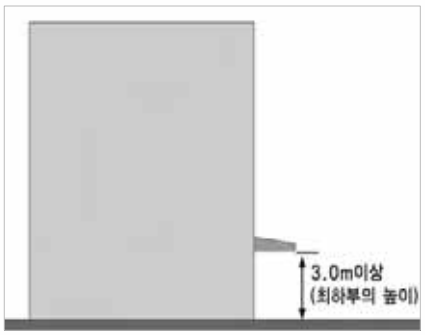

• 캐노피 구성체계

▲권장 :캐노피 적용가로 사례

▲권장 :오픈테라스 디자인 사례

건축선 후퇴(1층 Set-back)

U-가-05 상가지역이나 재래시장 등 보행과 차량의 통행량이 많고 도로폭이 좁은 보차 혼용지역에 면하는 건축물의 경우, 신축계획시 1층 부분은 해당 건축선에 폭 2m 후퇴시켜 보행통로를 확보함으로서 보행환경을 개선토록 계획한다.

- 적용가로의 선정과 적용시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 및 결정은 지구단위계획 시 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와 해당부서의 협의를 거쳐 정함
- 선정된 적용가로의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상인 및 소유주의 협의에 의해 공용도로 상부에 건축 하부 혹은 지붕형태의 설치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1층 셋백 설치기준

▲권장 :상업지 1층 셋백 사례(로마 중심가)

가각부 저층디자인

U-가-06 2면 이상의 가로(광로 및 대로)가 만나는 가각부에 입지한 건축물의 경우, 저층부는 보행자를 배려하여 개방감있는 디자인을 계획한다.

• 교차로 가각부 간격이상 확보

▲권장 : 코너부 조경공간 조성 사례

나. 주차장 진출입부

U-나-01 공공시설, 학교, 유치원 등과 필지가 인접한 경우, 주차장 진출입부 및 주차장은 해당시설의 진출입부 및 건널목과 멀리 떨어져 설치하고, 인접 필지와 주차통로를 가까이 설치하여 진출입구의 수를 최소화하도록 계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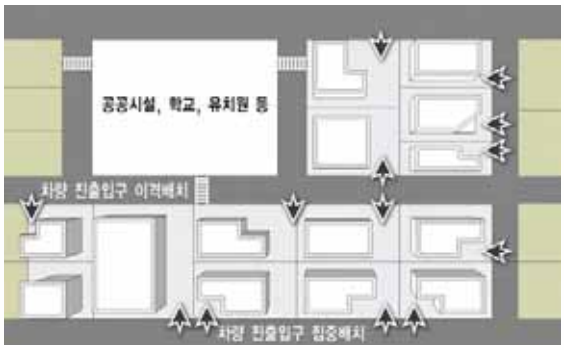

권장 디자인 예시(O)

- 주차 진출입구 및 주차장은 인접필지와 가까이 설치
- 학교 등 공적시설과는 먼 거리에 설치

U-나-02 공동주택단지, 상업 및 업무시설, 공공시설 등 차량의 진출입이 잦은 주차장의 진출입부는 안내사인, 포장의 패턴 혹은 색상의 변화, 차량진출입의 점등 혹은 안내소리, 반사경 등을 설치하여 보행자와 차량이 주의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지양 : 주차장 보행자 안전시설 부족 사례

▲지양 : 초등학교 건널목 중앙에 위치한 주차장 입구

▲권장 : 주차장 진출부 포장, 안내 및 주의시설 등 설치사례

▲권장 : 야간 점등에 의한 안전확보 사례

Better Design *조화로운 도시문화를 창조하는 보다 나은 디자인*

가. 표정이 풍부한 파사드 분절 디자인

B-가-01 상업업무지구, 주상복합시설 등 대규모 건축물이 입지하는 경우, 휴먼스케일을 초과한 벽면 형성에 의해 보행자에게 압박감이나 폐쇄감을 느끼게 하여 친근감을 느끼기 어렵게 하므로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한 벽면 분절을 계획한다.

- 고층건축물에 있어서 수평방향으로 장대한 벽면에 변화를 주기위하여 음각, 양각에 의하여 횡방향의 분절을, 저층부와 고층부의 디자인에 변화를 주는 종방향의 분절을 유도
- 저층부에서는 휴먼스케일에 입각하여 음영을 줄 수 있는 소재를 사용

• 건축 파사드 분절 가이드

▲권장 : 종방향 건축 및 색채분절 디자인

▲권장 : 주상복합건축의 종방향 파사드 분절

▲지양 : 무개성한 박스형 벽면 디자인

▲권장 : 횡방향 색채분절 벽면 디자인

▲권장 : 재질, 창문 등 디테일에 의한 벽면디자인

나. 연속적인 건축물의 배치

B-나-01 가로경관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벽면선과 도로선이 평행하도록 배치하고 인접건축물의 벽면선과 일치하도록 계획한다.(별도의 건축선 후퇴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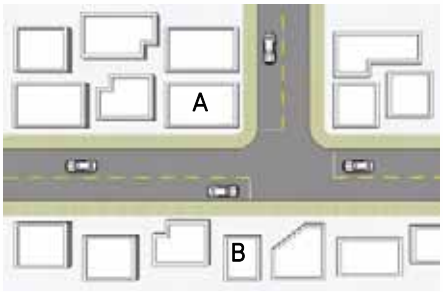

비권장 디자인 예시(X)

- 가로경관의 연속성을 무시한 배치

A. 대지경계선과 건축선이 접하는 경우
B.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선이 후퇴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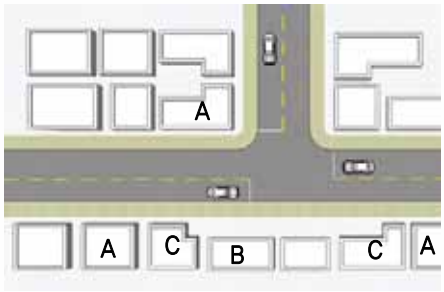

권장 디자인 예시(O)

- 가로경관의 연속성을 고려한 배치

A. 대지경계선과 건축선이 접하는 경우
B.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선이 후퇴한 경우
C. 건축선이 서로다른 A와 B가 접한 경우

▲권장 : 건축물의 연속적 공개공지를 이용한 공원 조성사례(일본, 야마가타 공원가)

다. 건축설비 및 기타 돌출시설

대형설비 및 굴뚝

B-다-01 공장의 대형 설비시설 및 굴뚝은 지역의 랜드마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슈퍼그래픽이나 조명을 설치하는 등 보다 세심하게 고려하여 계획한다.

▲권장 : 야간 랜드마크화한 산업굴뚝

▲권장 : 수직구조물의 포인트 디자인

▲권장 : 색채조화성을 고려한 슈퍼그래픽

건축설비 부속시설

B-다-02 건축물의 설비시설은 시각적 돌출을 하지 않도록 가급적 내부에 설치하도록 하고 외부 설치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거나 디자인적으로 차폐하여 계획한다.

- 에어콘 실외기, 환풍구 등 시설은 집약화, 축약화하여 배치하고 구조물이나 식재로 차폐
- 건축물에 야간경관용 조명 설치시 조명기구가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설치

▲권장 :건축물 설비를 가리는 가림막

▲권장 : 조명기구 노출 지양 사례

라. 건축외벽 재료

B-라-01 주변 건물과 조화되는 건축재료를 사용하되, 재료 자체의 색을 왜곡하거나 변형하는 색채의 사용을 지양하여 계획한다.(건축구성요소에 따른 권장재료 참조)

B-라-02 금속재의 경우 무광택 재료를 사용하고, 유리마감재의 경우 과도한 반사유리 사용을 지양하여 계획한다.

*** 건축 권장재료 (필수 권장사항은 아님)**

구 분		권 장 재 료	
지붕재		• 저채도의 편안하고 안정감있는 색채재료	쉉글 금속(아이루프) 등
외장재	고층부	• 저층부와 조화하고 가볍고 투명한 재료	유리 커튼월 금속패널 등
	저층부	• 사람에게 친근하고 안정감을 주는 자연재료	석 재 목 재 노출콘크리드 벽돌 벽돌타일 테라코타 등
바닥재		• 저채도, 저명도의 보행이 편안한 자연질감 소재	석재 벽돌 슬레이트 타일 등

3장 공공공간(오픈스페이스)

1. 기본방향 및 원칙

기본방향

본 가이드라인은 물리적 기능 및 의장에 관한 사항에 초점을 맞추며 공공공간(오픈스페이스)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므로 건축물에 인접한 외부 공간 또는 준 외부 공간에서 공간자체의 디자인과 관련된 지침을 주 내용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기본원칙

디자인 기본원칙		주요내용
Green Design	자연친화형 공공공간	◦ 가로환경 녹화 및 친환경성을 증진하는 공공공간 유도
CPTED Design	범죄예방형 공공공간	◦ 안전한 도시환경을 창출하는 오픈된 공공공간 유도
Universal Design	이용자배려형 공공공간	◦ 다계층의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능적인 공공공간 계획
Better Design	문화창조형 공공공간	◦ 도시문화를 선도하는 창조적이고 조화로운 공공공간 유도

가이드라인 외 법규 및 규정

- 구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구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구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 안산시 기본경관계획
- 안산시 경관조례
- 안산시 조례
- 경기도 디자인가이드라인
- 경기도 경관계획
- 경기도 경관조례

2. 적용지침

적용원칙

· 본 가이드라인은 안산시 공중의 사용을 목적으로 옥외 및 준 옥외영역에 조성되어 공중에게 개방되는 공공공간을 대상으로 함

· 일반적인 건축경관 가이드라인은 **'경기도 디자인가이드라인(2010) 중 공공공간 부문'을 따르되 세부항목이 중복 혹은 상충될 경우 안산시의 특성이 잘 반영된 안산시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우선적으로 준용함**

· 본 가이드라인은 공간적 디자인에 중점을 둔 것이며 예시된 도면, 이미지, 사진 등은 계획을 위한 참고자료임

· 사안별 적용 수준과 예외사항 처리 등은 안산시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통하여 결정함

적용대상

· 본 가이드라인은 안산의 미래경관을 형성, 보전, 관리하는 경관중점관리구역을 주요대상으로 함

도로 및 가로

- 도로/가로란 보행가로, 자전거 도로, 자동차 도로를 말한다.

광장

- 광장이란 중심 대광장, 역전광장, 교차점광장, 근린광장, 건축물 부설 광장을 말한다.

공원녹지

- 공원녹지란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기타공원 및 녹지를 말한다.

친수공간

- 친수공간이란 하천 둔치 부분 및 도심 내 수경공간 등을 말한다.

공공건축물 외부공간

- 안산시에서 규정하는 공공건축물의 외부 공간을 대상으로 한다.

옥외주차장

- 안산시에서 운영,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중 옥외주차장에 해당하는 노상 및 노외 주차장과 주요 공공건축물의 옥외주차장을 대상으로 한다

적용대상 및 구성체계

· 다음 표에 기입된 해당 공공공간의 분류에 따라 공공공간 계획 및 설계시 적용 가이드라인을 고려함

가이드라인 구분		적용 구분							비고
		도로 및 가로	광 장	공원녹지	친수공간		공공건축물 외부공간	옥외주차장	
					하 천	도심 내 수경공간			
Green Design	가. 식재 및 조경	○	○	○	○				
	나. 경계부 녹화		○				○	○	
	다. 친환경 포장/재료		○	○	○			○	
CPTED Design	가. 경계부 처리		○	○	○	○		○	
	나. 방범시설 설치	○	○	○			○	○	
Universal Design	가. 경계부 단차	○	○				○		
	나. 이용성을 증진하는 시설물 배치	○	○	○	○	○			
	다. 주의환기형 공간처리	○						○	
Better Design	가. 배경이 되는 바닥포장	○	○	○	○		○		
	나. 도시의 문화가 되는 디자인	○	○	○		○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도로 및 가로

가이드라인 구분			가이드 적용여부				비고
Green Design	G-가	식재 및 조경	권장	G-가-01	G-가-02		
			적용여부				
CPTED Design	C-나	방범시설 설치	권장	C-나-01	C-나-02		
			적용여부				
Universal Design	U-가	경계부 단차	권장	U-가-01	U-가-02		
			적용여부				
	U-나	이용성을 증진하는 시설물 배치	권장	U-나-01	U-나-02	U-나-03	
			적용여부				
	U-다	주의환기형 공간처리	권장	U-다-01	U-다-02		
			적용여부				
Better Design	B-가	배경이 되는 바닥포장	권장	B-가-01			
			적용여부				
	B-나	도시의 문화가 되는 디자인	권장	B-나-01			
			적용여부				

평가 : 적극고려 → ○, 부분고려 → △, 반영불가 → x, 해당사항 없음

※ 1. 항목별 세부내용 및 적용대상 구분은 가이드라인 내용을 참조하여 계획

※ 2. 가이드라인 항목별 적용여부를 [적극고려 → ○, 부분고려 → △, 반영불가 → ×,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한다.

※ 3. 작성시 [부분고려 → △, 반영불가 → ×]에 해당하는 경우 비고란 혹은 첨부자료를 통해 해당사유를 기재한다.

위치 : *규모 :*	*건축주 :* *설계자 :*

메모란

광 장

가이드라인 구분			가이드 적용여부				비고
Green Design	G-가	식재 및 조경	권장	G-가-03			
			적용여부				
	G-나	경계부 녹화	권장	G-나-01			
			적용여부				
	G-다	친환경 포장/재료	권장	G-다-01			
			적용여부				
CPTED Design	C-가	경계부 처리	권장	C-가-01	C-가-02		
			적용여부				
	C-나	방범시설 설치	권장	C-나-01	C-나-02		
			적용여부				
Universal Design	U-가	경계부 단차	권장	U-가-03			
			적용여부				
	U-나	이용성을 증진하는 시설물 배치	권장	U-나-04	U-나-05	U-나-06	
			적용여부				
Better Design	B-가	배경이 되는 바닥포장	권장	B-가-02			
			적용여부				
	B-나	도시의 문화가 되는 디자인	권장	B-나-02			
			적용여부				

평가 : 적극고려 → ○, 부분고려 → △, 반영불가 → x, 해당사항 없음

※ 1. 항목별 세부내용 및 적용대상 구분은 가이드라인 내용을 참조하여 계획

※ 2. 가이드라인 항목별 적용여부를 [적극고려 → ○, 부분고려 → △, 반영불가 → ×,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한다.

※ 3. 작성시 [부분고려 → △, 반영불가 → ×]에 해당하는 경우 비고란 혹은 첨부자료를 통해 해당사유를 기재한다.

위치 : *규모 :*	*건축주 :* *설계자 :*

메모란

공 원

가이드라인 구분			가이드 적용여부			비고
Green Design	G-나	경계부 녹화	권장	G-나-01		
			적용여부			
	G-다	친환경 포장/재료	권장	G-다-01		
			적용여부			
CPTED Design	C-가	경계부 처리	권장	C-가-01	C-가-02	
			적용여부			
	C-나	방범시설 설치	권장	C-나-01	C-나-02	
			적용여부			
Universal Design	U-나	이용성을 증진하는 시설물 배치	권장	U-나-07		
			적용여부			
Better Design	B-가	배경이 되는 바닥포장	권장	B-가-02		
			적용여부			
	B-나	도시의 문화가 되는 디자인	권장	B-나-03		
			적용여부			

평가 : 적극고려 → ○, 부분고려 → △, 반영불가 → x, 해당사항 없음

※ 1. 항목별 세부내용 및 적용대상 구분은 가이드라인 내용을 참조하여 계획

※ 2. 가이드라인 항목별 적용여부를 [적극고려 → ○, 부분고려 → △, 반영불가 → ×,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한다.

※ 3. 작성시 [부분고려 → △, 반영불가 → ×]에 해당하는 경우 비고란 혹은 첨부자료를 통해 해당사유를 기재한다.

위치 : *규모 :*	*건축주 :* *설계자 :*

메모란

친수공간 : 하 천

가이드라인 구분			가이드 적용여부			비고
Green Design	G-가	식재 및 조경	권장	G-가-04		
			적용여부			
	G-다	친환경 포장/재료	권장	G-다-02		
			적용여부			
CPTED Design	C-가	경계부 처리	권장	C-가-01	C-가-02	
			적용여부			
Universal Design	U-나	이용성을 증진하는 시설물 배치	권장	U-나-08		
			적용여부			
Better Design	B-가	배경이 되는 바닥포장	권장	B-가-03		
			적용여부			

친수공간 : 도심 내 수경공간

가이드라인 구분			가이드 적용여부			비고
CPTED Design	C-가	경계부 처리	권장	C-가-01	C-가-02	
			적용여부			
Universal Design	U-나	이용성을 증진하는 시설물 배치	권장	U-나-09		
			적용여부			
Better Design	B-나	도시의 문화가 되는 디자인	권장	B-나-05		
			적용여부			

평가 : 적극고려 → ○, 부분고려 → △, 반영불가 → x, 해당사항 없음

※ 1. 항목별 세부내용 및 적용대상 구분은 가이드라인 내용을 참조하여 계획

※ 2. 가이드라인 항목별 적용여부를 [적극고려 → ○, 부분고려 → △, 반영불가 → ×,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한다.

※ 3. 작성시 [부분고려 → △, 반영불가 → ×]에 해당하는 경우 비고란 혹은 첨부자료를 통해 해당사유를 기재한다.

위치 : *규모 :*	*건축주 :* *설계자 :*

메모란

공공건축물 외부공간

가이드라인 구분			가이드 적용여부			비고
Green Design	G-나	경계부 녹화	권장	G-나-01		
			적용여부			
CPTED Design	C-나	방범시설 설치	권장	C-나-01	C-나-02	
			적용여부			
Universal Design	U-가	경계부 단차	권장	U-가-03		
			적용여부			
Better Design	B-가	배경이 되는 바닥포장	권장	B-가-04		
			적용여부			
	B-나	도시의 문화가 되는 디자인	권장	B-나-06		
			적용여부			

평가 : 적극고려 → ○, 부분고려 → △, 반영불가 → x, 해당사항 없음

※ 1. 항목별 세부내용 및 적용대상 구분은 가이드라인 내용을 참조하여 계획

※ 2. 가이드라인 항목별 적용여부를 [적극고려 → ○, 부분고려 → △, 반영불가 → ×,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한다.

※ 3. 작성시 [부분고려 → △, 반영불가 → ×]에 해당하는 경우 비고란 혹은 첨부자료를 통해 해당사유를 기재한다.

위치 : *규모 :*	*건축주 :* *설계자 :*

메모란

옥외주차장

가이드라인 구분			가이드 적용여부			비고
Green Design	G-나	경계부 녹화	권장	G-나-02		
			적용여부			
	G-다	친환경 포장/재료	권장	G-다-03		
			적용여부			
CPTED Design	C-가	경계부 처리	권장	C-가-01	C-가-02	
			적용여부			
	C-나	방범시설 설치	권장	C-나-01	C-나-02	
			적용여부			
Universal Design	U-다	주의환기형 공간처리	권장	U-다-03		
			적용여부			

평가 : 적극고려 → ○, 부분고려 → △, 반영불가 → x, 해당사항 없음

※ 1. 항목별 세부내용 및 적용대상 구분은 가이드라인 내용을 참조하여 계획

※ 2. 가이드라인 항목별 적용여부를 [적극고려 → ○, 부분고려 → △, 반영불가 → ×,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한다.

※ 3. 작성시 [부분고려 → △, 반영불가 → ×]에 해당하는 경우 비고란 혹은 첨부자료를 통해 해당사유를 기재한다.

위치 : *규모 :*	*건축주 :* *설계자 :*

메모란

3.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Green Design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그린디자인*

가. 식재 및 조경

도로 및 가로

G-가-01 기존의 자연 식생 및 보호수와 조화되도록 식재하며, 상록수와 낙엽수의 혼용을 통해 계절감 부여와 겨울철 가로 녹지율 증대를 계획한다.

G-가-02 군집 식재, 다층 식재 등을 통하여 가로경관을 다양화하도록 계획한다.

▲권장 : 다층식재를 활용한 녹지 확충

▲권장 : 충분한 녹지를 확보한 가로수 식재

광 장

G-가-03 광장 외곽에 교목을 식재하여 그늘을 제공하고 광장의 위요감(안정감)을 높일 것을 권장하며, 경관 향상을 위하여 시각적 초점부에 대형목 또는 군식을 계획한다.

▲권장 : 보행가로와의 통로를 확보한 광장

▲권장 : 위요감을 가지는 광장외곽 식재 연출

친수공간 : 하천

G-가-04 하천변에 서식하는 자생 수종의 식재를 권장하며, 홍수위와 수질오염을 정화하는 식물 재질과 식재 방법의 도입을 계획한다.

▲권장 : 달부리풀,갈대,물옥잠,부레옥잠,텍사,갯버들 등 수질을 정화하고 홍수를 저감하는 국내 수생식물 식재

나. 경계부 녹화

광장 및 공원녹지, 공공건축물 외부공간

G-나-01 광장 및 공원, 공공건축물 외부공간의 경계부에는 담장이나 휀스보다는 녹지와 휴게시설 등으로 공간을 구분하고, 시민에게 개방된 공간 경계부에 불가피하게 담장이나 휀스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위압적이지 않도록 입면 녹화를 계획한다.

▲권장 : 광장 녹지 경계부 휴게공간 조성 사례

▲권장 : 마카오광장 휀스 녹화

▲권장 : 고베시청 경계부 공개공지 휴게녹화공간 계획 사례

옥외주차장

G-나-02 옥외주차장의 경계부 및 주차장 내의 일부를 녹화하여 시각적 차폐도와 쾌적성 증가, 복사열 저감 및 투수 면적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며, 대규모 옥외주차장의 경우 녹지대 조성 및 가로수 식재를 통해 주차구역을 구분하도록 계획한다.

▲권장 : 녹지대 및 수목을 활용한 주차구역 구분

▲권장 : 경계부 및 주차장 내부녹화 사례

다. 친환경 포장/재료

광장 및 공원녹지

G-다-01 광장 및 공원 내 보행가로는 콘크리트, 아스팔트 등의 인공적 소재의 사용을 지양하고 가급적 투수성이 있는 친자연 소재(식생블럭, 석재, 목재 등)를 이용하여 계획한다.

석재 블럭

자갈블록

투수콘

점토블럭

목재

친수공간 : 하천

G-다-02 하천과 잘 조화되는 목재, 석재 등 친자연 소재를 사용하되 철저한 유지관리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권장 : 목재데크를 이용한 보행로 조성 사례

▲권장 : 석재 블록을 이용한 바닥포장 사례

옥외주차장

G-다-03 옥외주차장의 노면포장은 콘크리트, 아스팔트를 지양하고 투수성이 높은 친환경 소재를 권장하며, 유지관리측면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권장 : 투수성 높은 친환경 옥외주차장 포장재

CPTED Design *범죄를 예방하는 도시공간 디자인*

가. 경계부 처리

광장 및 공원녹지, 친수공간, 옥외주차장

C-가-01 도로와 다른 포장재료 사용, 높이의 차이, 조경 등을 활용하여 명확한 동선을 배치하여 출입로와 통로의 경계를 계획한다.

▲권장 : 명확한 동선계획을 통한 광장 및 공원의 경계부 처리

C-가-02 경계부 차폐수목의 일정한 간격 및 위치 배열을 통해 자연적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생울타리, 놀이벽 등 설치시 폐쇄감이 적은 형태를 권장하여 도시가로 내 개방성 및 안정성을 높이도록 계획한다.

▲권장 : 개방감 높은 수목배열 ▲권장 : 개방감 높은 생울타리 설치사례

나. 방범시설설치

C-나-01 주차장법과 은행감독규정 등 특정지역에 CCTV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예방하도록 계획한다.

C-나-02 보행자의 보행을 방해하지 않는 곳이나 일반 건물 색과 동일하게 만들어 시각적인 돌출을 최소화하도록 계획한다.

▲권장 : 범죄발생 및 교통사고 감시 및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사례

Universal Design *다계층을 배려한 모두를 위한 디자인*

가. 경계부 단차

도로 및 가로

U-가-01 보행공간에 접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횡단보도 등 경계의 단차 등의 장애요소를 없애 장애인이나 자전거의 진입시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계획한다.

▲권장 : 보행공간 경계부 단차를 없앤 사례

U-가-02 보행가로와 횡단보도의 교차 구간 내에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한 시야 확보를 위해 가로수 식재를 피하며, 수목의 생장이 공공시각매체를 가로막지 않도록 계획한다.

▲권장 : 가로 횡단교차부 가로수 식재 사례

광장, 공공건축물 외부공간

U-가-03 노약자, 장애인 등 다계층의 사람들이 쉽게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경계부 단차를 최소화하고 시각장애인, 휠체어, 유모차 등이 진출입할 수 있는 점자블록, 슬로프 등 별도의 진출입로를 계획한다.

▲권장 : 경계부 단차가 없는 광장(독일 베를린)

▲권장 : 진출입 단차를 없앤 공공건축물 외부공간 사례(일본 고베)

나. 이용성을 증진하는 시설물 배치

도로 및 가로, 녹지

U-나-01 통합된 가로시설물의 설치로 가로 내 시설물의 점유율을 최소화하여 보행활동공간 및 개방성을 높이도록 계획한다.

▲권장 : 지주통합형 가로시설물 설치사례(좌:광주시/ 우:싱가폴)

▲권장 : 통합형 안내시설물 설치사례(Bristol-Legible City)

U-나-02 가로 내 녹지대를 설치하는 경우, 가로시설물은 녹지대 내 혹은 연속 배치하여 계획한다.

▲권장 : 녹지대와 연속하여 가로시설물을 설치한 사례(일본)

U-나-03 보행자, 자전거도로, 장애인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동선을 분리배치하여 계획한다.

▲권장 : 자전거와 보행자, 장애인의 동선을 분리확보하여 이용성을 높인 사례

광 장

U-나-04 휴게 및 편의시설은 되도록 광장의 경계 부분에 배치할 것을 권장하며, 구심성이나 상징성을 위한 시설물은 중앙 부분에 배치하도록 계획한다.

▲권장 : 이용성을 고려한 광장 시설공간 배치

U-나-05 행사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광장은 이동식 시설물을 활용하여 공간의 유연성, 가변성을 높이고, 근린광장은 활용도를 높이는 놀이 요소 및 지역 주민을 위한 휴게 시설과 편의 시설의 도입을 권장하여 계획한다.

▲권장 : 가변성 높은 광장부 플랜터 배치계획(폐타이어를 이용한 플랜터 조성사례)

▲권장 : 지역주민의 이용성을 높이는 놀이 및 휴게시설 설치사례

U-나-06 연도형 광장의 경우 사람들의 보행동선과 분리하여 녹지, 휴게시설 및 쉼터를 배치하도록 계획한다.

▲권장 : 보행동선을 고려한 연도형 광장 시설배치 사례

공 원

U-나-07 공원 진출입부의 차량 및 사람의 보행동선을 분리하고, 다양한 사람들의 편안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진입가로를 계획한다.

▲권장 : 편안하고 안전한 접근동선을 계획한 공원진입부 사례

친수공간 : 하 천

U-나-08 침수의 우려가 있는 하천지역의 경우 시설물 설치를 최소화하고, 공공화장실 등의 시설물은 홍수를 대비하여 이동식으로 배치하도록 계획한다.

▲권장 : 하천주변 최소화된 시설배치 사례

친수공간 : 도심 내 수경공간

U-나-09 바닥 분수 설치 시 어린이의 발이 끼지 않도록 배수 구멍 크기를 조정하고, 분수의 노즐과 전기 관련 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배치·계획한다.

▲권장 : 안전한 수경시설 설치사례

다. 주의환기형 공간처리

도로 및 가로

U-다-01 생활도로변, 보행 및 자전거도로와 교차구간, 스쿨존 등 보행자의 안전이 최우선되는 지점에는 속도저감 포장재질, 차량감속 유도형 차선을 사용하여 서행운전을 유도하도록 계획한다.

▲권장 : 차량 감속 및 주의환기를 위한 도로포장 사례

U-다-02 교차로 이용시 주의환기를 위한 차량 이동로와 보행로 재질의 구분을 권장하며, 차도와 교차되는 구간에서 자전거 도로의 주 재질을 연장하여 연속성을 높이도록 계획한다.

▲권장 : 안전한 교차로 횡단을 위한 가로재질 계획사례

옥외주차장

U-다-03 차량 이동 통로, 주차 공간 및 보행통로 재질이 구분되도록 하며, 주차선 표시방법은 페인트 도장 외에 차도용 블록재 사용 등으로 다양화하여 계획한다.

▲권장 : 일반도로와 구분되는 주차장 포장사례

Better Design *조화로운 도시문화를 창조하는 보다 나은 디자인*

가. 배경이 되는 바닥포장

도로 및 가로

B-가-01 단일 블록 내의 지나치게 많은 재료와 패턴의 혼용, 혹은 과도한 바닥패턴 디자인을 지양하고, 블록형 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 단위 규격이 큰 제품을 권장하여 계획한다.

▲권장 : 과도한 바닥패턴을 지양하고 도시의 배경이 되는 패턴디자인 사례

광장 및 공원

B-가-02 주변의 경관 요소에 조화하고 안정감있는 공간형성을 위하여 고명도 고채도의 과도한 색상의 바닥포장을 지양하며, 재료 자체의 고유 색채를 활용하여 계획한다.

▲권장 : 안정감있고 조화로운 광장부 바닥포장 사례

▲권장 : 재료 자체색을 활용한 공원 바닥재 사례

친수공간 : 하 천

B-가-03 하천의 자연풍경과 조화로운 친수공간 조성을 위하여 목재, 석재 등 자연소재를 이용한 바닥포장을 계획한다.

▲권장 : 자연소재를 이용한 친수공간 조성 사례

공공건축물 외부공간

B-가-04 건축물과 조화로운 색상의 바닥재 색채 및 재질을 권장하고, 공공건축물의 친자연성을 향상을 위해 녹지 및 자연소재를 적절히 사용하여 계획한다.

▲권장 : 건축물과 조화하고 친자연성을 높인 외부공간 바닥포장 사례

나. 도시의 문화가 되는 디자인

도로 및 가로

B-나-01 보행자들의 가로활동을 활성화를 위해 주요 간선가로 내 여유공지의 쌈지공간 조성 및 시설물 디자인으로 특성화된 가로이미지를 계획한다.

▲권장 : 쌈지공간, 시설디자인을 통한 가로이미지 조성사례

광 장

B-나-02 조형물, 바닥패턴, 조경 및 수경시설 등을 이용한 광장의 인상적인 이미지 조성을 위한 디자인을 계획한다.

▲권장 : 광장의 인상적인 이미지 조성 사례

공 원

B-나-03 휴식 및 산책공간 외 시민의 다양한 문화적 활동을 유도하도록 무대시설, 놀이 및 운동시설 등을 계획한다.

▲권장 : 무대, 놀이터, 운동공간 등 다양한 문화공간 계획사례

친수공간 : 도심 내 수경공간

B-LI-05 친수공간 주변으로 휴식 및 감상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이용성 및 쾌적성을 증진하도록 계획한다.

▲권장 : 친수공간 주변 휴식 및 감상공간 설치사례

공공건축물 외부공간

B-LI-06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문화휴식, 공공예술 감상, 소광장 조성 등을 권장하여 계획한다.

▲권장 : 공공문화성을 고려한 공공건축물 외부공간 조성사례

4장 공공시설물

1. 기본방향 및 원칙

기본방향

본 가이드라인은 안산시 내 설치되는 공공시설물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공공시설물의 물리적 기능 및 의장에 관한 사항에 초점을 두어 주 내용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가로시설물의 표준화와 개성있는 형태 유도 등 디자인 방향설정과 함께 통일감 있고 독창적인 경관 형성요소 지침을 주 내용으로 구성한다.

기본원칙

디자인 기본원칙		주요내용
Green Design	자연친화형 공공시설물	◦ 가로환경 녹화 및 친환경성을 증진하는 공공시설물 유도
CPTED Design	범죄예방형 공공시설물	◦ 안전한 도시환경을 창출하는 오픈된 공공시설물 유도
Universal Design	이용자배려형 공공시설물	◦ 다계층의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능적인 공공시설물 계획
Better Design	문화창조형 공공시설물	◦ 도시문화를 선도하는 창조적이고 조화로운 공공시설물 유도

가이드라인 외 법규 및 규정

- 구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구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구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 안산시 기본경관계획
- 안산시 경관조례
- 안산시 가로시설물 가이드라인
- 경기도 디자인가이드라인
- 경기도 경관계획
- 경기도 경관조례

2. 적용지침

적용원칙

· 본 가이드라인은 안산시 공중의 사용을 목적으로 공공공간에 설치되어 시민이 사용하는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함

· 일반적인 시설물의 가이드라인은 **'경기도 디자인가이드라인(2010) 중 공공시설물 부문' 을 기본으로 따르며, '안산시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 중 공공시설물' 부문을 추가적으로 준용**함

· 본 가이드라인은 공간적 디자인에 중점을 둔 것이며 예시된 도면, 이미지, 사진 등은 계획을 위한 참고자료임

· 사안별 적용 수준과 예외사항 처리 등은 안산시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통하여 결정함

적용대상

· 본 가이드라인은 안산의 미래경관을 형성, 보전,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을 주요대상으로 함

휴게 시설물

– 휴게 시설물이란 벤치, 파고라 등을 말한다.

위생 시설물

– 위생 시설물이란 휴지통, 이동식화장실, 음수대 등을 말한다.

편의 시설물

–편의 시설물이란 관광안내소, 공중전화 부스, 가로판매대, 무인키오스크 등을 말한다.

교통 시설물

– 교통 시설물이랑 버스승차대, 자전거보관대, 신호등 등을 말한다.

보호 시설물

– 보호 시설물이란 볼라드, 보도휀스, 방음벽 등을 말한다.

공급 시설물

– 공급 시설물이랑 맨홀, 환기구, 제어함, 플랜터, 가로수 보호덮개 등을 말한다.

조명 시설물

– 조명 시설물이란 가로등, 공원등, 보안등 등을 말한다.

공공매체 시설물

– 공공매체 시설물이란 교통표지판, 안내사인, 광고판 등을 말한다.

적용대상 및 구성체계

· 안산시 공공시설물 디자인가이드는 「경기도 공공디자인가이드」 내 <도시기반시설> 및 <가로시설물> 부문의 일반지침을 준수하며, 안산시 디자인가이드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공시설물 계획 및 설계시 특성화된 지침을 추가 반영함

가이드 종류	대상	가이드 구성	세부분류	세 부 내 용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	도시 기반 시설물	대상별 일반지침	-	교량, 철도, 고가차도, 입체교차로, 보도육교 등
			-	지하차도, 지하보도, 터널 등
			-	생태통로 등
	가로 시설물	대상별 일반지침	교통시설물	가로등, 보도펜스, 볼라드, 버스승차대, 자전거보관함, 신호등 방음벽 등
			편의시설물	벤치, 휴지통, 음수대, 이동식화장실, 가로판매대, 무인키오스크, 공중전화, 인포메이션부스 등
			공급시설물	맨홀, 배전함, 가로등제어함 환기구, 방재시설(제설함, 지상식소화전, 옥외소화전), 시계, 온·습도계 등

안산시 특성화된 가이드라인 구분		세부분류								비고
		휴게 시설물	위생 시설물	편의 시설물	교통 시설물	보호 시설물	공급 시설물	조명 시설물	공공매체 시설물	
Green Design	가. 자연친화적인 재료	○		○		○				
	나. 저탄소 녹색성장 도입		○	○				○		
CPTED Design	가. 가시성 있는 재질		○	○	○					
Universal Design	가. 신체 접촉면 처리	○		○						
	나. 휴먼스케일	○	○	○	○					
	다. 시설물 단차해소			○			○			
Better Design	가. 시설통합형 디자인	○		○	○			○	○	
	나. 미관의 유지		○	○		○	○	○	○	
	다. 정돈된 디자인형태			○		○			○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휴게 시설물 : 벤치, 파고라 등

가이드라인 구분			가이드 적용여부			비고
Green Design	G-가	자연친화적인 재료	권장	G-가-01	G-가-02	
			적용여부			
Universal Design	U-가	신체 접촉면 처리	권장	U-가-01	U-가-02	
			적용여부			
	U-나	휴먼스케일	권장	U-나-01		
			적용여부			
Better Design	B-가	시설통합형 디자인	권장	B-가-01		
			적용여부			
경기도 가이드라인 검토여부						

평가 : 적극고려 → ○, 부분고려 → △, 반영불가 → x, 해당사항 없음

※ 1. 항목별 세부내용 및 적용대상 구분은 가이드라인 내용을 참조하여 계획

※ 2. 가이드라인 항목별 적용여부를 [적극고려 → ○, 부분고려 → △, 반영불가 → ×,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한다.

※ 3. 작성시 [부분고려 → △, 반영불가 → ×]에 해당하는 경우 비고란 혹은 첨부자료를 통해 해당사유를 기재한다.

위치 : *규모 :*	*건축주 :* *설계자 :*

메모란

위생 시설물 : 휴지통, 이동식화장실, 음수대 등

가이드라인 구분			가이드 적용여부			비고
Green Design	G-나	저탄소 녹색성장 도입	권장	G-나-01		
			적용여부			
CPTED Design	C-가	가시성있는 재질	권장	C-가-01	C-가-02	
			적용여부			
Universal Design	U-나	휴먼스케일	권장	U-나-02		
			적용여부			
Better Design	B-나	미관의 유지	권장	B-나-01	B-나-02	
			적용여부			
경기도 가이드라인 검토여부						

평가 : 적극고려 → ○, 부분고려 → △, 반영불가 → x

※ 1. 항목별 세부내용 및 적용대상 구분은 가이드라인 내용을 참조하여 계획

※ 2. 가이드라인 항목별 적용여부를 [적극고려 → ○, 부분고려 → △, 반영불가 → ×,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한다.

※ 3. 작성시 [부분고려 → △, 반영불가 → ×]에 해당하는 경우 비고란 혹은 첨부자료를 통해 해당사유를 기재한다.

위치 : *규모 :*	*건축주 :* *설계자 :*

메모란

편의 시설물 : 관광안내소, 공중전화 부스, 가로판매대, 무인키오스크 등

가이드라인 구분			가이드 적용여부		비고
Green Design	G-가	자연친화적인 재료	권장	G-가-01	
			적용여부		
	G-나	저탄소 녹색성장 도입	권장	G-나-01	
			적용여부		
CPTED Design	C-가	가시성있는 재질	권장	C-가-01	
			적용여부		
Universal Design	U-가	신체 접촉면 처리	권장	U-가-01	
			적용여부		
	U-나	휴먼스케일	권장	U-나-01	
			적용여부		
	U-다	시설물 단차해소	권장	U-다-01	
			적용여부		
Better Design	B-가	시설통합형 디자인	권장	B-가-01	
			적용여부		
	B-나	미관의 유지	권장	B-나-01	
			적용여부		
	B-다	정돈된 디자인 형태	권장	B-다-01	
			적용여부		
경기도 가이드라인 검토여부					

평가 : 적극고려 → ○, 부분고려 → △, 반영불가 → x

※ 1. 항목별 세부내용 및 적용대상 구분은 가이드라인 내용을 참조하여 계획

※ 2. 가이드라인 항목별 적용여부를 [적극고려 → ○, 부분고려 → △, 반영불가 → ×,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한다.

※ 3. 작성시 [부분고려 → △, 반영불가 → ×]에 해당하는 경우 비고란 혹은 첨부자료를 통해 해당사유를 기재한다.

위치 : *규모 :*	*건축주 :* *설계자 :*

메모란

교통 시설물 : 버스승차대, 자전거보관대, 신호등 등

가이드라인 구분			가이드 적용여부		비고
CPTED Design	C-가	가시성있는 재질	권장	C-가-03	
			적용여부		
Universal Design	U-나	휴먼스케일	권장	U-나-01	
			적용여부		
Better Design	B-가	시설통합형 디자인	권장	B-가-02	
			적용여부		
경기도 가이드라인 검토여부					

평가 : 적극고려 → ○, 부분고려 → △, 반영불가 → x

※ 1. 항목별 세부내용 및 적용대상 구분은 가이드라인 내용을 참조하여 계획

※ 2. 가이드라인 항목별 적용여부를 [적극고려 → ○, 부분고려 → △, 반영불가 → ×,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한다.

※ 3. 작성시 [부분고려 → △, 반영불가 → ×]에 해당하는 경우 비고란 혹은 첨부자료를 통해 해당사유를 기재한다.

위치 : *규모 :*	*건축주 :* *설계자 :*

메모란

보호 시설물 : 볼라드, 보호휀스, 방음벽 등

가이드라인 구분			가이드 적용여부		비고
Green Design	G-가	자연친화적인 재료	권장	G-가-03	
			적용여부		
Better Design	B-나	미관의 유지	권장	B-나-01	
			적용여부		
	B-다	정돈된 디자인 형태	권장	B-다-01	
			적용여부		
경기도 가이드라인 검토여부					

평가 : 적극고려 → ○, 부분고려 → △, 반영불가 → x

※ 1. 항목별 세부내용 및 적용대상 구분은 가이드라인 내용을 참조하여 계획
※ 2. 가이드라인 항목별 적용여부를 [적극고려 → ○, 부분고려 → △, 반영불가 → ×,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한다.
※ 3. 작성시 [부분고려 → △, 반영불가 → ×]에 해당하는 경우 비고란 혹은 첨부자료를 통해 해당사유를 기재한다.

위치 : *규모 :*	*건축주 :* *설계자 :*

메모란

공급 시설물 : 맨홀, 환기구, 제어함, 플랜터, 가로수 보호덮개 등

가이드라인 구분			가이드 적용여부			비고
Universal Design	U-다	시설물 단차해소	권장	U-다-01		
			적용여부			
Better Design	B-나	미관의 유지	권장	B-나-01	B-나-03	
			적용여부			
경기도 가이드라인 검토여부						

평가 : 적극고려 → ○, 부분고려 → △, 반영불가 → x

※ 1. 항목별 세부내용 및 적용대상 구분은 가이드라인 내용을 참조하여 계획
※ 2. 가이드라인 항목별 적용여부를 [적극고려 → ○, 부분고려 → △, 반영불가 → ×,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한다.
※ 3. 작성시 [부분고려 → △, 반영불가 → ×]에 해당하는 경우 비고란 혹은 첨부자료를 통해 해당사유를 기재한다.

위치 : *규모 :*	*건축주 :* *설계자 :*

메모란

조명 시설물 : 가로등, 공원등, 보안등 등

가이드라인 구분			가이드 적용여부		비고
Green Design	G-나	저탄소 녹색성장 도입	권장	G-나-03	
			적용여부		
Better Design	B-가	시설통합형 디자인	권장	B-가-02	
			적용여부		
	B-나	미관의 유지	권장	B-나-01	
			적용여부		
경기도 가이드라인 검토여부					

평가 : 적극고려 → ○, 부분고려 → △, 반영불가 → x

※ 1. 항목별 세부내용 및 적용대상 구분은 가이드라인 내용을 참조하여 계획

※ 2. 가이드라인 항목별 적용여부를 [적극고려 → ○, 부분고려 → △, 반영불가 → ×,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한다.

※ 3. 작성시 [부분고려 → △, 반영불가 → ×]에 해당하는 경우 비고란 혹은 첨부자료를 통해 해당사유를 기재한다.

위치 : *규모 :*	*건축주 :* *설계자 :*

메모란

공공매체 시설물 : 교통표지판, 안내사인, 광고판 등

가이드라인 구분			가이드 적용여부		비고
Better Design	B-가	시설통합형 디자인	권장	B-가-01	
			적용여부		
	B-나	미관의 유지	권장	B-나-01	
			적용여부		
	B-다	정돈된 디자인 형태	권장	B-다-02	
			적용여부		
경기도 가이드라인 검토여부					

평가 : 적극고려 → ○, 부분고려 → △, 반영불가 → x

※ 1. 항목별 세부내용 및 적용대상 구분은 가이드라인 내용을 참조하여 계획

※ 2. 가이드라인 항목별 적용여부를 [적극고려 → ○, 부분고려 → △, 반영불가 → ×,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한다.

※ 3. 작성시 [부분고려 → △, 반영불가 → ×]에 해당하는 경우 비고란 혹은 첨부자료를 통해 해당사유를 기재한다.

위치 : *규모 :*	*건축주 :* *설계자 :*

메모란

3.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GREEN Design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그린디자인*

가. 자연친화적인 재료

휴게 시설물 : 벤치/ 파고라

G-가-01 사람의 신체와 접촉하는 휴게시설물의 부위는 자연친화적 재료를 사용하여 계획한다.

G-가-02 목재 혹은 석재 사용 시 유색 페인트 도장을 지양하며 재질의 본연의 색채를 사용하며 도장이 불가피한 경우 저채도 무채색 계열의 색상을 사용하도록 계획한다.

▲권장 : 자연친화적 재료를 이용한 휴게시설물 사례

보호 시설물 : 방음벽/ 플랜터/ 가로수보호덮개

G-가-03 공원, 녹지, 광장 등 사람들의 활동이 활발한 공간에 인접하여 설치되는 보호시설물은 목재, 석재 등의 자연재료를 권장하며, 녹화를 유도하여 자연경관과의 조화성을 높이도록 계획한다.

▲권장 : 자연재료와 녹화를 이용한 방음벽 사례

▲권장 : 자연친화적 재료를 이용한 플랜터, 가로수 보호덮개 사례

나. 저탄소 녹색성장 도입

위생 시설물 : 휴지통

G-나-01 구제 표준 픽토그램 사용을 권장하여 안산의 자연친화적 이미지를 부각시키며 분리수거와 재활용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권장 : 재활용 분리수거를 용이하게 하는 휴지통 사례

편의 시설물 : 관광안내소/ 공중전화부스/ 가로판매대/ 무인키오스크/ 이동식화장실

G-나-02 태양전지 등 에너지 재생시설을 이용한 에너지 절약형 디자인을 권장한다.

▲권장 : 태양광을 이용한 에너지 절약형 디자인의 사례

조명 시설물 : 가로등, 공원등, 보안등

G-나-03 태양전지 등 에너지 재생시설과의 결합을 권장며, 에너지 절약을 위해 LED 조명원을 사용하도록 계획한다.

▲권장 : 태양열 에너지를 이용한 조명시설 사례

CPTED Design *안전한 도시환경을 추구하는 디자인*

가. 가시성 있는 재질

위생 시설물 : 휴지통

C-가-01 사람들의 왕래와 이용이 활발한 역, 터미널 등 교통시설 내외부에 설치되는 휴지통은 테러 및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개방감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 계획한다.

C-가-02 벽면부 착형을 제외한 모든 휴지통은 화재 위험성을 고려하여 재떨이가 별도 분리되도록 디자인하며, 금연구역을 고려하여 일반휴지통과 담배꽁초 휴지통을 분류하여 설치하도록 계획한다.

▲권장 : 개방감있는 재질의 휴지통 사례

▲권장 : 재떨이가 별도 분리된 휴지통 사례

교통 시설물 : 버스승차대

C-가-03 버스 승차대 벽면은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투명 재료를 사용하여 계획한다.

▲권장 : 개방감을 지닌 버스승차대 사례

Universal Design *이용자를 배려하는 디자인*

가. 신체 접촉면 처리

휴게 시설물 : 벤치/ 파고라

U-가-01 앉음면에는 나무, 우레탄 등 부드러운 재료의 사용을 권장하며, 신체와 접촉하는 모든 모서리는 둥글게 처리하도록 계획한다.

▲권장 : 신체접촉면을 둥글게 처리한 벤치사례

U-가-02 파고라 내에는 등받이가 없는 벤치 시설을 원칙으로 하되 노약자의 이용이 많은 장소일 경우 등받이와 팔걸이가 있는 벤치를 권장하여 계획한다.

▲권장 : 장소와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파고라 사례

나. 휴먼스케일

휴게 시설물 : 벤치/ 파고라

U-나-01 구조(등받이 각도, 앉음 판 높이 등)결정시 <한구인 인체 치수조사>를 참조하며, 다양한 사용자들을 고려하여 다양한 높이와 공간을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권장 : 다계층의 신체 스케일을 고려한 벤치 사례

위생 시설물 : 음수대

U-나-02 어린이, 장애우 등 다계층의 사용자를 고려하여 음수대의 다양한 높이를 구성하도록 계획한다.

▲권장 : 다계층의 신체 스케일을 고려한 음수대 사례

편의 시설물 : 공중전화부스/ 무인키오스크

U-나-03 공중전화부스 설치시 일반 사용자와 장애인, 아동 등이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높낮이가 다른 공중전화기 설치와 LCD, 음성서비스 등 정보 전달 방법을 검토하여 계획한다.

U-나-04 무인 키오스크 설치 시 조작부는 일반 사용자와 휠체어 사용자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높이에 설치하도록 계획한다.

▲권장 : 다계층인의 사용을 배려한 공중전화 및 키오스크 사례

다. 시설물 단차해소

공급 시설물 : 맨홀/ 가로수 보호덮개

U-다-01 맨홀과 가로수 보호덮개 설치시 보도면과 같은 레벨로 계획하여 휠체어, 유모차, 자전거 등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계획한다.

▲권장 : 보도와 동일한 높이면을 지닌 맨홀 및 가로수 보호덮개

Better Design *조화로운 도시문화를 창조하는 보다 나은 디자인*

가. 시설통합형 디자인

휴게 시설물 : 벤치/ 파고라

B-가-01 파고라와 벤치 등은 공간효율을 위해 화단, 가로화분대 등 타 시설물과의 통합을 권장하며 단, 휴지통, 음수대 등 위생 시설물과의 통합은 지양하도록 계획한다.

▲권장 : 수목, 조경공간 주변으로 통합된 휴게시설물 사례

교통 시설물 : 신호등 + 조명시설물 : 가로등/ 보안등 + 공공매체 시설물 : 이정표, 교통표지판, 안내사인

B-가-02 지주형태의 가로시설물의 경우 통합디자인을 통해 정돈된 가로환경을 조성하며 색상, 형태, 결합방식 등 모듈화된 지주통합으로 통일된 디자인을 계획한다.

▲권장 : 조명, 신호등, 안내시설 등 지주형 시설물 통합디자인 사례(우: 판교 통합디자인 사례)

▲권장 : 안내시설과 휴게시설을 결합한 통합디자인 사례

나. 미관의 유지관리

B-나-01 모든 공공시설물의 시공 · 설치시 조립부 등의 볼트가 외부로 돌출 되지 않도록 매입하여 계획한다.

▲권장 : 시설의 설치부를 매입하여 시공한 사례

위생 시설물 : 휴지통

B-나-02 휴지통내 수분 배출을 원할 하도록 하고, 쓰레기 투척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투입구를 윗면으로 개방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권장 : 유지관리성을 고려한 휴지통 사례

공급 시설물 : 환기구, 방재시설, 제어함

B-나-03 불법광고물 부착이 어려운 형태와 재질을 활용하여 사후관리가 용이한 지속가능한 환경을 계획한다.

▲권장 : 불법광고물 부착을 방지하는 재질이용 사례

다. 정돈된 디자인형태

보호 시설물 : 볼라드, 보도휀스

B-다-01 픽토그램 이외의 과도한 광고형 문구와 장식적 도안의 부착을 지양하고, 기능 중심의 심플한 디자인 형태로 고품격 도시환경을 계획한다.

▲지양 : 난간의 도안부착, 장식적 형태 등 사례

▲권장 : 심플하고 기능적인 난간디자인 사례

공공매체 시설물 : 안내사인, 광고판 등

B-다-02 과도하고 시각적으로 무질서한 형태의 현수막 광고, 개별적인 안내사인의 설치 등을 지양하고 주변 시설과 통합 · 정돈된 공공매체 디자인

▲지양 : 현란한 현수막 광고매체 사례

▲권장 : 주변시설과 통합 · 정돈된 공공매체 디자인사례

5장 색채경관

1. 기본방향 및 원칙

기본방향

본 가이드라인은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본 계획의 경관구상에서 정한 5개의 권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색채경관 형성 지침을 제시하여 향후 개발되는 지구 및 공간 구성요소간의 시각적 일관성을 추구함으로써 권역별 차별성을 연출함과 동시에 전반적인 도시경관의 통일감 확보 및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색채경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기본원칙

디자인 기본원칙		주요내용
Green Design	자연에 순응하는 색채경관	◦ 도심 내 자연경관과 조화로운 도시 구성요소의 색채 연출
CPTED Design	범죄예방형 색채경관	◦ 안전한 생활환경 연출을 위해 밝은 분위기의 색채경관 제공
Universal Design	이용자배려형 색채경관	◦ 다계층의 시민들이 인식하고 공감할 수 있는 색채경관 유도
Better Design	독창적인 색채경관	◦ 도시문화를 주도하는 창조적인 색채경관 창출

가이드라인 외 법규 및 규정

- 구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구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구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건축기본법
- 건축법
- 건축법 시행령
- 건축법 시행규칙
-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 안산시 기본경관계획
- 안산시 경관조례
- 경기도 디자인가이드라인
- 경기도 경관계획
- 경기도 경관조례

2. 적용지침

적용원칙

· 본 가이드라인은 안산시 기본경관계획이 정하는 권역별, 또는 그 권역을 형성하는 요소별 색채경관 디자인지침의 원칙적 측면을 다룸

· 일반적인 색채경관 가이드라인은 **본 가이드라인의 기본원칙에 따른 일반지침과 해당 권역에 따른 권장색채범위를 준용하되, 특정경관계획에 관련된 사항은 안산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함**

· 본 가이드라인은 공간측면에서의 색채적용 방향에 중점을 둔 것이며 예시된 도면, 이미지, 사진 등은 계획을 위한 참고자료임

· 사안별 적용 수준과 예외사항 처리 등은 안산시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통하여 결정함

적용대상

· 본 가이드라인은 안산의 미래경관을 형성, 보전 ,관리하는 **경관계획 대상구역 내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및 도시구조물, 시설물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함

안산시 전역 내 건축물 및 도시구조물, 시설물

- 권역별 지구 (전원경관, 시가지경관, 산업경관, 시화호경관, 해양경관으로 분류)에 대한 색채계획 기본방향 및 권장 색채범위 반영

* 색채에 의한 기호는 「한구표준색채」로 표기해 표준화된 색채계획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며, 강제성의 유 · 무와 무관하게 모든 규정은 디자인 심의, 자문, 발주, 실행, 유지관리시 고려사항으로 규정

적용대상 및 구성체계

· 다음 표에 기입된 해당 권역별 분류에 따라 색채계획 및 설계시 적용 가이드라인을 고려함

가이드라인 구분			적용 구분					비고
			내륙 전원경관권	시가지 경관권	반월 산업경관권	시화호 연안경관권	대부도 해양경관권	
Green Design	가. 자연과 조화로운 건축물 색채	주거용: 공동주택	○	○		○	○	
		주거용: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	○		○	○	
		상업·업무용 건축물	○	○		○	○	
		산업용 건축물	○		○	○		
	나. 자연친화적 가로시설물 색채	면적이 넓은 시설물	○		○	○	○	
		녹지공간 내 시설물	○		○	○	○	
	다. 자연친화적 바닥포장 색채		○		○	○	○	
CPTED Design	가. 범죄예방형 건축물 색채			○	○			
	나. 범죄예방형 가로시설물 색채		○	○	○			
	다. 범죄예방형 바닥포장 색채		○	○	○			
Universal Design	가. 유니버셜형 건축물 색채		○	○		○	○	
	나. 유니버셜형 가로시설물 색채		○	○		○	○	
	다. 유니버셜형 바닥포장 색채		○	○		○	○	
Better Design	가. 아름다운 건축파사드 색채		○	○		○	○	
	나. 아름다운 가로시설물 색채		○	○		○	○	
	다. 조화로운 바닥포장 색채		○	○		○	○	
권역별 색채범위			○	○	○	○	○	

색채경관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내륙 전원경관권

가이드라인 구분			가이드 적용여부					비고
Green Design	G-가	자연과 조화로운 건축물 색채	구분	주거용 : 공동주택			주거용: 단독/다세대	
			권장	G-가-01	G-가-02	G-가-03	G-가-04	
			적용여부					
			구분	상업·업무용		산업용	-	
			권장	G-가-05	G-가-06	G-가-07	-	
			적용여부				-	
	G-나	자연친화적 가로시설물 색채	권장	G-나-01		G-나-02		
			적용여부					
	G-다	자연친화적 바닥포장 색채	권장	G-다-01				
			적용여부					
CPTED Design	C-나	범죄예방형 가로시설물 색채	권장	C-나-01		C-나-02		
			적용여부					
	C-다	범죄예방형 바닥포장 색채	권장	C-다-01				
			적용여부					
Universal Design	U-가	유니버셜형 건축물 색채	권장	U-가-01				
			적용여부					
	U-나	유니버셜형 가로시설물 색채	권장	U-나-01				
			적용여부					
	U-다	유니버셜형 바닥포장 색채	권장	U-다-01				
			적용여부					
Better Design	B-가	아름다운 건축파사드 색채	권장	B-가-01				
			적용여부					
	B-나	아름다운 가로시설물 색채	권장	B-나-01				
			적용여부					
	B-다	조화로운 바닥포장 색채	권장	B-다-01				
			적용여부					
권역별 색채범위 적용여부								

평가 : 적극고려 → ○, 부분고려 → △, 반영불가 → x

※ 1. 항목별 세부내용 및 적용대상 구분은 가이드라인 내용을 참조하여 계획

※ 2. 가이드라인 항목별 적용여부를 [적극고려 → ○, 부분고려 → △, 반영불가 → ×]로 표시한다.

※ 3. 작성시 [부분고려 → △, 반영불가 → ×]에 해당하는 경우 비고란 혹은 첨부자료를 통해 해당사유를 기재한다.

위치 : *규모 :*	*건축주 :* *설계자 :*

메모란

시가지 경관권

가이드라인 구분			가이드 적용여부					비고
Green Design	G-가	자연과 조화로운 건축물 색채	구분	주거용 : 공동주택			주거용: 단독/다세대	
			권장	G-가-01	G-가-02	G-가-03	G-가-04	
			적용여부					
			구분	상업·업무용				
			권장	G-가-05			G-가-06	
			적용여부					
CPTED Design	C-가	범죄예방형 건축물 색채	권장	C-가-01				
			적용여부					
	C-나	범죄예방형 가로시설물 색채	권장	C-나-01			C-나-02	
			적용여부					
	C-다	범죄예방형 바닥포장 색채	권장	C-다-01				
			적용여부					
Universal Design	U-가	유니버셜형 건축물 색채	권장	U-가-01				
			적용여부					
	U-나	유니버셜형 가로시설물 색채	권장	U-나-01				
			적용여부					
	U-다	유니버셜형 바닥포장 색채	권장	U-다-01				
			적용여부					
Better Design	B-가	아름다운 건축파사드 색채	권장	B-가-01				
			적용여부					
	B-나	아름다운 가로시설물 색채	권장	B-나-01				
			적용여부					
	B-다	조화로운 바닥포장 색채	권장	B-다-01				
			적용여부					
권역별 색채범위								

평가 : 적극고려 → ○, 부분고려 → △, 반영불가 → x

※ 1. 항목별 세부내용 및 적용대상 구분은 가이드라인 내용을 참조하여 계획

※ 2. 가이드라인 항목별 적용여부를 [적극고려 → ○, 부분고려 → △, 반영불가 → ×]로 표시한다.

※ 3. 작성시 [부분고려 → △, 반영불가 → ×]에 해당하는 경우 비고란 혹은 첨부자료를 통해 해당사유를 기재한다.

위치 : *규모 :*	*건축주 :* *설계자 :*

메모란

반월 산업경관권

가이드라인 구분			가이드 적용여부			비고
Green Design	G-가	자연과 조화로운 건축물 색채	구분	산업용		
			권장	G-가-07		
			적용여부			
	G-나	자연친화적 가로시설물 색채	권장	G-나-01	G-나-02	
			적용여부			
	G-다	자연친화적 바닥포장 색채	권장	G-다-01		
			적용여부			
CPTED Design	C-가	범죄예방형 건축물 색채	권장	C-가-01		
			적용여부			
	C-나	범죄예방형 가로시설물 색채	권장	C-나-01	C-나-02	
			적용여부			
	C-다	범죄예방형 바닥포장 색채	권장	C-다-01		
			적용여부			
권역별 색채범위						

평가 : 적극고려 → ○, 부분고려 → △, 반영불가 → x

※ 1. 항목별 세부내용 및 적용대상 구분은 가이드라인 내용을 참조하여 계획

※ 2. 가이드라인 항목별 적용여부를 [적극고려 → ○, 부분고려 → △, 반영불가 → ×]로 표시한다.

※ 3. 작성시 [부분고려 → △, 반영불가 → ×]에 해당하는 경우 비고란 혹은 첨부자료를 통해 해당사유를 기재한다.

위치 : *규모 :*	*건축주 :* *설계자 :*

메모란

시화호 연안경관권

가이드라인 구분			가이드 적용여부					비고
Green Design	G-가	자연과 조화로운 건축물 색채	구분	주거용 : 공동주택			주거용: 단독/다세대	
			권장	G-가-01	G-가-02	G-가-03	G-가-04	
			적용여부					
			구분	상업·업무용		산업용	-	
			권장	G-가-05	G-가-06	G-가-07	-	
			적용여부				-	
	G-나	자연친화적 가로시설물 색채	권장	G-나-01		G-나-02		
			적용여부					
	G-다	자연친화적 바닥포장 색채	권장	G-다-01				
			적용여부					
Universal Design	U-가	유니버셜형 건축물 색채	권장	U-가-01				
			적용여부					
	U-나	유니버셜형 가로시설물 색채	권장	U-나-01				
			적용여부					
	U-다	유니버셜형 바닥포장 색채	권장	U-다-01				
			적용여부					
Better Design	B-가	아름다운 건축파사드 색채	권장	B-가-01				
			적용여부					
	B-나	아름다운 가로시설물 색채	권장	B-나-01				
			적용여부					
	B-다	조화로운 바닥포장 색채	권장	B-다-01				
			적용여부					
권역별 색채범위								

평가 : 적극고려 → ○, 부분고려 → △, 반영불가 → x

※ 1. 항목별 세부내용 및 적용대상 구분은 가이드라인 내용을 참조하여 계획

※ 2. 가이드라인 항목별 적용여부를 [적극고려 → ○, 부분고려 → △, 반영불가 → ×]로 표시한다.

※ 3. 작성시 [부분고려 → △, 반영불가 → ×]에 해당하는 경우 비고란 혹은 첨부자료를 통해 해당사유를 기재한다.

위치 : *규모 :*	*건축주 :* *설계자 :*

메모란

대부도 해양경관권

가이드라인 구분			가이드 적용여부					비고
Green Design	G-가	자연과 조화로운 건축물 색채	구분	주거용 : 공동주택			주거용: 단독/다세대	
			권장	G-가-01	G-가-02	G-가-03	G-가-04	
			적용여부					
			구분	상업·업무용				
			권장	G-가-05		G-가-06		
			적용여부					
	G-나	자연친화적 가로시설물 색채	권장	G-나-01		G-나-02		
			적용여부					
	G-다	자연친화적 바닥포장 색채	권장	G-다-01				
			적용여부					
Universal Design	U-가	유니버셜형 건축물 색채	권장	U-가-01				
			적용여부					
	U-나	유니버셜형 가로시설물 색채	권장	U-나-01				
			적용여부					
	U-다	유니버셜형 바닥포장 색채	권장	U-다-01				
			적용여부					
Better Design	B-가	아름다운 건축파사드 색채	권장	B-가-01				
			적용여부					
	B-나	아름다운 가로시설물 색채	권장	B-나-01				
			적용여부					
	B-다	조화로운 바닥포장 색채	권장	B-다-01				
			적용여부					
권역별 색채범위								

평가 : 적극고려 → ○, 부분고려 → △, 반영불가 → x

※ 1. 항목별 세부내용 및 적용대상 구분은 가이드라인 내용을 참조하여 계획

※ 2. 가이드라인 항목별 적용여부를 [적극고려 → ○, 부분고려 → △, 반영불가 → ×]로 표시한다.

※ 3. 작성시 [부분고려 → △, 반영불가 → ×]에 해당하는 경우 비고란 혹은 첨부자료를 통해 해당사유를 기재한다.

위치 : *규모 :*	*건축주 :* *설계자 :*

메모란

3. 색채경관 일반가이드

Green Design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그린디자인*

가. 자연과 조화로운 건축물 색채

주거용 건축물 : 공동주택

G-가-01 공동주택 건축물은 도시경관의 배경이 될 수 있도록 인공적인 채색방법을 최소화시키고, 건축물의 재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색채이미지를 최대한 이용하여 편안한 주거환경 색채를 계획한다.

G-가-02 위화감이 없는 배색을 위하여 주조색은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로운 색채를 적용하도록 하고 보조색은 주조색과 동일 계열 내의 색채로 선정하여 계획한다.(권장색채는 권역별 적용색채 범위를 참고한다.)

▲권장 : 위화감이 없는 외벽 배색 연출 사례

▲권장 : 인공적인 채색방법을 최소화한 사례

G-가-03 공동주택 건축물의 저층부는 재료 고유의 색을 활용하되 보행자 관점에서의 시각적 변화감 연출을 위하여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범위 내에서 다양한 색채의 사용을 계획한다.

▲권장 : 공동주택 저층부 색채연출 사례

▲권장 : 조화로운 색채 다양성 연출 사례

주거용 건축물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G-가-04 단독/다세대 건축물의 경우, 인공적인 도장 적용을 최소화하고 재료 고유의 색채를 최대한 유지하는 색채연출을 계획한다.

▲권장 : 단독주거지의 친자연적이고 재료 자체색을 유지하는 사례

상업·업무용 건축물

G-가-05 상업·업무지역 특성상 주조색과 보조색의 색상범위는 비교적 폭넓게 허용하되 지나치게 자극적인 색상을 억제하여 도시의 배경색을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G-가-06 상업·업무건축물의 저층부는 자연친화적이며 친근한 색상을 주조색으로 하고, 고층부는 하늘의 색상과 조화되는 경쾌한 배색이 되도록 계획한다.

▲권장 : 자연과 친근한 상업·업무지 사례

산업용 건축물

G-가-07 형태적인 다양성이 부족한 공업용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획일화된 건축물의 매스감과 위압감 해소 및 소음, 공해 등 부정적 이미지 저감을 위해 청량감 있는 포인트 색채 사용을 계획한다.

▲권장 : 청량감있는 공업지 색채연출 사례

나. 자연친화적 가로시설물 색채

면적이 넓은 시설물

G-나-01 안내사인, 버스승차장 등 넓은 면적의 시설물은 단색 사용을 지양하고 3가지 이하의 색상 및 재료를 활용하여 면의 분절이 가능한 색채를 계획한다.

▲권장 : 색상 및 재료에 의한 면의 분절을 계획한 버스승차장 사례

녹지공간 내 시설물

G-나-02 자연적 소재(목재, 투명재질 등)를 사용하고 재질 자체색 활용을 권장하며, 저채도·고광택의 철재 사용을 억제하되 유지관리 차원에서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친자연성 연출이 가능한 색채로 도장하거나 무광 처리하여 계획한다.

▲권장 : 자연적 소재를 이용한 시설물 사례

다. 자연친화적 바닥포장 색채

G-다-01 자동차전용도로 이외의 보행로 등의 바닥포장 색채는 주변 자연경관보다 눈에 띄지 않도록 저채도의 색채 사용을 권장하며, 지면 레벨의 주요색채인 흙색과 조화로운 난색계의 저명도·저채도 색채를 계획한다.

▲권장 : 지면레벨과 조화로운 바닥포장 색채 사례

CPTED Design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범죄예방형 디자인*

가. 범죄예방형 건축물 색채

C-가-01 야간 우범화가 우려되는 구간 내 위치하는 건축물의 저층부는 밝은 분위기 연출을 위해 파스텔 톤의 고명도 · 저채도의 색채를 권장하여 계획한다.

▲권장 : 밝은 분위기 연출을 위한 건축색채 사례

나. 범죄예방형 가로시설물 색채

C-나-01 주조색은 도시배경에 적합한 저채도·저명도의 차분한 색채를 적용하되 강조색 또는 형광띠 등을 적용하여 주의환기 및 경계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C-나-02 특별히 어두운 공간이나 범죄발생이 우려되는 구역 내 시설물의 경우 백색(White) 등 밝은 색상의 삽입을 통해 밝은 분위기를 연출을 계획한다.

▲권장 : 주야간 주의환기 및 경계심을 유발하는 시설물 색채적용 사례

다. 범죄예방형 바닥포장 색채

C-다-01 어린이보호구역, 자전거도로 횡단구역 등의 바닥포장 주조색은 저채도 · 저명도의 차분한 색채를 적용하되 강조색 또는 고채도 색상을 활용한 바닥패턴 디자인을 통해 경계심을 높이는 색채를 계획한다.

▲권장 : 주의 및 경계를 위한 바닥포장 강조색상 및 조명 사례

Universal Design *다계층을 배려한 모두를 위한 디자인*

가. 유니버셜형 건축물 색채

U-가-01 외부인의 출입이 잦은 상업·업무용 건축물 및 시민의 출입이 잦은 공공건축물의 경우 다계층 이용자의 인식성을 고려하여 건물 주조색과 주차장 출입부 및 건축물 현관부와의 색채 차별성을 계획한다.

▲권장 : 진출입을 유도하는 색채계획 사례

나. 유니버셜형 가로시설물 색채

U-나-01 볼라드, 보도 휀스 등 차량 차단시설의 경우 보행에 장애가 없도록 상단부 강조색 적용으로 인지성을 높이도록 한다.

▲권장 : 인지성을 강조하는 차단시설 강조색상 사례

다. 유니버셜형 바닥포장 색채

U-다-01 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갈림길, 교차로, 공간 진출입부, 횡단보도 시종점 등의 인식성을 높이도록 부분적 강조색 적용 또는 패턴 디자인을 활용하여 계획한다.

▲권장 : 보행 안전성을 확보하는 바닥포장 색채계획 사례

Better Design *조화로운 도시문화를 창조하는 보다 나은 디자인*

가. 아름다운 건축파사드 색채

B-가-01 주요 가로변에 위치한 건축물은 외벽면의 색상분절을 통해 가로경관의 변화감있고 표정이 풍부한 건축파사드 색채연출을 계획한다.

▲권장 : 표정이 풍부한 건축파사드 분절디자인 사례

나. 아름다운 가로시설물 색채

B-나-01 넓은 면적의 시설물은 면분할이나 색상 및 재질변화로 부분적 강조색상 적용을 통해 차별화 연출을 계획한다.

▲권장 : 면분할을 통한 넓은 면적 시설물의 색채차별화 사례

다. 조화로운 보도포장 색채

B-다-01 가로 특성에 부합하는 색채 사용 및 패턴 연출을 권장하며, 보행유도나 안전을 위한 포인트 색상 적용 외 과도한 저채도, 원색, 형광색 사용 및 지나치게 다양한 포장색채를 사용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권장 : 가로특성에 맞는 조화로운 포장색채 사례(좌: 공원/ 중: 시가지/ 우: 역사지)

4. 권역별 색채범위 가이드

색채범위 권역기준

· 안산시 기본경관계획에서는 지역별 경관특성에 따라 안산시 전역을 크게 5권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권역별 현장조사를 통한 색채계 분석으로 포괄적 권장색채 범위를 제시함

· 각 경관색채범위는 권역내 신축 또는 리모델링되는 건축물, 시설물, 구조물 등의 색채계획시 참조할 수 있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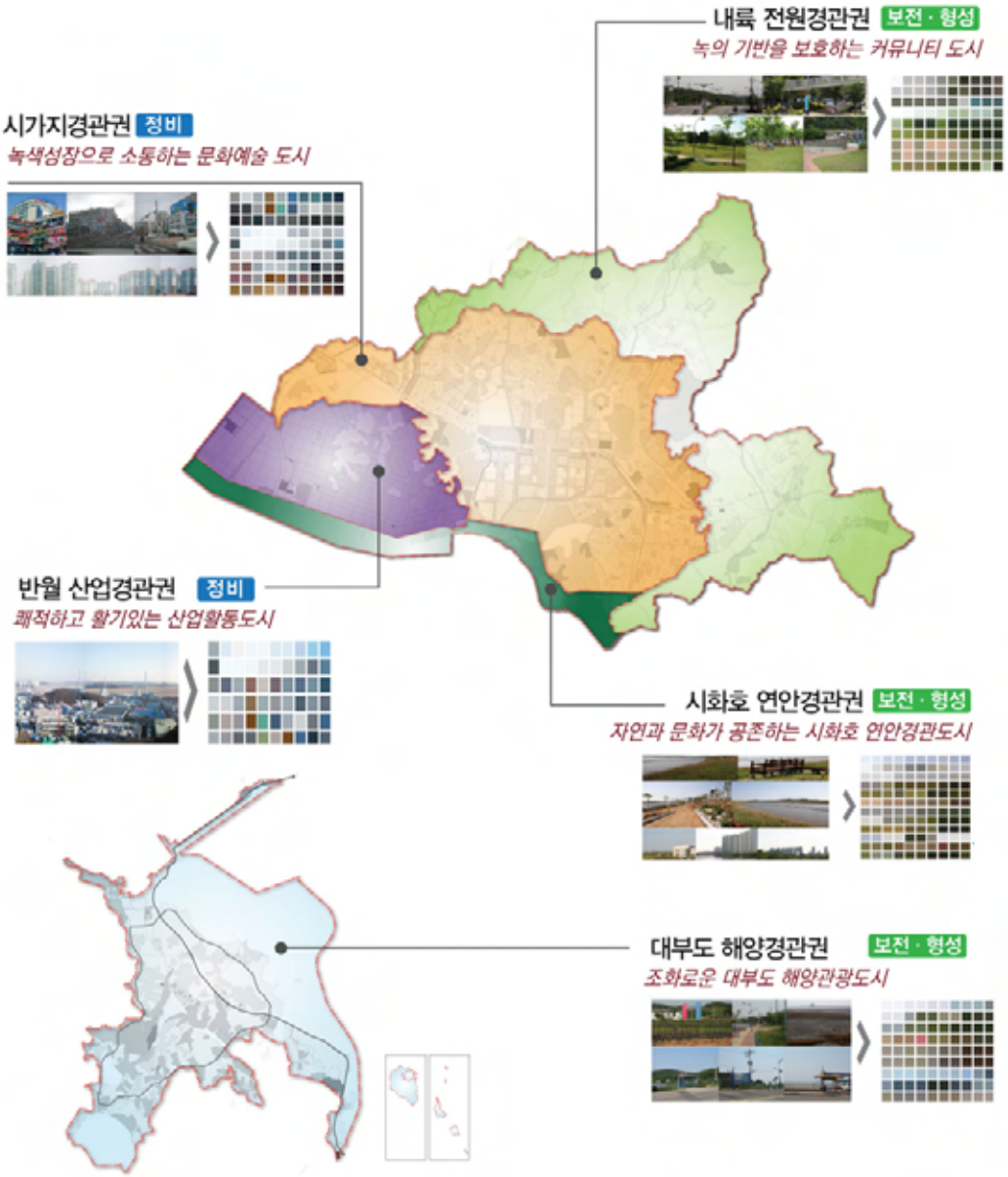

색채범위 권역기준

제1권역 : 내륙 전원경관권

현장조사를 통한 색채추출

색채계 분포도

추출된 색체계의 컬러톤(Color Tone)별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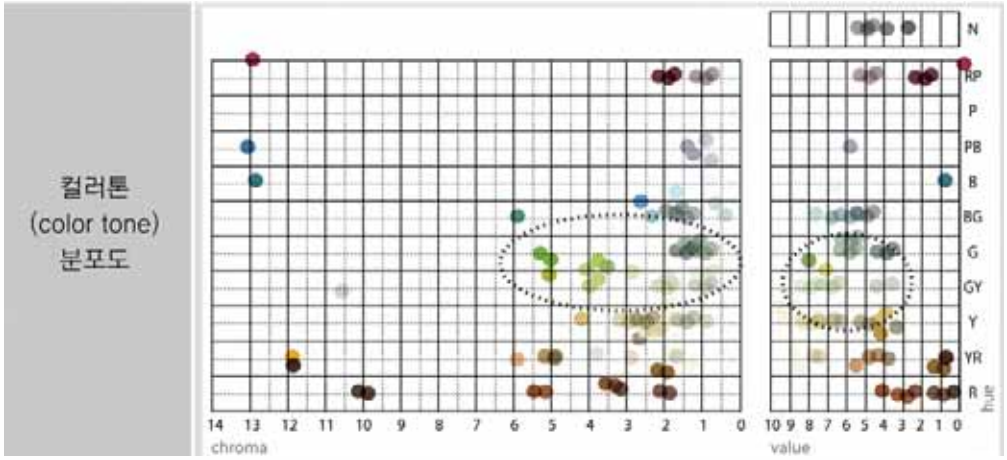

· 자연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색감으로 인해 1G~5G, 1GY~4GY계열 분포가 다수를 이루고 그 외에도 인공시설로 인하여 R,YR,BG의 색상이 다채롭게 나타남

· 중명도, 중~저채도의 온화한 색채에 분포됨

경관특성

· 도시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산림경관 형성지역으로 전원주거지 및 시외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 철도노선, 역사문화 경관자원 등이 권역 내 위치

색채경관 현황

[원경]

· 녹지로 둘러싸여 있으며 건축물의 규모는 다양하나 색채에 있어서는 난색계 색상이 중심을 이루고 있고 외벽은 저채도이나 지붕은 대부분 고채도 중심으로 되어있음

[근경]

· 녹음과 유사색을 사용하고 있으나 채도의 범위가 일정하지 않고 시설물의 경우 주변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재질 그대로의 색채 사용됨

색채경관형성에 대한 사고

· 주조색은 배경이나 전경이 되는 상수나 구릉의 녹음과 어우러져 주위의 가로와 위화감없이 조화를 이루는 저채도의 색채로 하여 난색계 색상을 기본으로 함.

· 자연의 녹음과 대비가 되는 극단적으로 강하고 밝은 색조는 지양함

· 명도나 채도를 억제한 색채권장

가능색의 범위

【표 46】 권장색채 범위

구 분	색 상	명 도	채 도
주 조 색	0R~5Y	4이상 8.5미만	4이하
			기타색상(1이하)
보 조 색	5YR~5Y	6이하	4이하
			기타색상(1이하)
강 조 색	2.5GY~5G	6이하	8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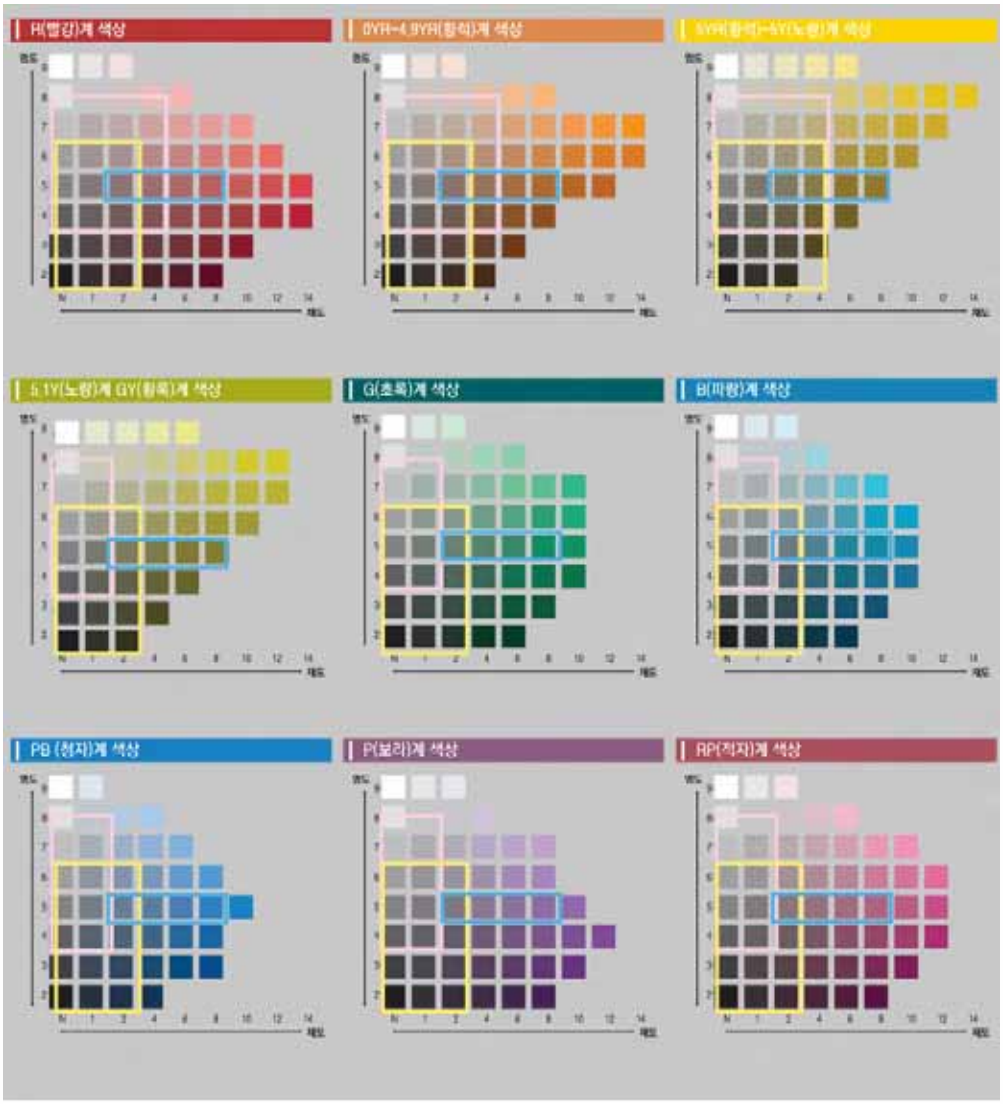

주 조 색	구조물 및 건축물의 바탕색, 시설물 및 바닥재의 기본색 등 가장 많은 부분과 면적에 쓰이는 색
보 조 색	구조물 및 시설물의 20~30% 사용되는 색으로 주조색과 조화를 이룰수 있는 색
강 조 색	장소성 및 기능성을 부각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5%이내의 색

제2권역 : 시가지 경관권

현장조사를 통한 색채 추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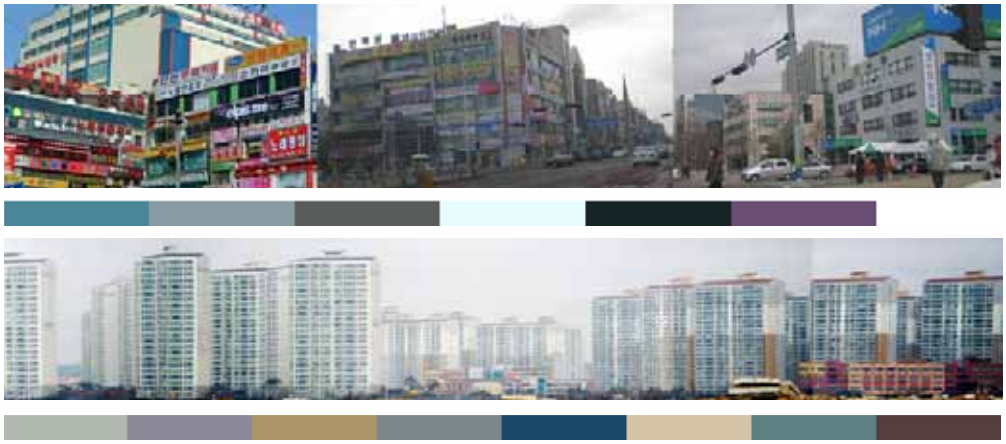

색채계 분포도

추출된 색체계의 컬러톤(Color Tone)별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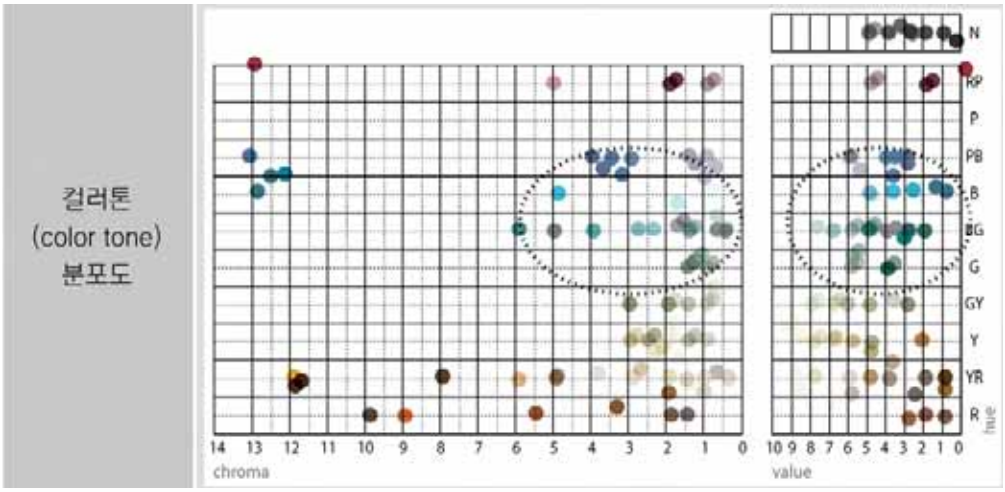

· 대부분 인공시설물로 0.5BG~6BG, 1PB~4PB계열의 색채와 YR, Y, GY의 색채가 다양하게 분포됨

· 중명도, 중~고채도의 한색계열의 색채가 주를 이루나 난색계열의 색채도 분포함

경관특성

· 계획도시로 도시를 통과하는 녹의 중심축이 조성되어 있고, 도시문화공간으로서 도시하천의 수변공간 및 개발계획지를 포함한 구/신시가지 경관권

색채경관 현황

[원경]

· 녹지축 및 수변축 등의 중심가로축을 중심으로 공간이 나뉘어지며 권역별 장소성이나 지구별 특징적 경관계획이 없음. 난색계 색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근경]

· 주조색보다 보조색의 채도가 높고 색채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 복잡한 가로경관을 유발하며 한색계열의 외벽이 차가운 도시의 이미지를 형성함

색채경관형성에 대한 사고

· 지역의 경관특성을 파악하여 주변의 가로경관이나 자연과의 조화를 고려함

· 주조색은 주변의 가로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중채도의 색채를 기본으로 함

· 강조색은 그 면적을 전체면적의 5% 이내로 사용하며 중저층부에서만 허용되도록 함

사용 가능색의 범위

【표 46】 권장색채 범위

구 분	색 상	명 도	채 도
주 조 색	0R~4.9YR	4이상 8.5미만일 경우	4이하
		8.5이상인 경우	1.5이하
	5YR~5Y	4이상 8.5미만일 경우	6이하
		8.5이상인 경우	2이하
강 조 색	0R~4.9YR	–	4이하
	5YR~5Y		6이하

주 조 색 구조물 및 건축물의 바탕색, 시설물 및 바닥재의 기본색 등 가장 많은 부분과 면적에 쓰이는 색

강 조 색 징소성 및 기능성을 부각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5%이내의 색

제3권역 : 반월 산업경관권

현장조사를 통한 색채 추출

색채계 분포도

추출된 색체계의 컬러톤(Color Tone)별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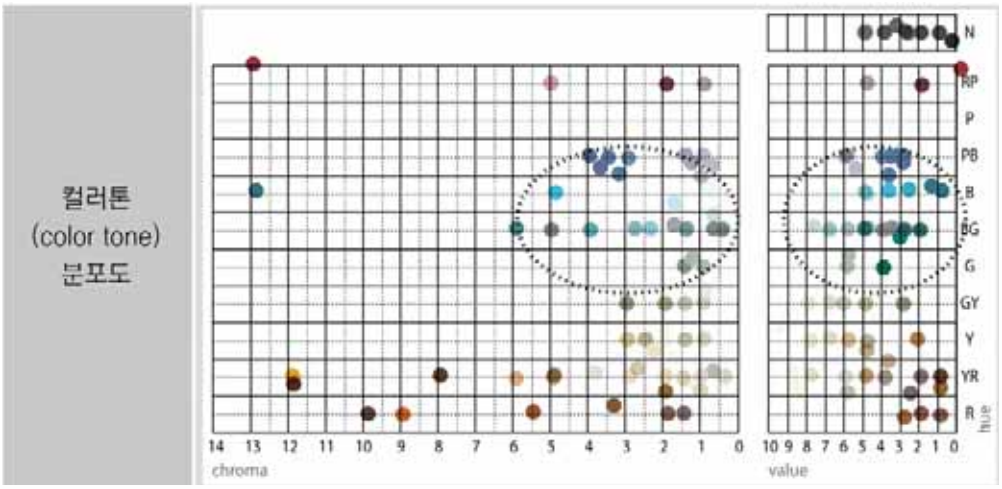

· 대부분 인공시설물로 1BG~6BG, 0.5BG~6BG, 1PB~4PB계열의 색채와 R, YR의 색채가 분포됨

· 중명도, 중~고채도의 한색계열의 색채가 주를 이루나 난색계열의 색채도 분포함

경관특성

· 반월구가산업단지가 위치하여 산업도시로서의 안산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 가로 색채를 정비하여 밝고 활기찬 도시환경 조성

색채경관 현황

[원경]

· 건물전체를 화려한 원색으로 도장한 건물이나 지붕의 색채로 화려한 블루가 적용되는 등 눈에 띄는 전망경관 요소가 많음

[근경]

· 근거리 시점에서 색채의 연속성 단절과 무거운 톤의 색채배합이 산업가로의 노후된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음

색채경관형성에 대한 사고

· 초록이나 파랑의 계열색과 황토와 갈색 계열의 색을 혼합하여 같이 사용하는 것이 계절에 따른 소외감이나 적막감을 줄임

· 공단의 큰 구역에 따라 색상을 차등 배색하여 색상의 변화에 포인트를 줄 수 있으며 경계가 되는 건물은 주목성과 포인트 효과로서 강조색상과 슈퍼그래픽을 사용가능

산업단지 색채계획시 4가지 고려요소

[1. 구조물에 대한 특성]

· 공단을 구성하는 구조물의 원재료 우선 점검

· 도색이 필요한 구조물 : 조립식 패널 혹은 콘크리트 재료의 경우 내구성을 고려한 도색이 이루어지도록 함

· 도색의 효과가 없는 구조물 : 제작 성형단계에서 원재료의 색채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금속이나 유리외장 마감도 고려하여야 함

[2. 공단 내 입주하는 건축물의 규모]

· 발전소, 굴뚝 등 대규모 건축물이나 구조물은 주변보다 주목성이 높으므로 지역의 색상 이미지를 좌우 할 수 있음

· 대규모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주조색은 주변과의 색채조화성을 기반으로 하되 강조색상 배색과 슈퍼그래픽 등을 도입할 수 있음

[3. 주변 지역과의 조화관계]

· 주변에 대단위 시가지 지역이 형성되어 있거나 산, 하천 등의 자연경관과 접하는 지역은 주변과의 조화성이 최우선이 되어야 함

· 특히 아파트나 주거지역이 인접한 경우 생활지의 안정을 고려하여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이질적인 색상사용을 자제토록 함

[4. 입주기업의 주요 생산품]

· 색채를 이용해 금속, 섬유, 제조 등 공단의 주요 생산품에 따른 기업이미지 전달이 가능하며, 단지 내 주요 생산품이 분포하는 블록에 따라 색채에 의한 조닝구분도 가능할 것임

사용 가능색의 범위

【표 46】 권장색채 범위

구 분	색 상	명 도	채 도
주 조 색	0YR~5.1GY	4이상 8.5미만일 경우	4이하
	기타	4이상 8.5미만일 경우	3이하
보 조 색	0YR~5.1GY	-	3이하
	기타	-	3이하
강 조 색	0YR~5.1GY	6이상 8미만일 경우	6이상 10이하
	기타	6이상 7미만일 경우	8이상 10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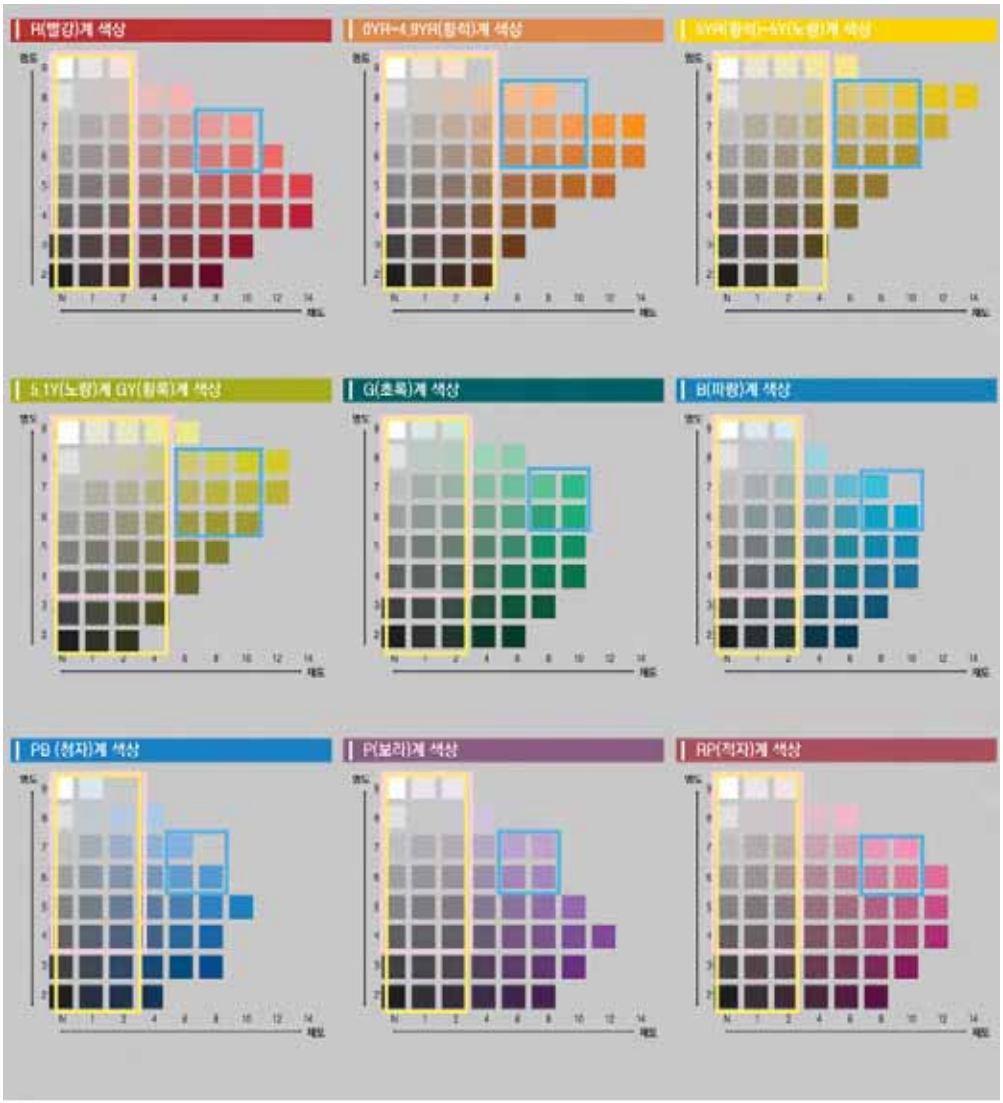

주 조 색	구조물 및 건축물의 바탕색, 시설물 및 바닥재의 기본색 등 가장 많은 부분과 면적에 쓰이는 색
보 조 색	구조물 및 시설물의 20~30% 사용되는 색으로 주조색과 조화를 이룰수 있는 색
강 조 색	장소성 및 기능성을 부각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5%이내의 색

제4권역 : 시화호 연안경관권

현장조사를 통한 색채 추출

색채계 분포도

추출된 색체계의 컬러톤(Color Tone)별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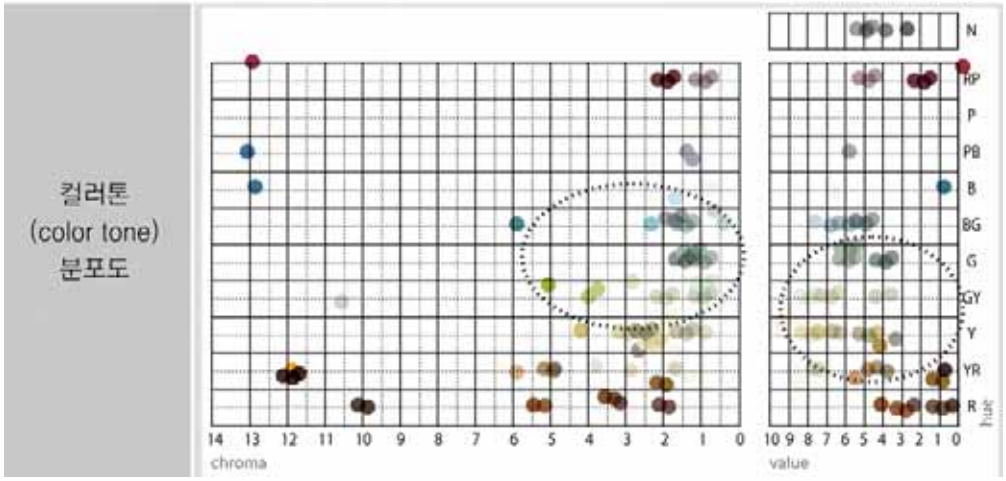

· 대부분 인공시설물로 1GY~6BG, 0.5BG~2BG 계열의 색채와 Y, YR의 색채가 분포됨

· 중명도, 중~고채도와 자연을 배경으로 하는 저채도의 색채가 분포됨

경관특성

· 시화방조제 건설로 만들어진 인공호수지역으로 환경과 조화하는 경관관리를 유도하고 있으며, 새롭게 건설되는 개발사업지가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친수자연도시를 지향함

색채경관 현황

[원경]

· 개발계획 추진시 주변 녹지와 시화호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환경색을 사용하 여 자연 친화형 그린시티 조성

[근경]

· 시화호 주변으로 개발단지의 차별성과 조화성을 고려하여 수변 및 복합테마단지로 수변의 매력을 발산하는 주요 공간을 조성

색채경관형성에 대한 사고

· 수변경관에 어울리는 확산력을 느끼게 하는 밝은 저명도, 저채도색을 기조로 함

· 수변이나 수상으로부터의 시점을 배려하여 중채도, 저채도의 색채를 사용함

· 스카이라인 조성시 자연의 색채가 선명하게 느껴지도록 채도를 낮춘 색채사용

사용 가능색의 범위

【표 46】 권장색채 범위

구 분	색 상	명 도	채 도
주 조 색	0R~4.9YR	4이상 8.5미만일 경우	4이하
		8.5이상인 경우	1.5이하
	5YR~5Y	4이상 8.5미만일 경우	4이하
		8.5이상인 경우	2이하
보 조 색	5YR~5Y	–	4이하
강 조 색	0R~4.9YR	–	4이하
	5YR~5Y		6이하

제5권역 : 대부도 해양경관권

현장조사를 통한 색채 추출

색채계 분포도

추출된 색체계의 컬러톤(Color Tone)별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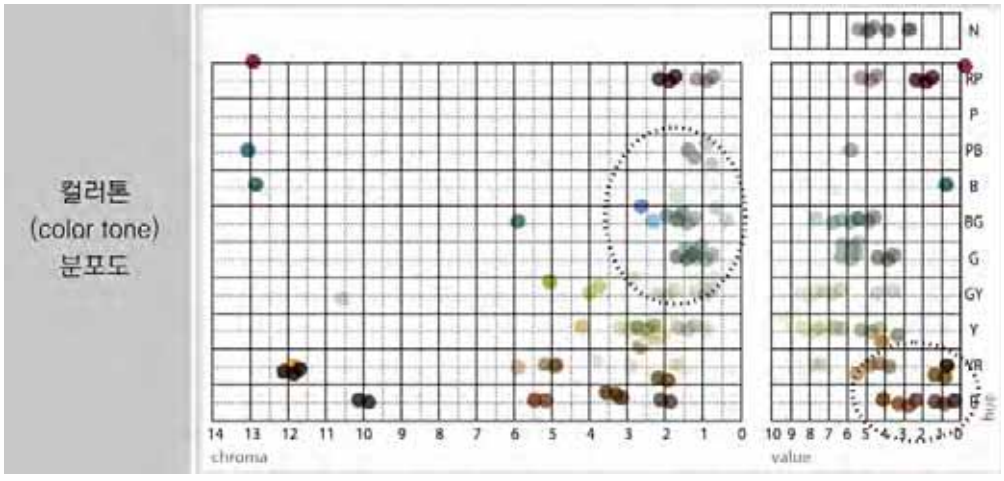

· 자연을 배경으로 1Y~3Y, 1G~2G, 0.5BG~3BG 계열의 색채와 Y, YR의 색채가 분포됨

· 중명도, 중~고채도의 지형 색채와 저~중채도의 바다와 하늘의 색채가 분포함

경관특성

· 대부도지역의 활동형 해안경관과 자연형 해안경관을 조화롭게 개발 및 정비를 유도하여 서해의 대표적인 해안관광지로 조성하고자 함

색채경관 현황

[원경]

· 해양경관 형성지역으로 자연친화적 경관색채가 중심이 됨

[근경]

· 관광지역의 특성을 살린 다채로운 색상이 사용되고 있으나 일관성이 떨어지며 고채도, 고명도의 색채사용이 수려한 대부도의 자연경관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함

색채경관형성에 대한 사고

· 해양축을 따라 밝은 저명도 색채를 사용하여 관광지의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함

· 용도별로 색채계획을 수립하여 관광단지의 정체성을 제고함

· 강조색은 그 면적을 전체면적의 5% 이내로 사용하며 주조색의 유사색으로 구성하여 통일감을 부여함

사용 가능색의 범위

【표 46】 권장색채 범위

구 분	색 상	명 도	채 도
주 조 색	5YR~5YG	4이상 9미만일 경우	4이하
보 조 색	5YR~5Y	2이상 9미만일 경우	2이하
강 조 색	0YR~5YG 5B~5PB	4이상 6미만일 경우	6이하

주 조 색	구조물 및 건축물의 바탕색, 시설물 및 바닥재의 기본색 등 가장 많은 부분과 면적에 쓰이는 색
보 조 색	구조물 및 시설물의 20~30% 사용되는 색으로 주조색과 조화를 이룰수 있는 색
강 조 색	장소성 및 기능성을 부각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5%이내의 색

6장 야간경관

1. 기본방향 및 원칙

기본방향

본 가이드라인은 안산시의 아름다운 미래 야간경관 창출을 통해 도시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부각시켜 안산다움을 발굴하고, 품격있고 기능적인 야간경관의 종합적인 연출 계획을 가능하도록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기본원칙

디자인 기본원칙		주요내용
Green Design	친환경적 야간경관	◦ 빛 공해의 최소화, 에너지 세이빙 및 친환경성 야간경관을 조성
CPTED Design	안전한 야간경관	◦ 상해요소와 장애물 및 범죄로부터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
Universal Design	공공성 높은 야간경관	◦ 다계층의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야간활동 환경을 조성
Better Design	정체성 높은 야간경관	◦ 야간조명연출을 통한 안산시만의 개성있는 경관 창출을 유도

가이드라인 외 법규 및 규정

- 구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구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구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건축기본법
- 건축법
- 건축법 시행령
- 건축법 시행규칙
-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 안산시 기본경관계획
- 안산시 경관조례
- 경기도 경관계획
- 경기도 경관조례

현황분석 및 개선방향

현황분석

보행안전성을 보호하지 못하는 빛 부족

- 공원 및 녹지 주변, 이면가로 등 야간 보행자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조명 미확보

다른 도시와 차별화 된 상징적 경관부족

- 도시 이미지 특성화 요소의 부재로 안산시를 상징하는 야간경관 연출계획이 부족하며 야간경관문화의 정체성 미약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지 못한 무분별한 경관형성

- 체계화 되지 않은 밝기와 무분별한 조명연출로 빛공해 및 조화로운 야경 저해

공원, 이면가로 등 보행자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빛 부족

차별화된 야간 랜드마크 형성개발이 요구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야간경관 형성 요구

개선방향

안산시만의 야간경관 정체성 확립

- 안산을 상징하는 야간경관 연출을 통해 도시 야간경관문화의 정체성 발굴

보행자를 고려한 빛 환경 조성

- 보안등, 가로등, 공원등의 확충으로 범죄예방, 보행자의 안전한 이동환경 마련

야간경관 관광을 활성화를 위한 보행루트 개발

- 상업 및 관광지 등 야간랜드마크 지역을 중심으로 특성화된 야간 볼거리 조성 및 야간경관 보행 루트 개발

야간경관 컨셉 기본방향

2. 적용지침

적용원칙

· 본 가이드라인은 안산시 행정관할구역 내 야간경관의 체계적인 계획을 위한 기본방향과 원칙적 측면을 다룸

· '안산시 기본경관계획' 상의 권역 및 구역별 야간경관 형성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의 4가지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특성화한 지침들을 분류하여 적용

· 구체적인 사안별 적용 수준과 예외사항 처리 등은 안산시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통하여 결정함

적용대상

· 본 가이드라인은 안산의 야간경관 관련사업 시행시 해당권역 및 구역의 성격에 따라 반영해야 하는 일반가이드와 디자인 원칙 및 대상에 따른 세부가이드로 나뉘어 제시함

· **일반가이드**는 안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관권역과 안산의 안산의 미래경관을 형성, 보전, 관리하는 경관중점관리구역별로 제시되며, 대상지역이 중복되는 지역은 경관중점관리구역 지침을 우선으로 따름

안산시 전역 – 경관권역(전원내륙경관권, 시가지경관권, 반월산업경관권, 시화호연안경관권, 대부해양경관권)별 야간경관형성의 기본방향 제시

경관중점관리구역 – 도심경관권, 구릉지경관권, 철도경관축, 하천경관축, 연안경관축, 문화거점별 야간경관 일반가이드 제시

· **세부가이드**는 안산시 경관디자인 가이드의 4가지 원칙에 따라 조명대상별 세부 지침을 제시하여 대상에 따른 야간경관 특성화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지침으로서 경관중점관리구역의 경우 해당 성격에 따라 적극 고려하도록 권장함

* 조도에 의한 규정은 국제조명위원회(CIE), 한국산업규격(KS)의 기준을 따르며 강제성의 유·무 와 무관하게 모든 규정은 디자인 심의, 자문, 발주, 실행, 유지관리시 고려사항으로 규정

적용대상 및 구성체계

· 다음 표에 기입된 해당 지구 권역별 분류에 따라 야간경관계획 및 설계 시 적용 가이드라인을 고려함

경관권역별 일반가이드	
	전원내륙 경관권
	시가지 경관권
	반월산업 경관권
	시화호연안 경관권
	대부도해양 경관권

경관중점 관리구역별 일반가이드	
도심경관권	가로 및 광장/ 건축물
구릉지경관권	구릉지 및 공원
철도경관축	도시구조물
하천경관축	수변공간
연안경관축	연안공간
문화거점	역사문화거점/ 지표문화거점

← 참조

← **적극 고려**

디자인원칙/대상별 세부가이드		적용구분						비고
		도심 경관권	구릉지 경관권	철도 경관축	하천 경관축	연안 경관축	문화 거점	
Green Design	가. 공원, 녹지		○	○	○	○		
	나. 관광·유적지						○	
	다. 수변공간				○	○		
	라. 친환경 에너지 기구	○	○	○	○	○	○	
CPTED Design	가. 주요시가지 도로	○			○	○		
	나. 스쿨존	○			○	○		
	다. 보안등 계획	○	○	○	○	○	○	
Universal Design	가. 보행전용가로	○		○		○		
	나. 자전거도로	○	○	○	○	○		
Better Design	가. 상업·업무가로	○						
	나. 광 장	○						
	다. 도시 구조물	○		○	○			
	라. 가로등	○	○	○	○	○	○	

※ 본 야간경관 가이드의 적용기준은 국제조명위원회(CIE-International Commission on Illumination) 및 한국 산업규격(KS)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적용방식은 도로의 폭을 기준으로 용도지역 특성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한다. 가이드라인 적용기준과 상위 기술규정인 CIE, KS와의 규정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시에는 상위 기술기준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도심경관권 경관중점관리구역

가이드라인 구분			가이드 적용여부					비고
Green Design	G-라	친환경 에너지 기구	권장	G-라-01	G-라-02			
			적용여부					
CPTED Design	C-가	주요 시가지 도로	의무	C-가-01				
			적용여부					
			권장	C-가-02	C-가-03			
			적용여부					
	C-나	스쿨존	권장	C-나-01	C-나-02			
			적용여부					
	C-다	보안등 계획	의무	C-다-01				
			적용여부					
			권장	C-다-02	C-다-03	C-다-04		
			적용여부					
Universal Design	U-가	보행전용가로	권장	U-가-01	U-가-02			
			적용여부					
	U-나	자전거도로	권장	U-나-01	U-나-02			
			적용여부					
Better Design	B-가	상업·업무가로	권장	B-가-01	B-가-02	B-가-03	B-가-04	
			적용여부					
	B-나	광장	권장	B-나-01	B-나-02	B-나-03	B-나-04	
			적용여부					
	B-다	도시 구조물	권장	B-다-01	B-다-02	B-다-03	B-다-04	
			적용여부					
	B-라	가로등	권장	B-라-01	B-라-02	B-라-03	B-라-04	
			적용여부					

평가 : 적극고려 → ○, 부분고려 → △, 반영불가 → x, 해당사항 없음

※ 1. 항목별 세부내용 및 적용대상 구분은 가이드라인 내용을 참조하여 계획

※ 2. 가이드라인 항목별 적용여부를 [적극고려 → ○, 부분고려 → △, 반영불가 → ×,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한다.

※ 3. 작성시 [부분고려 → △, 반영불가 → ×]에 해당하는 경우 비고란 혹은 첨부자료를 통해 해당사유를 기재한다.

위치 : *규모 :*	*건축주 :* *설계자 :*

메모란

구릉지경관권 경관중점관리구역

가이드라인 구분			가이드 적용여부					비고
Green Design	G-가	공원, 녹지	의무	G-가-01				
			적용여부					
			권장	G-가-02	G-가-03	G-가-04		
			적용여부					
	G-라	친환경 에너지 기구	권장	G-라-01	G-라-02			
			적용여부					
CPTED Design	C-다	보안등 계획	의무	C-다-01				
			적용여부					
			권장	C-다-02	C-다-03	C-다-04		
			적용여부					
Universal Design	U-나	자전거도로	권장	U-나-01	U-나-02			
			적용여부					
Better Design	B-라	가로등	권장	B-라-01	B-라-02	B-라-03	B-라-04	
			적용여부					

평가 : 적극고려 → ○, 부분고려 → △, 반영불가 → x, 해당사항 없음

※ 1. 항목별 세부내용 및 적용대상 구분은 가이드라인 내용을 참조하여 계획

※ 2. 가이드라인 항목별 적용여부를 [적극고려 → ○, 부분고려 → △, 반영불가 → ×,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한다.

※ 3. 작성시 [부분고려 → △, 반영불가 → ×]에 해당하는 경우 비고란 혹은 첨부자료를 통해 해당사유를 기재한다.

위치 : *규모 :*	*건축주 :* *설계자 :*

메모란

철도경관축 경관중점관리구역

가이드라인 구분			가이드 적용여부					비고
Green Design	G-가	공원, 녹지	의무	G-가-01				
			적용여부					
			권장	G-가-02	G-가-03	G-가-04		
			적용여부					
	G-라	친환경 에너지 기구	권장	G-라-01	G-라-02			
			적용여부					
CPTED Design	C-다	보안등 계획	의무	C-다-01				
			적용여부					
			권장	C-다-02	C-다-03	C-다-04		
			적용여부					
Universal Design	U-가	보행전용가로	권장	U-가-01	U-가-02			
			적용여부					
	U-나	자전거도로	권장	U-나-01	U-나-02			
			적용여부					
Better Design	B-다	도시 구조물	권장	B-다-01	B-다-02	B-다-03	B-다-04	
			적용여부					
	B-라	가로등	권장	B-라-01	B-라-02	B-라-03	B-라-04	
			적용여부					

평가 : 적극고려 → ○, 부분고려 → △, 반영불가 → x, 해당사항 없음

※ 1. 항목별 세부내용 및 적용대상 구분은 가이드라인 내용을 참조하여 계획

※ 2. 가이드라인 항목별 적용여부를 [적극고려 → ○, 부분고려 → △, 반영불가 → ×,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한다.

※ 3. 작성시 [부분고려 → △, 반영불가 → ×]에 해당하는 경우 비고란 혹은 첨부자료를 통해 해당사유를 기재한다.

위치 : *규모 :*	*건축주 :* *설계자 :*

메모란

하천경관축 경관중점관리구역

가이드라인 구분			가이드 적용여부						비고
Green Design	G-가	공원, 녹지	의무	G-가-01					
			적용여부						
			권장	G-가-02	G-가-03	G-가-04			
			적용여부						
	G-다	수변공간	권장	G-다-01	G-다-02	G-다-03	G-다-04	G-다-05	
			적용여부						
	G-라	친환경 에너지 기구	권장	G-라-01	G-라-02				
			적용여부						
CPTED Design	C-가	주요 시가지 도로	의무	C-가-01					
			적용여부						
			권장	C-가-02	C-가-03				
			적용여부						
	C-나	스쿨존	권장	C-나-01	C-나-02				
			적용여부						
	C-다	보안등 계획	의무	C-다-01					
			적용여부						
			권장	C-다-02	C-다-03	C-다-04			
			적용여부						
Universal Design	U-나	자전거도로	권장	U-나-01	U-나-02				
			적용여부						
Better Design	B-다	도시 구조물	권장	B-다-01	B-다-02	B-다-03	B-다-04		
			적용여부						
	B-라	가로등	권장	B-라-01	B-라-02	B-라-03	B-라-04		
			적용여부						

평가 : 적극고려 → ○, 부분고려 → △, 반영불가 → x, 해당사항 없음

※ 1. 항목별 세부내용 및 적용대상 구분은 가이드라인 내용을 참조하여 계획

※ 2. 가이드라인 항목별 적용여부를 [적극고려 → ○, 부분고려 → △, 반영불가 → ×,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한다.

※ 3. 작성시 [부분고려 → △, 반영불가 → ×]에 해당하는 경우 비고란 혹은 첨부자료를 통해 해당사유를 기재한다.

위치 : *규모 :*	*건축주 :* *설계자 :*

메모란

연안경관축 경관중점관리구역

가이드라인 구분			가이드 적용여부						비고
Green Design	G-가	공원, 녹지	의무	G-가-01					
			적용여부						
			권장	G-가-02	G-가-03	G-가-04			
			적용여부						
	G-다	수변공간	권장	G-다-01	G-다-02	G-다-03	G-다-04	G-다-05	
			적용여부						
	G-라	친환경 에너지 기구	권장	G-라-01	G-라-02				
			적용여부						
CPTED Design	C-가	주요 시가지 도로	의무	C-가-01					
			적용여부						
			권장	C-가-02	C-가-03				
			적용여부						
	C-나	스쿨존	권장	C-나-01	C-나-02				
			적용여부						
	C-다	보안등 계획	의무	C-다-01					
			적용여부						
			권장	C-다-02	C-다-03	C-다-04			
			적용여부						
Universal Design	U-가	보행전용가로	권장	U-가-01	U-가-02				
			적용여부						
	U-나	자전거도로	권장	U-나-01	U-나-02				
			적용여부						
Better Design	B-라	가로등	권장	B-라-01	B-라-02	B-라-03	B-라-04		
			적용여부						

평가 : 적극고려 → ○, 부분고려 → △, 반영불가 → x, 해당사항 없음

※ 1. 항목별 세부내용 및 적용대상 구분은 가이드라인 내용을 참조하여 계획

※ 2. 가이드라인 항목별 적용여부를 [적극고려 → ○, 부분고려 → △, 반영불가 → ×,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한다.

※ 3. 작성시 [부분고려 → △, 반영불가 → ×]에 해당하는 경우 비고란 혹은 첨부자료를 통해 해당사유를 기재한다.

위치 : *규모 :*	*건축주 :* *설계자 :*

메모란

문화거점 경관중점관리구역

가이드라인 구분			가이드 적용여부					비고
Green Design	G-나	관광·유적지	권장	G-나-01	G-나-012			
			적용여부					
	G-라	친환경 에너지 기구	권장	G-라-01	G-라-02			
			적용여부					
CPTED Design	C-다	보안등 계획	의무	C-다-01				
			적용여부					
			권장	C-다-02	C-다-03	C-다-04		
			적용여부					
Better Design	B-라	가로등	권장	B-라-01	B-라-02	B-라-03	B-라-04	
			적용여부					

평가 : 적극고려 → ○, 부분고려 → △, 반영불가 → x, 해당사항 없음

※ 1. 항목별 세부내용 및 적용대상 구분은 가이드라인 내용을 참조하여 계획

※ 2. 가이드라인 항목별 적용여부를 [적극고려 → ○, 부분고려 → △, 반영불가 → ×,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한다.

※ 3. 작성시 [부분고려 → △, 반영불가 → ×]에 해당하는 경우 비고란 혹은 첨부자료를 통해 해당사유를 기재한다.

위치 : *규모 :*	*건축주 :* *설계자 :*

메모란

3. 야간경관 일반가이드

3-1 경관권역별 야간경관 일반가이드

· 권역에 따른 용도별 구분으로 각지구가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야간경관의 지침을 제공하여 쾌적성, 일관성, 연결성 있는 안산시 야간경관을 연출한다.

· 자연 · 안전 · 공공 · 미래가 조화를 이루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안산의 야간경관” 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설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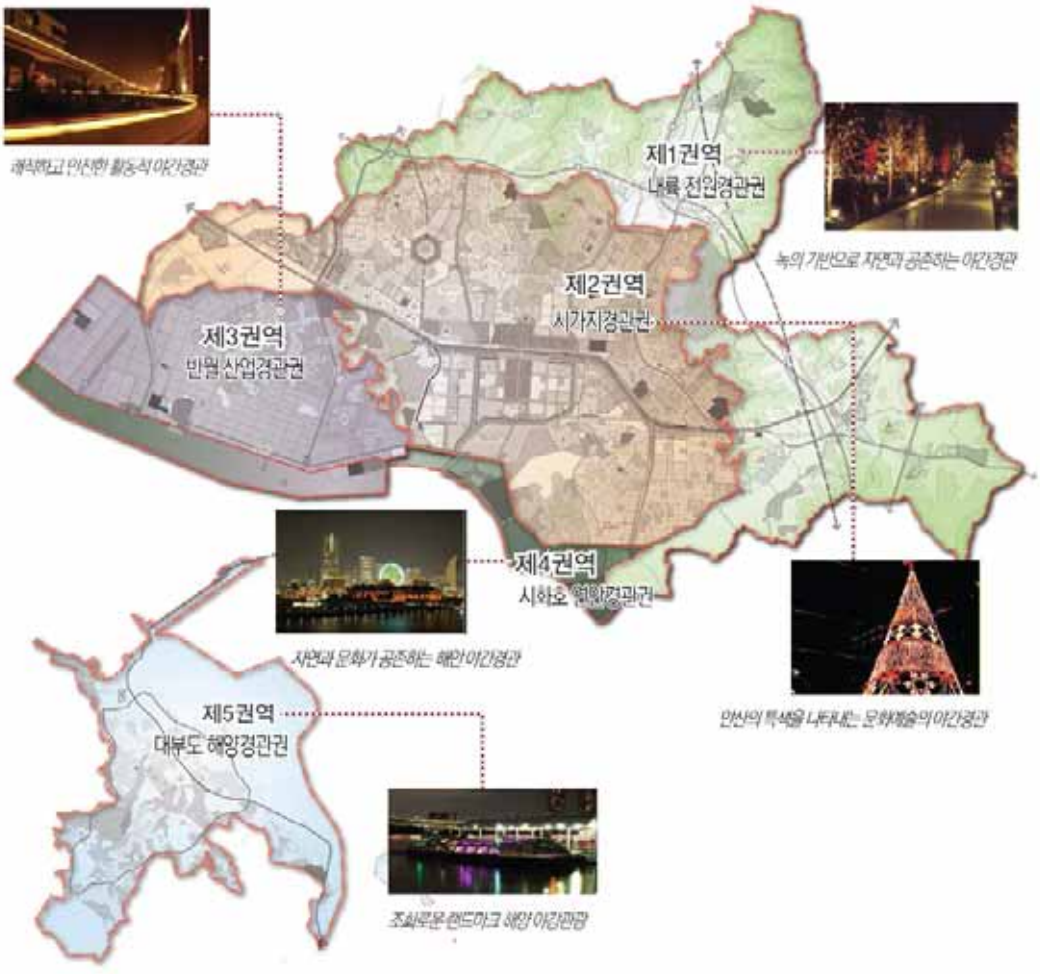

안산시의 권역지구에 따른 구역 설정기준

구역설정		권역지구	야간경관의 기본방향
보전	제1권역	내륙 전원경관권	녹의 기반으로 자연과 공존하는 야간경관
정비	제2권역	시가지경관권	안산의 특색을 나타내는 문화예술의 야간경관
	제3권역	반월 산업경관권	쾌적하고 안전한 활동적 야간경관
형성	제4권역	시화호 연안경관권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해안 야간경관
	제5권역	대부도 해양경관권	조화로운 랜드마크 해양 야간관광

가. 전원내륙 경관권

녹지지역의 야간경관은 대부분 도로가 주요 조망축이 되며, 도로축을 따르는 가로등과 평야, 산림의 실루엣이 주요 야간 경관의 조망 요소가 된다.

· 인공적인 빛의 느낌을 지양하고 자연경관을 고려하여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은은한 조명으로 연출한다.

· 명암 대비가 뚜렷한 지형 특성을 활용하여 주요 야경 연출대상의 랜드마크성, 인지성 향상을 도모한다.

·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도를 유지하고 야간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야간조명을 유도한다.

· 조명 연출시간, 시기를 조절하여 야생 동식물의 서식환경 및 수목 · 농작물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 생태계를 배려하는 친환경 야간경관 연출

나. 시가지 경관권

상업지역의 숙박, 유흥업소 등 현란한 간판조명과 건축물 외벽조명으로 인해 도시 전체의 야간경관을 저해하고 있다.

· 과도한 조명의 억제, 가로의 연속적인 조명연출으로 집중 · 제어를 통한 안산시만의 차별화된 야간경관 이미지를 연출한다.

· 주요 시가지는 높이와 규모를 고려한 랜드마크 요소로서 조명연출을 계획한다.

· 주변 분위기에 어울리며 조형미를 살리는 부드러운 빛을 연출한다.

· 야간의 안전과 쾌적성을 우선시 한 조명연출 인지성 향상을 도모한다.

▶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랜드마크형 야경연출

다. 반월산업 경관권

대형 공장, 굴뚝 등의 산업시설물에 대한 기능적 조명 연출 부족하여 야간경관 및 야경 스카이라인 형성에 장애요소로 경관을 저해한다.

· 야간 물류 이동을 배려한 기능적 도로조명 연출을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한다.

· 대형공장, 굴뚝 등의 산업시설물에 대해서는 상징형 조명연출을 통해 야간 도시골격의 인지성을 확보한다.

· 산업지내 자전거도로 및 보행로의 체계화된 조도 수립으로 쾌적한 야간경관을 형성한다.

· 산업지 내 기업의 참여적 야간경관 개선·정비를 유도한다.

▶ 쾌적성을 높이는 야경연출

라. 시화호연안 경관권

시화호 경관권은 자연과 도시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으로 새로운 도시문화지역의 경관창출과 더불어 생태와 공생하는 야간경관이 요구된다.

· 시화호 수변축의 연속적인 경관과 선적 리듬감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조명을 연출한다.

· 빛의 스카이라인을 형성하여 내외부 조망시 다양성을 제공하는 수변부 야간경관을 연출한다.

·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도를 유지하고 양호한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야간경관 연출을 유도한다.

· 주요 시가지는 높이와 규모를 고려한 랜드마크 요소로서 조명 연출을 계획한다.

▶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야간경관 연출

마. 대부도해양 경관권

자연친화적인 섬의 야간경관과 시화 간척지, 방조제를 활용한 랜드마크 조망거점을 형성하여 해양관광도시의 특성화된 야간경관 요소 설정이 요구된다.

· 해안변 야간경관 조성 및 빛 정비를 통해 유원지, 공원등과 연계한 자연친화적 해양 야간경관을 조성한다.

· 시화호 방조제, 조력발전소를 활용하여 야간경관 랜드마크 조망거점을 형성한다.

· 황금산 구릉지형과 섬 해안지형을 부각하는 자연친화적 야간경관계획 조성한다.

· 대부황금로를 중심으로 공원-녹지, 수변-공원 등 주요 연결 가능한 랜드 마크에 대한 이용자 측면의 연속적 야간경관 흐름을 형성한다.

▶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지천의 조화로운 야간경관 연출

3-2 경관중점관리구역별 일반가이드

· 안산의 미래경관을 형성, 보전, 관리하는 경관중점관리구역을 중심으로 대상지 특성에 따른 계획지침을 제시하여 특징있는 야간경관 체계를 유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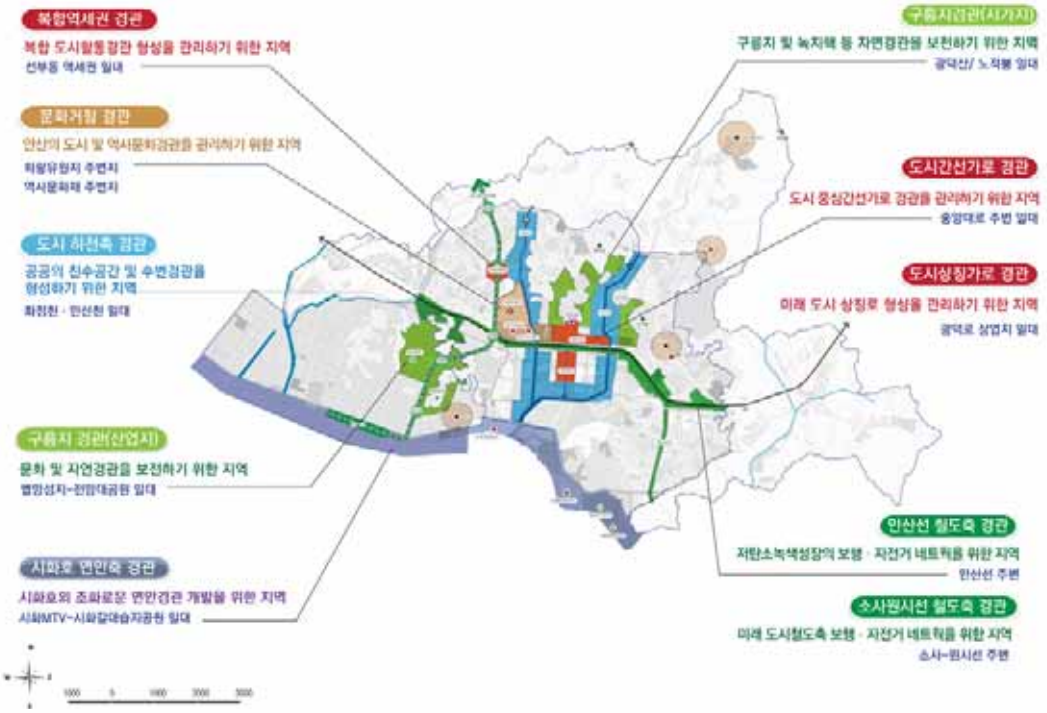

경관중점관리구역 및 설정기준

경관중점관리구역		설정사유	기 준
도심경관권	선부동 복합역세권	◦복합 도시활동경관 형성을 관리하기 위한 지역	◦상징광장, 가로변 상업용도의 연속블럭 전체대상
	광덕대로 도시상징가로	◦미래 도시상징로 형성을 관리하기 위한 지역	
	중앙대로 도시간선가로	◦도시 주요간선가로 경관관리를 위한 지역	
구릉지경관권	광덕산 및 노적봉	◦구릉지 및 녹지핵 등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지역	◦표고 50m 구릉지경계로부터 약 500m 내외 블럭 대상
	원시공원	◦문화 및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지역	
철도축	안산선/ 소사~원시선	◦저탄소녹색성장의 보행 · 자전거 녹색 네트워을 위한 지역	◦철도변 녹지경계 및 주요도로에 연접한 블럭 대상
하천축	화정천/ 안산천	◦공공의 친수공간 및 수변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지역	◦법정 하천경계로부터 100m 내외블럭 대상
연안축	시화호	◦시화호의 조화로운 연안경관 개발을 위한 지역	◦연안경계로부터 500m 내외 블럭 대상
문화거점	역사문화적 경관거점	◦안산읍성, 이익선생묘, 별망성지 등 문화재 경관을 정비하기 위한 지역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100m 내외 블럭 대상
	지표문화적 경관거점	◦도시 랜드마크 경관을 관리하기 위한 지역	◦미술관, 스타디움, 돔구장(예정지) 등 연접지 대상

가. 도심경관권 조명연출 가이드

가로 및 광장 조명연출 기본방침

※ 기본원칙 : 야간경관 가이드 CPTED Design, Universal Design 일반지침 규정을 따른다.

- 기능성 – 안전성 및 쾌적성을 제공하는 야간경관 연출 여부
- 목적성 – 장소특성에 따른 이용목적을 차별화한 조명연출로 얻을 수 있는 효과의 명확성 여부

· 가로, 광장 등의 조도는 KS 조도기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조명설치구역의 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각 구역의 분위기 및 경관특성에 따라 음영의 균형미를 고려한 조도 연출

· 이용자 레벨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조명의 사용으로 인해 불쾌감을 주는 조명연출 지양한다.

▶ 수평면 및 연직면 조도를 고려하여 보행자의 안정성 및 시야 내에 대상물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

· 활력있는 야간경관 조성을 위한 이벤트 조명 연출 권장한다.

▶ 지속적인 이벤트 조명프로그램 계획을 통해 도시의 야간커뮤니티 활성화 도모

광장, 거리 조명연출 사례

상업건축물 조명연출 기본방침

※ 기본원칙 : 야간경관 가이드 CPTED Design, Universal Design 일반지침 규정을 따른다.

◦ 기능성 – 입체감과 심미성을 강조하여 인지성을 높이는 야간경관 연출 여부

◦ 목적성 – 건축물의 용도와 특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을 고려한 명확한 방향설정 여부

· 국제조명위원회 경관조명밝기기준(CIE Pub No.94) 및 환경을 고려한 경관조명 적정밝기기준(CIE 150:2003)을 참조하여 계획한다.

· 조명을 계획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특성이나 나타내려는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연출방법 선정한다.

▶ 조명의 방법, 마감재의 질감과 색, 사람의 시선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한 연출

· 특색있는 야간경관문화 형성을 위한 독창적인 연출계획 권장한다.

▶ 단순한 건축물의 개념이 아닌 도시의 랜드마크 형성을 위한 연출

· 과도한 조명의 사용이나 기교로 인한 조잡한 야간경관 형성 지양한다.

▶ 과도한 빛의 연출로 인해 주변 도시환경에 빛 공해, 눈부심 등의 영향이 없도록 계획

건축물 조명연출 사례

보행전용가로

Universal Design

보행로 중 쉼터 공간은 휴먼스케일을 고려하여 낮은 조도를 유지함

· 간접조명방식의 가로등을 설치하여 눈부심 발생을 저감시킨다.

·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도록 바닥 매입 조명을 권장한다.

· 아케이드 등 가로 내 설치시설을 이용한 조명연출로 보행자의 흐름을 유도하도록 한다.

· 보행량이 많은 특화가로의 경우 건축물과 일체화된 조명연출로 빛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상업가로

CPTED Design

지구 내에 어두운 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야간 보행공간을 조성함

· 장식조명과 쇼윈도 조명을 활용하여 특색있는 야간 보행로를 조성한다.

· 균일한 조도를 확보하고 광원을 낮게 배치하여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한다.

· 지나친 눈부심과 광공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통행과 다른 시설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이벤트 광장

Better Design

컬러 변화에 따른 리드미컬한 조명·주변과 조화되는 이벤트 조명·이용자 참여형 이벤트 조명 제시

- 바닥 패턴조명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색상 변화로 활기찬 보행공간 연출을 권장한다.
- 도시적 차원에서의 커뮤니티 형성을 위해 일상적이며 참여가능한 이벤트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 비상설 예술적 조명전시를 통해 도시 명소화의 중심공간이 되도록 한다.
- 축제의 성격에 부합하는 역동적인 효과를 유도하되, 강한 원색 사용을 제한한다.

Better Design

상업건축물

- 상업 건축물에 있어서 경관조명은 흥미감이나 관심을 모으는 매력을 부여하여 친밀감을 향상시키고 시각적 즐거움을 주어야 한다.
- 상업지역 건축물에 한하여 메시지 전달의 역할을 하는 미디어 파사드의 도입으로 즐거움과 정보 제공을 권장한다.
- 미적 완성도와 조화로운 색조분포 등 독창적인 디자인을 활용하여 주간과는 다른 새로운 조형미를 창출하도록 권장한다.
- 신소재를 이용한 빛의 색상 표현 및 건축의 형태나 재료와 연계되는 다양한 조명방식을 고려하도록 한다.

나. 구릉지 경관권 조명연출 가이드

공원녹지 조명연출 기본방침

※ 기본원칙 : 야간경관 가이드 Green Design, CPTED Design 일반지침 규정을 따른다.

- 기능성 – 야간의 이용 안전성 및 쾌적성이 확보된 야간경관 연출 여부
- 목적성 – 주변 자연경관을 고려한 친환경 조명 연출 여부

· 스카이라인 조망 및 인지는 낮은 위치 지천 및 연접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구릉지를 주변으로 빛을 발하는 인공경관의 백그라운드, 어둠의 여백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 낮은 색온도의 야간경관을 계획한다.

· 자연친화적 소재 및 신재생에너지(풍력, 태양열등)의 단계별 등기구 적용으로 친환경 공간으로서 기능을 극대화한다.

▶ 생태환경 보호, 빛공해 유발 제한, 고수명 · 고효율 광원 사용

· 산책로 주변에는 유도등이나 보행등을 설치하여 공원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공원입구, 통로, 표지판은 충분한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 시인성을 높인다.

▶ 공원이용자의 안전한 보행을 확보하는 조명 계획

· 공원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상징적인 배치를 하되 적정한 조도를 유지하여 안전성을 높인다.

▶ 나무의 가지 등 조경요소를 고려하여 적정조도 유지하도록 조명시설 배치

구릉지, 공원 조명연출 사례

공원녹지

Green Design

습지대 및 생태적 보존지역을 통과할 경우, 최소한의 조명설치를 권장함

· 공원 내 주요 경관요소를 강조하는 조명을 연출하도록 한다.

· 공간 특성에 따라 적절한 높이의 공원등주 또는 볼라드 등을 사용한다.

· 주변환경에 따라 인근 시설물 및 수목을 활용한 조명을 연출하도록 한다.

다. 철도축 조명연출 가이드

도시 구조물 조명연출 기본방침

※ 기본원칙 : 야간경관 가이드 CPTED Design, Universal Design, Better Design 일반지침 규정을 따른다.

- 기능성 – 주행 안전성, 보행 쾌적성, 랜드마크성, 경제성, 조형성 확보 여부
- 목적성 – 도시의 골격을 형성하는 입체 가로망의 형태 부각 및 어두운 하부공간의 환경개선 여부

· 도시구조물은 대부분 주간경관 뿐만 아니라 야간경관에서도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지역경관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 측면을 고려하여 야간경관 계획을 수립한다.

· 도시의 랜드 마크 또는 주요 경관도로에서 시선이 집중하는 곳에 위치한 구조물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야간경관을 연출한다.

▶ 구조물의 규모, 주위의 환경, 주시장소 등에 따른 야간경관 연출 대상 선정

· 과도한 조명의 사용이나 기교로 인한 조잡한 야간경관 형성을 지양한다.

▶ 피 조명체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적합한 조명기법 연출

· 무분별한 색채 사용과 주변과 조화롭지 못한 디자인에 대해 규제한다.

▶ 주변의 건축물 조명, 도로 조명 및 주위 빛 환경을 고려하여 경관조명을 계획

도시구조물 조명연출 사례

Better Design

직접투광 방식

· 교량 구조물에 투광기를 직접 부착하여 연출한다.

· 교량 형태 및 특징을 부각시키는 연출방법으로 효과적이다.

· 연출대상 : 구조적 특수성을 지니며 랜드마크성이 강조되어야 하는 구조물에 설치를 권장한다.

CPTED Design

간접투광 방식

· 교량의 교각, 교량내부(실루엣), 난간에 간접적으로 설치한다.

· 은은한 교량 분위기 연출에 효과적이다.

· 연출대상 : 보행자의 안전성 및 쾌적성을 확보해야 하는 구조물에 설치를 권장한다.

Better Design

일루미네이션 (illumination)

· 장식을 목적으로 한 조명 방법이다.

· 교량의 형태를 연속적인 점 또는 선형으로 강조하는 연출방법에 적합하다.

· 연출대상 : 야간활동이 많은 공간(예:중심상업지 등)에 위치하며, 이벤트성이 강조되어야 하는 구조물에 설치를 권장한다.

Universal Design

상부 보행자 레벨

· 보도 조명의 경우 가급적 가로등의 사용을 지양하고 플랫빔(flat beam) 방식을 고려하여 안전성을 유도한다.

하부 주행자 레벨

· 주행자에게 시각 장해나 불쾌감을 주는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루버(louver)나 후드(hood)를 사용하여 구조물 하부로의 누설광을 차단한다.

라. 하천축 조명연출 가이드

수변공간 조명연출 가이드

※ 기본원칙 : 야간경관 가이드 Green Design, CPTED Design 일반지침 규정을 따른다.

◦ 기능성 – 야간의 이용 안전성 및 쾌적성이 확보된 야간경관 연출 여부

◦ 목적성 – 주변 자연경관을 고려한 친환경 조명 연출 여부

· 자연에 부속된 공간은 빛 간섭을 최소화 하는 친환경 조명계획을 수립하며, 주위의 환경과 조화되고 주간의 미관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한다.

· 공원-녹지, 수변-공원 등 주요 연결 가능한 랜드마크에 대한 이용자 측면의 야간경관 흐름을 형성한다.

▶ 아름다운 경관과 계절에 따라 자연을 감상할 수 있는 감성적, 입체적 공간 조명 연출 도입

· 이용자 동선을 고려하여 쾌적한 보행환경 제공에 적절한 조도를 확보한다.

▶ 오가는 보행자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기 위해 적당한 조도의 균일한 분포를 통한 야간 경관 조성

· 빛 공해 최소화 계획을 수립하여 생태계를 보호하는 친환경 조명 연출을 권장한다.

▶ 식물의 생장환경을 고려한 조명방향, 위치, 시간 제어 및 수목의 특성에 맞춘 조명기구 적용

수변,공원 조명연출 사례

Green Design

수목조명

· 줄지어 있는 수목에 생동감을 주기위해 효율, 수명, 연색성 등이 좋은 등기구 사용을 권장한다.

· 주변 공원 이용자에게 눈부심을 주지 않는 조명기구 설치 위치 및 방향을 계획한다.

Better Design

수경조명

· 물에 의한 과도한 빛의 확산을 억제하도록 연출한다.

· 기념일이나 행사기간에는 컬러필터를 활용하여 이벤트성을 연출한다.

Better Design

보도조명

· 공원의 보행동선을 고려하여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조명 연출을 권장한다.

· 공원 내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곳에 야간 이벤트 연출이 가능한 시설을 마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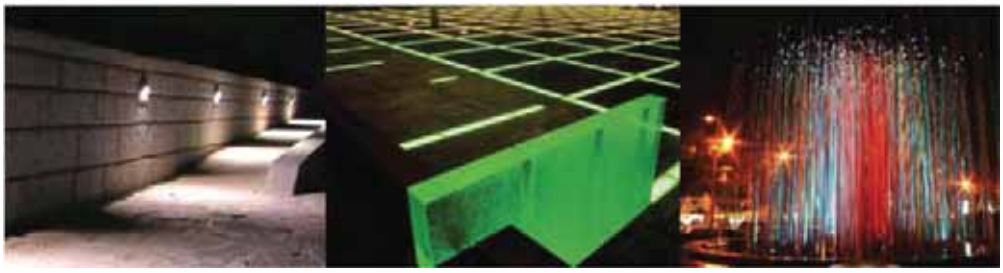

마. 연안축 조명연출 가이드

연안경관 조명연출 기본방침

※ 기본원칙 : 야간경관 가이드 Green Design, CPTED Design 일반지침 규정을 따른다.

◦ 기능성 – 야간의 이용 안전성 및 쾌적성이 확보된 야간경관 연출 여부

◦ 목적성 – 주변 자연경관을 고려한 친환경 조명 연출 여부

· 야간 산책 및 커뮤니티를 위한 경관계획을 활성화시켜 활동적 공간으로 계획한다.

· 연접건축물의 조명들이 수면에 반사되어 극적효과를 가지도록 권장한다.

· 중심수변공간에 안산의 이미지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스토리 형성을 권장한다.

· 수변축의 연속적인 경관과 선적 리듬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조명을 연출한다.

연안변 조명연출 사례

바. 문화거점 조명연출 가이드

역사문화거점 조명연출 기본방침

※ 기본원칙 : 야간경관 가이드 Green Design 일반지침 규정을 따른다.

◦ 기능성 – 야간의 이용 안전성 및 쾌적성이 확보된 야간경관 연출 여부

◦ 목적성 – 주변 자연경관을 고려한 친환경 조명 연출 여부

· 역사자원이 생동감 있는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주변 건축물은 은은한 빛으로 연출한다.

· 야간에 안산의 역사문화를 홍보하는 랜드마크로 활용한다.

· 야간경관조명으로 문화재의 랜드마크성을 강화하고 관광산업과 시너지를 높인다.

· 걸으면서 빛과 함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경관조명을 연출한다.

· 역사자원이 생동감 있는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주변 건축물은 은은한 빛으로 연출한다.

· 역사적 건축물에 설치된 경관조명과의 조화를 도모하여 역사자원을 알 수 있도록 한다.

역사지 조명연출 사례

지표문화거점 조명연출 기본방침

※ 기본원칙 : 야간경관 가이드 Green Design, Better Design, Universal Design 일반지침 규정을 따른다.

◦ 기능성 – 야간의 이용 안전성 및 쾌적성이 확보된 야간경관 연출 여부

◦ 목적성 – 주변 자연경관을 고려한 친환경 조명 연출 여부

· 랜드마크 건축물 조명 뿐 아니라 하부 공개공지, 보도 부분을 활용한 조명 예술작품 도입으로 명소화 · 관광자원화 계획을 수립한다.

· 친환경 기구를 적용하여 이용시민의 쾌적함과 친환경 및 녹색성장을 도모한다.

· 헤드 및 가로등주의 미려한 디자인,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색상 및 소재 사용한다.

· 이용자가 강한 휘도로 인한 눈부심과 화려한 색상으로 인한 눈의 피로감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게 계획한다.

· 야간운동, 산책에 안전 및 범죄로부터 예방하는 체계적 조명계획을 수립한다.

· 광장을 오가는 사람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기 위해 진입로에 적당한 조도가 균일하게 분포되어야 한다.

· 광장 분위기에 맞는 형태의 조명기구 디자인으로 야간 뿐 아니라 주간에도 경관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 보행자 위주의 동선체계 구축하여 쾌적한 야간통행이 되도록 한다.

· 도로와 인접한 광장의 조명기구는 운전자에게 눈부심을 주지 않아야 한다.

· 광장과 인접한 건물, 보행가로등은 연출 및 조명기구가 조화를 이루어 일체화된 디자인이 되도록 한다.

문화지 조명연출 사례

Universal Design

공공건축물 (관공서, 문화시설 등)

· 공공건축물은 통일된 색조이용을 통해 품격있는 조명연출을 권장한다.

· 관공서의 경우 화려함보다는 차분하고 안정적 이미지의 조명연출을 권장한다.

· 문화시설의 경우 문화지역의 아이덴티티를 높이기 위한 조명연출을 권장한다.

· 대상물의 형태, 재질, 색상 등의 외관특성에 맞는 광원의 색온도, 연색성을 고려하여 조명기구의 스케일과 밝기를 정하도록 한다.

Better Design

역사문화시설

· 주광으로 연출되는 건물형태에 대한 연구를 중요시 하여야 한다.

· 역사적 건축물의 경우 건물의 격조를 높일 수 있는 연출방법을 권장한다.

· 건물의 특성을 잘 인지할 수 있도록 단일 색조의 통일성 있는 조명 연출을 권장한다.

· 주간과 야간의 상황을 분리해서 계획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야간조명을 계획하기 전에 건물과 주변환경을 상세하게 분석하여 포인트를 선정하여야 한다.

4. 야간경관 세부가이드

Green Design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그린디자인*

가. 공원, 녹지

G-가-01 의무사항 공원가로 주변 건축물 입구 및 통로, 공원 전반 및 주돈 장소의 조명연출시 KS조도 기준을 준수하여 보행자의 안정성 및 시야 내에 대상물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KS 안전조도 확보기준

※ 조도범위에서 왼쪽은 최저, 중간은 표준, 오른쪽은 최고조도임

장 소		추천 조도
건 물	입구	30-40-60
	통로	30-40-60
공 원	전반	6-10-15
	주된 장소	15-20-30

G-가-02 식재가 밀집된 구간에는 수목 투사 등에 의한 연출을 권장하여 계절에 따른 다양한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조명 연출을 계획한다.

▲권장 : 수목 배치계획에 따른 조명방식 및 사례

G-가-03 벤치와 파고라 등 휴식시설 조명은 식재의 색과 사람의 인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연색성이 우수한 램프를 사용하여 내부의 안전조도를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권장 : 휴식시설조명의 안전조도 확보 사례

G-가-04 유충성(벌레유인성)을 고려한 광원 계획 및 천공으로의 누광과 눈부심을 제어할 수 있는 차광판 설치 등의 광해대책을 마련하여 계획한다.

각종 광원의 유충성 비율(백열전구를 100으로 할 때 상대치 표시)

광원의 종류	유충성 비율
백열전구(IL)	1.00
저압나트륨램프(NX)	0.04
고압나트륨램프(NH)	0.35
백색형광램프등(FL-W)	1.13
고연색형광램프(FL-EDL)	1.19
메탈할라이드램프(MF)	1.35
형광수은램프(HF)	1.87

(출처: '경관도로조명의계획'-전기기술학회지, Vol.17 NO.1)

나. 관광 · 유적지

G-나-01 유적지 및 예술품, 조형물 등의 대상을 중심으로 조명연출을 하여 랜드마크성을 강화하고, 문화재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컬러조명 사용을 제한하여 계획한다.

▲권장 : 유적지 주변 조명연출 사례

▲권장 : 조형물의 경관조명 사례

G-나-02 열손상이 우려되는 재질(석재, 목재)은 조명기구와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직접부착 방식을 지양하여 투광조명을 우선으로 하여 계획한다.

▲권장 : 투광조명 설치사례

다. 수변공간

G-다-01 하천, 호수 등 생물이 서식하는 장소의 수면에는 직접적 조명방식을 하지 않고, 수면에 주변의 빛이 반사되도록 은은하게 빛을 계획한다.

▲권장 : 수변 간접조명 연출사례

G-다-02 부분적 연출이 아닌 수변축을 따라 빛의 흐름을 표현할 수 있는 조명연출을 계획한다.

▲권장 : 연속적 수변 야간경관 연출사례

G-다-03 고휘도의 광원노출, 라인조명, 움직이는 빛의 연출, 원색계열 및 보색대비의 조명설치를 지양하여 조화로운 야간경관을 계획한다.

▲권장 : 조화로운 야간경관 연출사례

G-다-04 침수가 우려되는 곳은 IP지수(방수, 방진, 방충지수)* 및 도장의 마감처리를 고려하여 기구를 선택하고, 시설물과 조명이 일체화되는 조명시설 디자인을 계획한다.

* **IP지수란,** 구제전기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 technical Commission, IEC)의 IEC529규정에 의한 분진과 수분의 침투에 대한 장비의 보호수준을 규정하는 기술 기준 중의 하나임(IP 등급분류는 2개의 숫자로 표기하며, 첫번째 숫자는 외함체 내에 침투하는 분체를 방지하는 수준, 두번째 숫자는 외함체 내에 침투하는 액체를 방지하는 정도를 규정)

IP지수 (IP지수 65등급이란, 분체방지 6등급, 액체방지 5등급을 말함)

분체방지 수준(첫번째 숫자)		액체방지 수준(두번째 숫자)	
0	분체 침착 및 침투 방지 전혀 못함	0	무방비
1	사람의 손에 의한 우연한 분체 침투에 대비하나 의도적 접촉에는 무방비(50mm이상)	1	외함체에 떨어지는 응축된 물방울 차단
2	손가락에 의한 침투 방지(12mm이상)	2	평면 75' 각도로 낙하하는 액체 방울 차단
3	공구 및 전선에 의한 침투방지(2.5mm이상)	3	평면 30' 각도의 강우 차단
4	작은 공구 및 전선에 의한 침투 대비.작은 입자(1mm이상)	4	모든 방향에서 오는 물방울 차단
5	인체 및 움직이는 부품에 의한 침투에 대한 완벽한 방지(유해분진차단)	5	모든 방향에서 분사되는 물방울 차단
6	인체 및 움직이는 부품에 의한 침투에 대한 완벽한 방지(유해분진 침투 일체 차단)	6	폭풍 중 선상 갑판의 조건 만족
	-	7	물에 넣었을 경우에 정해진 압력하에서 일정기간 수분침투방지
	-	8	어떤 경우에도 물에 넣어 고압을 가해도 수분침투 방지

G-다-05 시야에 불필요한 글레어를 방지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유충성(벌레유인성)을 고려한 광원을 계획한다.(G-가-04 <각종 광원의 유충성 비율> 참조)

라. 친환경 에너지 기구

G-라-01 야간경관 및 조명을 위한 기구 선정시, 기구 수량과 전력 사용량 절감을 위해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 을 받은 친환경 에너지 기구의 사용을 권장하여 계획한다.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란,**

에너지효율이 높고 절약효과가 우수한 제품으로 지정시험기관의 에너지효율 및 품질시험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하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인증한 에너지사용기자재를 말하며, LED 조명기기 등 41개 제품이 있음

G-라-02 시설 및 건축물에 부분적으로 태양광 에너지를 도입하여 자연광을 이용한 친환경적 이미지를 창출하도록 계획한다.

▲권장 : 태양광발전설비를 지닌 경관조명기구 설치사례

CPTED Design *활기찬 야간 도시환경을 만드는 안전한 디자인*

가. 주요시가지 도로

C-가-01 의무사항 쾌적한 야간 도로환경 형성과 야간운전자의 안전한 시야확보를 위하여 도로의 종류, 교통량 등에 따른 도로조명기준(KSA 3701)*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도로조명기준

도로의 종류	교통량 주변환경 복 잡 도	평균 노면휘도(cd/㎡) 〈최소허용치〉
고 속 도 로 자동차전용도로	상	2.0 (2.0)
	중	1.5 (2.0)
	하	1.0 (2.0)
국 도 간 선 도 로	상	1.5 (2.0)
	하	1.0 (2.0)
주 택 지 역 접 근 도 로	상	0.75 (2.0)
	하	0.5 (2.0)

※ 휘도 : 단위면적당 밝기의 정도/ ( ) : 개정전의 값 (출처: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C-가-02 차도와 보행로가 함께 있는 도로에는 반드시 보행자등을 병행하여 계획하며, 빛이 부족한 지역의 가로는 보행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횡단보도 구간에 별도 조명등을 계획한다.

▲권장 : 도로변 가로등 및 조명방식 예시

C-가-03 보행로, 주차장, 주진입로, 상가, 놀이터 등 이용 빈도가 높은 공간에는 반드시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높은 조도의 조명을 넓은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보다 낮은 조도의 조명을 끊이지 않도록 균일한 간격으로 조밀하게 설치하도록 계획한다.

▲권장 : 안전한 도로조명 설치사례

나. 스쿨존

C-나-01 스쿨존 내 교차로 및 횡단보도는 횡단보도용 추가조명을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서 휘도를 달리하여 보행자 인식과 주의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권장 : 스쿨존 교차로 및 횡단보도부 조명설치 사례

C-나-02 휀스를 이용한 보행로 경관조명방법을 권장하여 얼굴인식이 가능한 수직면 조도(Vertical Illumination)*를 확보하며, 이를 통해 차도 및 보도에 대한 인지성을 동시에 강화하도록 계획한다.

***수직면 조도란,** 빛을 받는 피조면이 벽이나 칠판처럼 수직인 면의 경우 비춰지는 면의 밝기를 말하며, 상대방의 얼굴을 인식하고 확인하는 것이 보행자의 안전에 중요하므로 수직면 조도확보는 중요 요소임

▲권장 : 조도확보를 강화하는 스쿨존 조명설치 사례

다. 보안등 계획

C-다-01 의무사항 보안등 기구 선정시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인지하는 바닥면의 수평면조도* 기준을 확보할 수 있는 기구를 계획한다.

***수평면 조도란,** 빛을 받는 피조면이 바닥 등의 수평인 면에 비춰지는 밝기를 말함

보안등기구의 보행자에 대한 조명 기준

야간보행자 교통량	지역	수평면조도(Lux)
교통량이 많은 가로	주택지역	5Lux 이상
	상업지역	20Lux 이상
교통량이 적은 가로	주택지역	3Lux 이상
	상업지역	10Lux 이상

(출처: KS 한국표준협회)

C-다-02 버스쉘터 등 보행자와 차량이 동시에 공존하는 곳에 특별히 주의를 요하여 수직면 조도(Vertical Surface)를 강조하는 조명을 설치하고, 수직면 조도의 균일도(Vertical Illumination Uniformity)의 비율 4:1(Average : Minimum) 이하, 1.5m 높이에서 5~8lux의 조도를 유지하도록 계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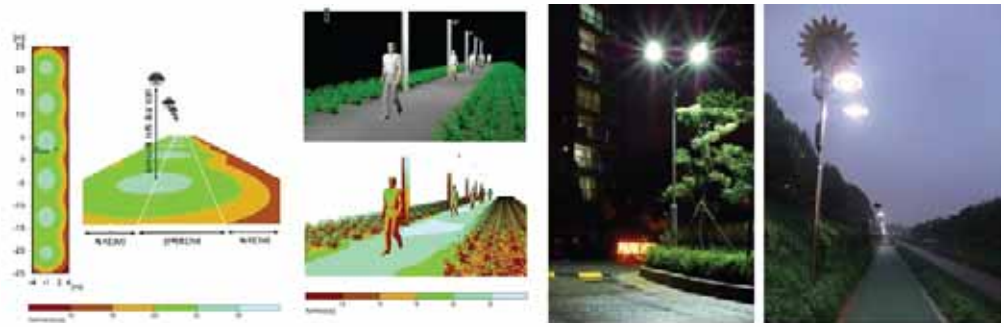

▲권장 : 수직면 조도 시뮬레이션 검토 사례

C-다-03 조명을 여러 레이어로 겹쳐 사용함으로서 안전을 위한 잔잔한 조명(Ambient Illumination)을 확보함과 동시에 방향성을 제시하도록 계획한다.

▲권장 : 다양한 타입의 보안등 설치사례 예시

C-다-04 전력사용량이 적고 유지보수 비용이 낮은 등기구 선정을 우선시하여 전자제어가 가능한 친환경 LED 조명방식의 보안등을 권장하도록 계획한다.

▲권장 : 친환경 LED 조명방식 보안등 사례

Universal Design *다계층을 배려하는 모두를 위한 디자인*

가. 보행전용가로

U-가-01 중심 보행축은 눈부심 방지를 위해 컷오프형 조명* 방식을 적용하며 보행자 레벨에서 상향 조명 사용을 지양하며 보행자의 편안한 보행환경을 계획한다.

***컷오프(cut-off)형 조명이란,** 자연 야간생태 보호 및 눈부심(Glar) 방지를 위해 빛의 방향을 제어하는 조명방식을 말함

▲권장 : 보행가로 조명방식 예시

▲권장 : 컷오프형 가로등 예시

U-가-02 도로의 바닥면에 매입하는 조명시설은 대중의 발길이 쉽게 닿는 곳이기 때문에 강화유리 또는 그와 유사한 강도의 재료를 사용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계획한다.

▲권장 : 매입형 보행가로 조명 설치예시

나. 자전거도로

U-나-01 간접등 및 플랫빔 방식을 사용하여 자전거 주행시 눈부심을 최소화하여 안전을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권장 : 자전거도로 조명 설치사례

U-나-02 보행자도로를 통과하는 자전거도로에는 수목 및 도로주변 시설들을 이용한 이벤트적 요소를 도입하여 시각적으로 인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Better Design *문화와 예술을 창조하는 보다나은 도시감성형 디자인*

가. 상업·업무가로

B-가-01 가로를 따라 빛의 연속성을 확보함으로써 빛의 비스타 연출 및 이동 방향성을 제시하여 공간의 강약과 연속적인 야경연출 계획을 수립한다.

▲권장 : 가로를 따라가는 연속적인 야경연출 사례

B-가-02 주요 교차로 건축물을 이용한 파사드 조명 연출로 지역의 랜드마크 요소를 개발하고 건축물 상층부 경관조명 적용시 주변과의 휘도대비 1:10 을 넘지 않도록 계획한다.

▲권장 : 건축물 파사드 조명연출 사례

B-가-03 저층부 건축물의 경관라인을 중심으로 변화감 있는 빛의 밝기, 색을 통해 다양한 즐거움을 제공하고, 계획보행을 유도하는 야간경관 흐름을 계획한다.

▲권장 : 건축 저층부 야간경관 연출 사례

B-가-04 건축물과 일체화된 조명 및 내부조명의 경관 조명화를 통해 공간을 확장하고 새로운 야간경관 트렌드를 제시한다.

▲권장 : 건축물과 일체화된 경관조명 사례

나. 광 장

B-나-01 규모가 큰 광장에는 광장의 기본 조도 외에 공간특성에 맞는 다양한 빛을 연출하여 특화할 수 있으며, 광장 분위기에 맞는 형태의 조명기구 디자인으로 야간 뿐 아니라 주간에도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계획한다.

▲권장 : 다양한 빛 형태를 창출하는 조명디자인 사례

B-나-02 광장을 오가는 사람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기 위해 진입로에 적당한 조도가 균일하게 분포되도록 계획한다.

▲권장 : 보행흐름을 유도하는 야경연출 사례

B-나-03 오브제 조명기구, 조형물, 분수 및 인접건축물의 상징성을 부각하는 포인트 조명으로 빛의 문화 활성화와 관광산업 시너지 효과를 계획한다.

▲권장 : 상징성을 부각하는 포인트조명 특화사례

B-나-04 광장과 인접한 건물, 보행가로 등은 연출 및 조명기구가 조화를 이루어 일체화된 조명디자인이 되도록 계획한다.

▲권장 : 건축물, 보행가로 바닥 등과 일체화된 조명연출 사례

다. 도시 구조물

B-다-01 조명을 위한 별도의 구조물을 부착하는 조명방식을 지양하고, 특히 신설, 리모델링 교량은 난간을 이용하는 방식 및 교량과 일체화되는 조명방식을 계획한다.

▲권장 : 교량과 일체화된 조명방식의 디자인 사례

B-다-02 컬러 사용시 원색계열을 지양하며, 조명색상 연출시 마감재의 색상을 고려하여 은은하게 계획한다.

▲권장 : 은은한 야간경관 컬러연출 사례

B-다-03 주변의 건축물 조명, 도로 조명 및 주위 빛 환경을 고려하고, 구조물의 형태를 부각시키는 야간경관을 계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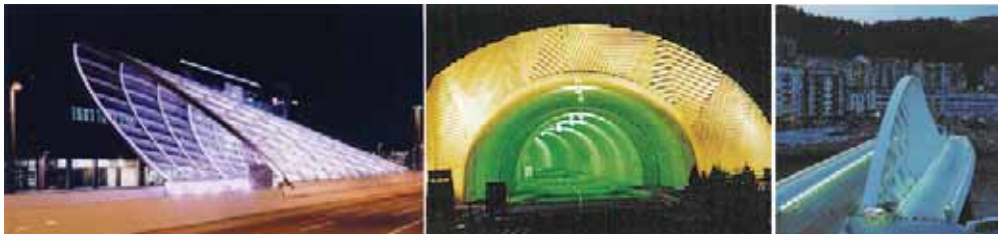

▲권장 : 구조물의 형태를 부각하는조명연출 사례

B-다-04 보행자 및 운전자에게 시각적 불편을 주지 않도록 광원의 직접 노출은 지양하며, 투광등은 후드 및 루버를 설치하여 계획한다.

라. 가로등

B-라-01 주간의 미관성을 고려하여 특화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의 가로등 및 조명시설은 주변 공공시설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통합된 디자인 이미지로 계획한다.

▲권장 : 가로등 통합디자인 사례

B-라-02 가로등 디자인에 지자체의 상징표시나 상징물 등의 부착을 지양하고, 가로등주 부분에 불법 광고물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시트, 도료 등으로 마감하도록 계획한다.

▲권장 : 광고물 부착을 방지하는 시트, 도료 등 마감사례

B-라-03 가로등은 재활용이 가능하고 가공성이 뛰어난 알루미늄 소재(부식방지 처리된)의 등주 사용을 권장하며 불가피하게 스틸 소재를 사용할 경우 표면을 무광처리하여 계획한다.

B-라-04 가로등 지지부는 지하 매설하여 시멘트 기초, 지지대, 앵커 볼트가 보도 위로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지상물의 형태(가로등주) 및 유형의 부피, 높이, 무게 등을 감안하여 계획한다.

▲권장 : (좌) 알루미늄소재 가로등 사례/ (우) 가로등 기초부 매입 사례

7장 옥외광고물

1. 안산시 옥외광고물 관리체계

· 안산시의 옥외광고물은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및 2008년 별도 수립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

·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2011년 3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법적 변경사항을 고려하여 시행관리 될 수 있도록 추가 수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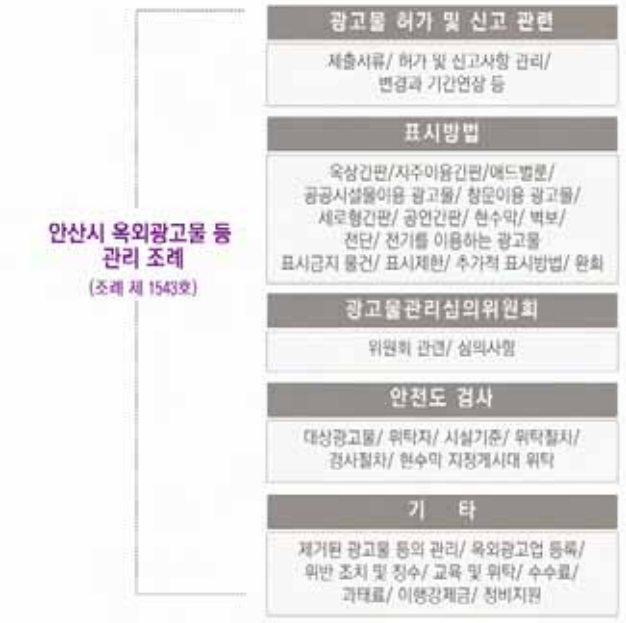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개정 검토

개정의 목적

· 개정안의 가장 큰 골자는 광고물의 허가 및 신고에 대한 권한이 시군 · 구청장에서 시 · 도지사로 대폭 이관되면서 시 · 도지사의 권한이 크게 강화되었다는 점임

· 제 3조와 4조의 광고물의 허가 · 신고 권한, 특정구역 지정 권한, 버스승강장 · 택시승강장 · 노선버스안내표지판 등 공공시설물 광고물에 대한 허가 · 신고 권한이 모두 시 · 도지사에게 위임

· 허가 · 신고에 대한 시 · 도지사의 권한 강화에 대한 사항은 기존 법령상의 시 · 군 · 구가 허가 · 신고의 기준을 지나치게 완화하거나 강화해 적용함으로써 혼란과 불편을 야기하는 측면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보완목적을 지님

건물주 간판표시계획서 제출제도

· 건물주의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제도는 업소별 개별간판 관리 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광고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지님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은 건물주가 자기 건물에 대한 간판표시계획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물에서 영업하려는 자는 건물주가 제시한 간판표시계획서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광고물 자율관리구역 제도

· 주민들이 광고물의 표시나 설치를 자율적으로 정해 관리하도록 하는 자율관리구역 제도는 지금까지의 획일적인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주민들의 자율적인 협의와 참여를 기반으로 한 규제완화 입법으로서 협정 등과 함께 활용가능함

· 안산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보전권역의 경우 전통경관자원이 입지하여 지역주민의 지속적 관심이 요구되는 지역이므로 자율관리구역 제도를 통해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옥외광고물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4조의2(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 -신설-
① 시장등은 지역 주민이 자율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이하 "자율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자율관리구역에서는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광고물등의 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 주민들이 협의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의2(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 -신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율관리구역에서는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장등은 자율관리구역이 지정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범위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자율관리구역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를 통한 자율적인 광고문화 개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 각 지자체에서 사업으로서 개별 추진되던 경관정비사업을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 안산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상업권역, 중점권역 및 특화권역 등은 특성화된 상업경관의 형성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하여 옥외광고물의 통합적 정비가 유도가능함

제4조의3(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신설-

① 시장등은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비시범구역에서는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이 광고물등의 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시장등과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고시한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물등의 제작비용과 설치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범위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규제완화 사항

· 공중보건, 교통안전 또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장을 광고물 허가 · 신고 기준을 강화하는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그간 허가 · 신고 기준이 강화된 일부 지역에서 일괄 규제됐던 병원, 약구, 주유소, 은행의 광고물에 대한 규제 완화를 유도함

·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긴급사고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을 위해 설치하는 광고물과 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에 관한 계도 및 홍보를 위한 광고물도 법의 허가 · 신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적용 배제 광고물을 30일 이내만 규정하고 있어 상당수의 공공목적 광고물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설치 · 표시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도 적용배제 대상에 포함시킴)

안 산 시 도시디자인과

참여연구진

사업총괄기술자	(주)도 화	김주현				
계획실무진행	(주)도 화	김철홍	김양진	김진주	김진우	김현성
	(주)건 화	이경환	오성록			
분야별 기술자						
조 경	(주)도 화	문상규	장대수	심창진	강성철	마동욱
		서진민	최광식	이창휘		
	(주)건 화	노찬기	곽도엽	김종실	도승원	백샛별
도 시 계 획	(주)도 화	민경렬	김원수	문현석	이창하	
	(주)건 화	이형철	송준혁	김시만	방형문	이선화
도로 및 공항	(주)도 화	김정찬	유창민	김형진	류대호	
	(주)건 화	박재교	최병룡	안대성		
기 타 분 야	(주)도 화	윤중현	권경구	허길헌	박완섭	김웅락
	(주)건 화	강병렬	박완용	김현기	김만덕	정정연
연구기술지원	(주)도시경관연구소율	채승우	이은정	천경희	문유진	박미향

본 보고서의 내용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하며, 본 출판물의 소유권 및 판권은 안산시청에 있습니다.

문의 : 안산시청 도시디자인과 T. 031-481-2635